

| 제 6 판 |

#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성균관대 명예교수 **최준선**

주식회사 창업 및 경영성공을 위한 실무가이드!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및 절차
-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
-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



탐복스



## 머리말

회사 중 주식회사는 우리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및 현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주식회사의 구조와 운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서에서는 주식 회사에 관한 중요한 법률문제를 주로 실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설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설립에서부터 그 해산과 청산까지를 망라하였다. 따라서 이 한 권으로 주식회사운영의 개략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주식회사의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이 책의 사명은 충분히 완수한 것이다.

우리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그간 수차례 개정되었다. 2015년에도 회사법이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본서는 2018년말까지 개정된 회사법의 내용과 주요 판례까지 반영하였다.

본서를 만들면서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기,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한다. 우선 회사의 설립부분에는 “다름”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지경춘 대표법무사가 원고를 철저히 검증하여 주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강선남 팀장과 최창보 팀장, 한국거래소의 안현수 팀장이 오자를 교정하였다. 대구대학교의 김영주 교수, 윤민섭 박사, 유한대학교의 이창기 교수 및 이문과 군은 본서로써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할 것을 필자에게 제안하여 주었다. 이분들은 모두 필자의 제자들이다. 본서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답복스 김광식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본서의 제작에 아낌없는 정성을  
쏟아주신 이신정 주간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9. 2. 20.

저자 씀

jsskku@daum.net



# 차 례

## 제1부 주식회사법의 기본이론

1. 회사란? .....	2
2. 개인기업과 회사 .....	4
3. 회사의 종류 .....	6
4. 주식회사란? .....	8
5. 주식회사의 역사 .....	10
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1) .....	12
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2) .....	14
<b>칼럼</b>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16	
8. 1인회사 .....	18
9. 모회사와 자회사 .....	20
10.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	22
11. 상장회사의 기관구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칙 .....	24
12. 상장회사의 자본구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특칙 .....	26
13. 법인격부인의 법리 .....	28
14. 자본금 .....	30
15. 자본금의 3원칙 .....	32
16. 수권자본금제도 .....	34
17. 종업원지주제도 .....	36

## 제2부 주식회사의 설립

18. 주식회사 설립의 주체인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40
19.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의 책임 .....	42
20.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결정 .....	44
2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46
22. 설립중의 회사 .....	48
23. 정관이란? .....	50
24. 회사의 목적범위 .....	52
25.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	54
26. 설립비용 .....	56
27. 주주의 모집 .....	58
28. 주주의 공개모집 .....	60
29. 주금납입은행과 관련된 절차 .....	62
30. 창립총회란? .....	64
31. 설립등기의 방법 .....	66
32. 설립후의 절차 .....	68

## 제3부 주식과 주권

33. 주식과 주권 .....	72
34. 경영권과 주식 .....	74
35. 무액면주식 .....	76
36. 종류주식(1) .....	78
37. 종류주식(2) .....	80
38. 종류주식의 구체적 유형(조합) .....	82
3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84
40. 주주의 권리와 의무 .....	86
41. 주주명부 .....	88
<b>칼럼</b>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에 계만 주주권 인정” / 90	
42. 주식의 매매와 양도 .....	94
43. 주식의 증여 .....	96
44. 주식의 양도제한 .....	98
45. 자기주식 .....	100
46. 주식의 담보 .....	102
47. 주권대체결제제도 .....	104
48.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	106



## 제4부 주식회사의 기관

49. 기업의 지배구조 .....	110
칼럼   한국식 지배구조 모델인 가족기업 장점 살리자 / 112	
50.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	114
51. 주주총회란? .....	116
52. 주주총회의 소집 .....	118
53. 주주총회의 의장 .....	120
54.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122
55. 주주제안권 .....	124
56. 의결권행사의 제한 .....	126
칼럼   스투어드십 코드 경영간섭 통로대선 안돼 / 128	
57.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30
58.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	132
59. 총회권의 방지와 이익공여금지 .....	134
60.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 .....	136
칼럼   폐기되어야 할 경제민주화법안(상법개정안) / 138	
61. 이사회란? .....	140
62. 이사회 운영 .....	142
63. 이사회 위원회 .....	144
64. 이사가 1인인 회사의 특례 .....	146
65. 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	148
66.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은 행위 .....	150
67.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152

68. 이사의 선임 .....	154
69. 이사의 종임 .....	156
70. 이사의 자격, 인원수 · 임기 .....	158
71. 이사직무대행자 .....	160
72. 이사의 보수 .....	162
칼럼   임원 보수 공개는 ‘월급쟁이 등급’ 줄 세우기 / 163	
칼럼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임원의 부당해임과 손해배상” / 164	
73. 이사의 의무와 책임 .....	168
74. 경영판단의 원칙 .....	170
칼럼   ‘경영상 판단’까지 背任罪(배임죄) 적용해야 하나 / 172	
75. 업무집행지시자 등 .....	174
7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	176
77.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 .....	178
78.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제한 .....	180
79.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허용 .....	182
80. 주주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184
81. 주주 대표소송 .....	186
칼럼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이중대표소송의 부정(否定)” / 188	
82. 집행임원 .....	192
83. 정말 복잡한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	194
84. 주식회사의 감사기관과 외부감사인 .....	196
85. 감사(監事)란? .....	198
86. 감사위원회 .....	200
87. 준법지원인 .....	202

## 제5부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88. 자금의 조달 .....	206
89. 증자의 방법 .....	208
90. 제3자의 신주인수권 .....	210
91. 신주발행절차 .....	212
92. 타인명의로의 주식인수 .....	214
93. 사채의 발행 .....	216
94. 특수한 사채 .....	218
95. 자본금의 감소 .....	220

## 제6부 주식회사의 계산

96. 회계관련 법규 .....	224
97. 재무제표의 종류 .....	226
98.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 .....	228
99. 준비금이란? .....	230
100. 준비금의 종류 .....	232
101. 배당이란? .....	234
102. 특수한 배당 .....	236
103. 법인세 신고와 납부 .....	238
104.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	240



## 제7부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105. 조직변경 .....	244
106. 지주회사 .....	246
107. 지주회사의 설립 .....	248
108. 주식교환 .....	250
109. 주식이전 .....	252
110. 주식회사의 합병 .....	254
11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256
112. 현금지급합병과 삼각합병 .....	258
113. 삼각주식교환 .....	260
114. 역삼각형 · 삼각분할합병 .....	262
115. M&A란? .....	264
116. 대표적인 M&A 전략 .....	266
117. M&A의 특수기법 .....	268
118. 포이즌 필 .....	270
칼럼   장기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 줘야 / 272	
119. LBO .....	274
120. MBO .....	276
121. 회사의 분할 .....	278
122.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280
123. 자산유동화란? .....	282
124. 사업재편에 대한 특칙 .....	284

## 제8부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25. 부도란? .....	288
126. 정리해고 .....	290
127. 도산이란? .....	292
128.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	294
129. 통합도산법 .....	296
130. 법인(기업)회생 .....	298
131.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300
132. 휴면회사의 정리 .....	302
133. 주식회사 설립의 실제 .....	304
• <b>부 록</b> .....	332
상법(주식회사법 발췌)	

제 1 부

주식회사법의 기본이론







# 1.

## 회사란?

---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회사를 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법인성 및 영리성이 그 본질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 법인성

상법은 모든 회사를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한다. 즉, 본점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인간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법인격을 부여한다(상법 제172조). 법인격을 부여하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수가 얼마이든, 또 업무담당자와 주주가 변동되든 아니되든 구매받지 않고 단일개체로서 영속성을 유지하고 회사 스스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가 됨으로써 거래관계가 간단·명료화 될 수 있다. 회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소송도 회사의 명의로 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면 인간으로 탄생되지만, 설립등기전 어느 정도 회사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한다(항목 23 참조). 그리고 인간의 사망에 해당하는 법인격의 소멸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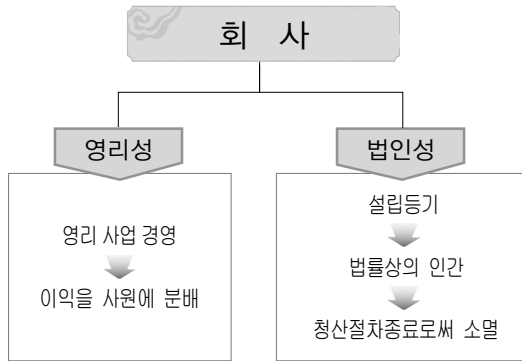
회사를 인간으로 취급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그러한 취급을 받을 뿐이고,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활동은 회사 내부의 대표이사 등의 기관이 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성명인 상호와 주소를 가지는데, 회사의 상호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상법 제19조),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상법 제171조).

상법상 모든 회사가 법인이기는 하나 그 법인격이 악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의 적용과정에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법인격부인론이라고 한다(항목 14 참조).

## 2) 영리성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상법 제169조) 영리법인이다. 회사의 영리성이란 회사의 설립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영리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협동조합·상호보험회사 또는 거래소 등은 회사가 아니며, 국가·공공단체 기타의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商人性은 인정하더라도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될 수는 없다.

### • 회사의 정의



### • 회사의 사단성 문제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사는 '사단(社團)'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사단(社團)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단체 자신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단일체로서 존재를 가지는 결합체를 말한다. 회사는 법률에서 사단이라고 정하든 않든 투자자(사원) 2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동기업이므로 당연히 사단이다. 2011년 개정회사법에서 사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최근에 회사의 1인 설립이 허용되고 회사설립 후에도 사원이나 주주가 한 사람 뿐인 1인회사(one man company)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 2.

# 개인기업과 회사

회사는 자본이나 경영조직의 규모가 커서 경쟁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다수인이 부담할 수 있다.

회사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기업형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면 대자본의 조달과 전문경영인의 확보 및 신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뿐만아니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시장확보를 위한 기업활동의 국제화도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업은 개인기업으로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대자본과 다수인의 노력이 결집될 수 있는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 1) 회사의 장점

회사를 개인기업과 비교해 보면, 우선 회사는 자본이나 경영조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으며,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회사는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개인기업보다 우수하다. 또한 회사는 법률이 회사 자체를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상법 제171조), 대주주나 창업자 등 특정인이 사망하더라도 기업은 해체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유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사제도의 장점은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효율적이다.

요컨대, 회사제도를 이용하면,

- ① 개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도 타인에 의한 노력의 보충으로 가능하게 된다.
- ② 대자본의 조달이 용이해진다.
- ③ 위험 및 손실을 다수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자연인 개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법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 2) 개인기업과 회사의 비교

- 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영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부족하면 용자 등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금을 하고 이자를 물어야 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인의 출자에 의하여 자금을 형성하고 이들 자금은 회사에 투자한 것이 되므로 이익이 있을 때 이익배당문제가 발생할 뿐 이자지급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 ③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무한책임을 져야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 ④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이익을 개인이 차지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한 다음 청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완료함으로써 폐업을 하게 된다.

### • 개인기업과 회사의 차이

	개인기업	회 사
영업개시	자유롭게	설립등기 후
폐업시기	언제든지	청산절차 완료 후
자금관련	용자 등 소비대차	다수인의 출자
책임구분	개인 무한책임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
이익배당	개인 차지	출자자에 분배

### 회사의 장점

-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대자본 조달이 용이
- 위험·손실을 다수인이 분담
- 법인으로서 기업의 유지



## 3.

#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는 그 신용의 기초인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직접책임인가 간접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 유한책임인가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한다.

상법전은 회사를 그 신용의 기초인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직접책임인가 간접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 유한책임인가에 따라 다음 5종으로 분류·한정하고 있다(상법 제170조).

### 1) 주식회사

주식회사(corporation)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간접유한책임) 사원, 즉 주주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상법 제295조·제303조·제331조).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기본적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뿐이고(상법 제361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하며(상법 제382조 이하),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주식도 양도가 매우 자유롭다(상법 제335조 제1항).

### 2) 유한회사

유한회사(limited company)란 균등액의 출자로서 성립하는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회사사원의 책임은 간접유한책임이란 점에서는 주주의 책임과 같으나(상법 제553조), 회사 설립 등 일정한 경우 자본에 대한 전보책임(填補責任)을 지는 점이 다르다(상법 제550조·제551조·제593조). 유한회사는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이므로, 그 기관구성이 간소화 되고, 지분의 증권화도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555조).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이다.

### 3) 합명회사

합명회사(partnership)란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상법 제212조)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상법 제200조·제207조)을 갖고, 그 지분의 양도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상법 제197조). 합명회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 4) 합자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고(상법 제269조·제212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지나, 정관으로 정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은 없으나(상법 제278조), 감시권은 있다(상법 제277조).

#### 5)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란 회사의 출자자인 사원들이 자신의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로, 대외적으로 회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회사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폭넓게 사적 자치가 인정된다. 회사에 이사를 둘 필요가 없으며, 사원들이 합의하여 정관에서 정한 업무집행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소수의 출자자들로 경영되는 중소기업, 펀드, 투자회사 등에 적절한 기업형태이다.

#### • 회사의 종류

##### 주식회사

주주만으로 구성(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한 출자의무를 지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 유한회사

사원은 간접유한책임을 지나, 자본에 대한 전보책임을 부담

##### 유한책임회사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나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춘 회사

##### 합명회사

연대·무한의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정관으로 정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구성





## 4.

# 주식회사란?

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는 자본금, 주식 및 유한책임제도이다.

주식회사(corporation)란 그 자본이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고,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그 자신이 인수(매수)한 주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는 자본금, 주식 및 유한책임제도이다.

### 1) 자본금

자본금(stated capital)이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기준', 즉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상법 제451조).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제451조 제2항). 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나, 다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자본금은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이와 같은 자본금개념은 회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주가 급여하는 기금을 표시하는 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추상적·규범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가변적·구체적 회사재산과는 구별된다.

### 2) 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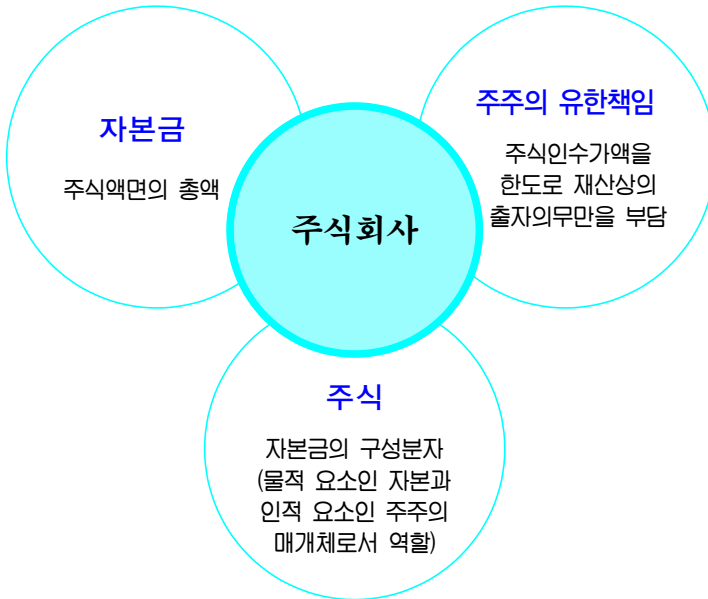
주식(share)이란 자본금의 구성분자로서 주식회사의 물적 요소인 자본과 인적 요소인 주주를 결부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회사에 참여할 수 있고, 거대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다수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주식회사의 특색이다.

### 3)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shareholder)의 유한책임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지는 데 불과하며, 그 밖에는 손실분담의무·부수적 급부의무 등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상법 제 331조). 그러나 이 의무도 엄격히 말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의무이고, 주주가 된 후에는 회사에 대해서나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를 내든 사고를 내든 주주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와 같이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격부인론(항목 14 참조)이나 실체파악이론 등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 • 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





## 5.

# 주식회사의 역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에 네덜란드에 설립된 동인도회사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된 農工銀行이다.

### 1) 주식회사 유사형태

주식회사의 연혁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최초의 형태는 1407년 제노바(Genova)에 설립되었던 조르스은행(Georgsbank)과 이후 이를 모방한 밀라노(Milano)의 암브로지우스은행(Ambrosiusbank)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은행에서는 사원의 투자가 분할되고,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하였으며,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공기업적인 색채가 강하여 오늘날의 주식회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2)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17세기에 이르러 새로 발견된 아메리카대륙과 인도를 개발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식민회사들이 많이 설립되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회사로서 1600년에 설립된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있다. 그러나 1602년에 네덜란드에 설립된 동인도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를 주식회사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회사는 종래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회사들을 포괄적으로 합병하여 동인도무역을 위한 독점기업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 회사의 전체사원은 유한 책임을 부담하였고, 회사의 출자자와 기관이 정비되었으며, 주식제도가 확립되어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주주총회는 없었고, 이익분배도 영업연도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商業航路의 성과에 따라 하였다. 동인도회사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여 당시 연방의회의 특허장(Oktori)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회사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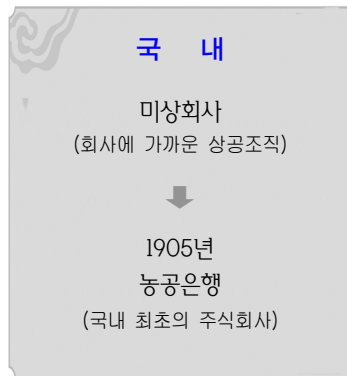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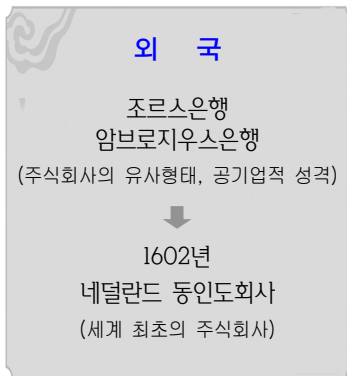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 이어 설립된 식민회사로서 1604년에 설립된 프랑스 동인도회사와 1612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1616년의 덴마크 동인도회사, 그리고 1621년의 네덜란드의 서인도회사가 있다.

### 3)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會社’라는 말은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894년(高宗 31년) 7월 24일 議案 ‘米商會社設立에 관한 件’, 1895년 4월 19일 農商工部告示 제1호 ‘各 會社로부터 官許章程과 商業憑票를 還受하는 件’ 등의 법령에서 회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회사에 가까운 商工組織이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는 舊韓末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 당시 특수한 사업을 영위할 주식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특별법령이 제정되었다. 1905년(光武 9년) 12월 8일 법률 제6호로 ‘私設鐵道條例’, 1906년(光武 10년) 3월 21일 칙령 제12호 ‘은행조례’와 동 제13호 ‘農工銀行條例’, 1908년(隆熙 2년) 8월 26일 법률 제22호 ‘東洋拓植株式會社’ 등이 공포되었다. 위 ‘農工銀行條例’에 의하여 설립된 農工銀行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이다.

회사에 관한 저술을 보면 ‘李冕宇 講述 會社法’이라는 책자가 후에 발견되었는데 이 책은 1905년 이전에 씌어진 것이라 짐작된다. 책의 내용은 일본상법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어서 독창적인 것은 없으나, 주식을 股本(고본)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股本會社’, 주주를 股主, 株券을 股券, 株金을 股金, 주식의 인수를 ‘股本의 擔受’, 이사와 감사를 ‘總務員’과 ‘監督員’이라 한 것이 특색이다. 이들 용어는 중국에서 주식회사를 ‘股份公司’(고분공사)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淸國의 용어를 본받으듯하다.







## 6.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기본 개념, 회사의 설립, 사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이나, 유한회사는 인적 회사의 성격이 가미된 물적 회사이다. 둘째, 주식회사는 대기업에 적합한 회사이나,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이다. 그 밖에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설립 및 사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1) 회사설립상의 차이

① 회사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가 인정되나, 유한회사에서는 단순설립만이 인정된다.

② 최초의 이사는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이 互選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상법 제296조 제1항·제312조),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547조 제1항).

③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감독이 있으나(상법 제310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 2) 지분에 있어서의 차이

①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인정되어株式이 발행되나(상법 제355조 제1항), 유한회사에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상법 제555조).

② 주식회사에서는 株式의 양도와 입질(入質: 株式를 맡기고 돈을 빌림)이 인정되고, 다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상법 제335조 제1항), 유한회사에서는 지분의 양도와 입질이 제한된다(상법 제556조).

③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자본충실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유한회사에서는 이것이 인정된다(상법 제550조·제551조·제593조).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①

개념상의 차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전형적인 물적회사	인(人)적 요소가 더하여진 물적회사
대기업에 적합	중소기업에 적합

회사설립상의 차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발기설립 · 모집설립	단순설립만 인정
발기인이 호선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에서 선임
법원의 감독	법원의 감독이 없음

지분에 있어서의 차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증권화 인정	증권화 불인정
양도와 입질의 인정	양도와 입질의 제한
사원의 자본총실책임 부인	사원의 자본총실책임 인정



## 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운영기관 및 계산규정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 1) 기관의 차이

- 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나(상법 제383조 제2항),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는 1인 이상)이어야 하나(상법 제383조 제1항), 유한회사의 이사의 수는 무제한이다.
- ③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제도가 있지만(상법 제390조 이하), 유한회사는 이사회제도가 없다.
- ④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이나(상법 제409조 제1항.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제1항).
- ⑤ 주식회사에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강행법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유한회사에서는 1좌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2) 계산규정 등의 차이

- ① 주식회사에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하나(상법 제449조 제3항), 유한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기준 및 잔여재산분배기준은 강행법규이나(상법 제464조·제538조), 유한회사의 경우는 임의규정이다(상법 제580조·제612조).
- ③ 주식회사의 자본을 증감함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유한회사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 ④ 주식회사에서는 사채발행이 인정되나(상법 제469조), 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상법 제600조 제2항·제604조 제1항 참조).

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회생제도가 인정되나, 유한회사에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②

● 기관의 차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3년	이사의 임기 무제한
3인 이상	이사의 수 무제한
있다	이사회제도 없다
필요기관	감사 임의기관
1주의결권의 원칙	의결권 1좌1의결권(변경가능)

● 계산·기타 규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 없음
강행법규	이익 및 재산분배 기준 임의규정
정관변경 불필요	자본의 증감시 정관변경 필요
인정	사채발행 불인정
인정	회사회생제도 불인정



##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평등·복지 깃발 아래 국가권력 비대  
경제적 자유·재산권 침해하는 상황  
문명화된 자유주의만이 변명 안겨”

2018년 가장 쇼킹했던 뉴스는 ‘자유 실종’ 사건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담은 보고서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 ‘자유’라는 단어의 선명성을 희석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빼는 교육부 행정예고가 발표됐다.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국가조차도 개인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강제적 징병과 징세가 정당화된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놓는다.

자유 중에도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자유도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3인 중 한 명으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존 로크(1632~1704)는 자유를 ‘자신에게 허용된 법의 한도 안에서 자기 자신, 행위, 소유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자유’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이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정부 아래 두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사유재산의 보호다”고 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자가 책임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와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생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 있고 노력하는 개인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의 대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오직 법치주의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지킬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원칙이다. 자조, 자립,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제도가 요체다.

물론 국내외 경기순환에 따른 실업처럼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교육, 의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만 한다. 국가가 선의(善意)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국가는 비대해지고 공무원만 넘쳐나게 된다. 국가는 지식이 없고, 국민은 필연적으로 복지에 종속된다. 국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자'에 대한 착취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는 부를 죄악시하고, 강력한 수탈로 이어져 국민의 재산권은 필연적으로 침해되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가는 결국 실패한다.

현 정부의 탓만은 아니나, 한국은 점점 혼돈에 빠지고 있다고들 걱정한다.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가 실종될 뻔했다. 국가 권력은 평등, 복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 아래 더욱 비대해졌고 기업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는 이미 상당부분 제약돼 왔으며 앞으로 더 걱정스러워지려 한다.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카드사태, 사립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의 재산권은 위협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비대해진 대중 권력에 인격은 무참히 침해되고 있다. 지키기 어려운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은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게 만든다.

공무원의 수와 공기업 수, 그리고 국가권력을 줄이지 않고는 국민에게 절대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 자유, 인격, 재산을 신성시하고 번영을 안겨주는 문명화된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 '자유란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다.'(알베르 카뮈) 자유를 지키는 힘은 개인의 각성에서 나온다. 2019년, '개인'과 '자유'가 존중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2019. 1. 1.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8.

# 1인회사

1인회사란 그 구성원, 즉 주주가 1인뿐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에서 인정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1인회사란 그 구성원, 즉 주주가 1인뿐인 회사를 말한다. 종래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따르는 책임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인회사의 존속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인정한다. 1인회사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만 인정된다.

### 1) 1인회사의 인정 근거

1인회사를 인정하는 근거는, ①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1인이어도 가능하다는 점(상법 제288조 참조), ②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수가 1인으로 감소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 점(상법 제517조 참조), ③ 주식회사의 기초는 인적 구성요소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재산에 있으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 ④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언제든지 사원이 복수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⑤ 1인회사를 금지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형식은 1인회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1인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⑥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의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 등이다.

1인회사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정책의 문제이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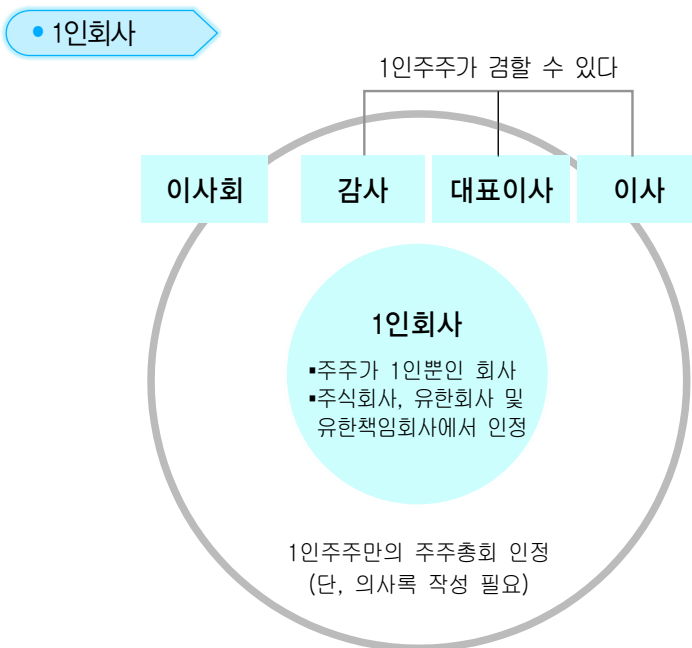
### 2) 1인회사의 운영

1인주주만의 주주총회도 인정되나, 다만 의사록은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이사의 출석 등은 필요 없다(대법원

1993.6.11. 93다8702), 1인회사에도 기관으로서 이사·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등이 있어야 한다. 1인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고, 이사·감사가 될 수도 있다. 1인주주 자신이 1인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된 경우 스스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다(상법 제400조·제415조).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인주주가 이사회 승인을 없이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물론이고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1인주주에게도 배임·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2.5.24. 2010도8614),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재산을 양도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8.23. 96도1525).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7.12. 2002다20544).

### 3)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법인격은 형해(形骸: 빈 껍질)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법인격부인론(항목 14 참조)을 적용할 소지가 많을 것이다.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본참여(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또는 계약·임원파견 등에 의하여 지배하는 경우 전자를 支配會社 후자를 從屬會社라고 한다. 이 개념은 경제학상의 회사분류개념인데 대기업간의 계열회사가 사실상 대기업의 주된 회사에 종속된 경우에 이러한 예가 된다. 따라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무한정으로 인정할 때에는 자유경쟁의 취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경제의 대기업 편중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1) 모회사와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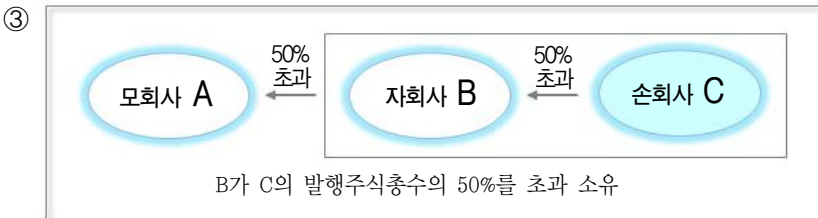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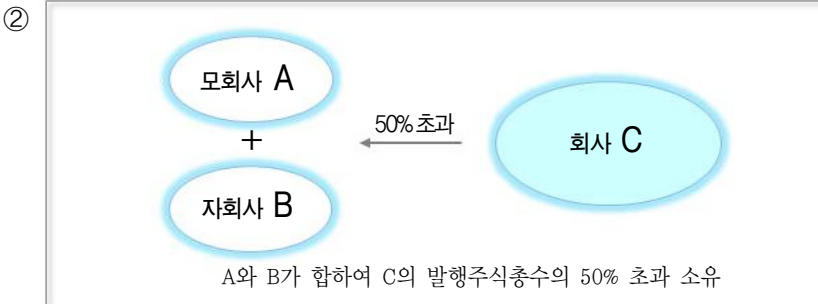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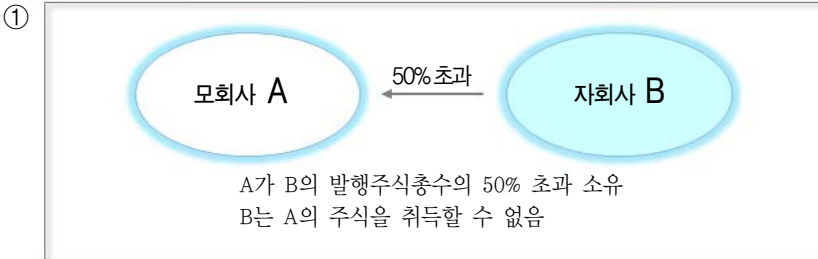
위와 같은 경제학상의 지배회사, 종속회사의 개념을 상법에서(342조의 2 제1항)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또 모회사와 자회사 쌍방이 가지는 주식의 합계나 자회사가 단독으로 가지는 주식의 數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보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42조의 2).

그리고 상법상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나(상법 제342조의 2 제1항 본문),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2조의 2 제1항 제1호·제2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취지는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취득금지를 통하여 출자의 환급으로 인한 회사자본의 부실을 방지하고 회사지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취득은 무효가 되고, 위반한 이사 등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상법 제399조, 제401조), 일정한 벌금형의 제재를 받는다(상법 제625조의2).

## 2) 계열회사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을 계열회사라 한다(동법 제2조 제3호).

### •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②, ③의 경우 C는 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곳에서 매매되고 있는 회사를 상법은 주권상장회사라고 하고,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증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 상장(上場)되어 그곳에서 매매되고 있는 회사를 상법에서는 주권상장회사라고 하고,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라고 한다. 반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회사를 주권비상장회사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 1) 주권의 상장

주권의 상장이라 함은 '증권거래소가 특정 유가증권에 대해 자신이 개설한 공개시장에서 매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만이 유일하게 유가증권의 공개매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자금 제377조).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는 세법상 유리한 대우를 받지만, 다른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규제를 받는다.

### 2) 기업공개

상장의 전제조건은 기업공개이다. 기업공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기업공개를 거치지 않는 상장도 있는데, 이를 직상장이라 하며,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만 정책적으로 인정한다.

주식이 상장되어 원활하게 거래되기 위하여는 주식이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어야만 한다. 주식이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유통물량이 적어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유통성이 저하되어 공개시장에서 상품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주식의 분산은 상장의 절대적 요건이다. 이와 같은 소정 수준 이상의 주식분산을 기업공개라 한다.

### 3) 상장요건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면 상장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회사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2.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이고, 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3.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이 평균 700억원 이상이고, 최근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이익이 있을 것
4.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고, 일반주주 수가 700명 이상일 것
5.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최근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의 경우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일 것
6.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 • 주권의 상장

#### 상장의 요건

- ✦ 회사설립 3년 이상
  - ①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 ② 상장예정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 ✦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700억원 이상
- ✦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실적
  - \* 일반주주 수가 700명 이상
- ✦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또는 한정 의견
- ✦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상법은 주권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될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상법은 주권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될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그 중 기관의 운용에 대한 특칙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4).

### 2)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고, 이사·감사의 선임은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 542조의 4 제2항, 제542조의 5).

### 3)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칙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있어 요구되는 1-3% 지분요건을 완화하여 6개월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0.01%~3%의 주식만을 가지고서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6).

### 4) 이사회 구성(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8).



## 5)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상장회사로서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 내에 監査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0, 제542조의 11).

## 6) 감사선임·해임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상장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함)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대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2 제2항). 그리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결정안도 이사의 보수결정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2 제5항).

### • 상장회사의 기관구조에 적용되는 특칙

- ▶ 총회소집절차의 간소화 → 소집통지에 같음(2개 이상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
- ▶ 이사·감사의 선임 → 통지 또는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
- ▶ 소수주주권의 보호 → 6개월 이상 소유주주는 0.01~3%의 주식으로 소수주주권행사 가능
- ▶ 이사회 구성 → 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
- ▶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 의무화(자산이 1천억원 및 2조원 이상인 경우)
- ▶ 감사선임·해임의 경우 →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장회사의 기관에 관한 특칙 외에도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여러 가지 특칙이 있다.

### 1) 종업원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여야 한다(자금 제165조의 7).

### 2) 일반공모증자 허용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자금 제165조의 6).

### 3) 신주발행의 절차

공중을 상대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본시장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사업설명서를 작성·비치하여 주식청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4) 분기배당의 허용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자금 제165조의 12).

### 5) 공공적 법인의 경우 이익배당의 특칙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사주조

합원이나 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자금 제165조의 14).

## 6) 주식배당의 특칙

일반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하지 못하지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주식의 시가가 권면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자금 제165조의 13).



### 상장회사의 자본구조에 적용되는 특칙

종업원에 대한 신주의 우선배정	→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의 허용	→ 이사회 결의로써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 가능
신주발행의 절차	→ 발행 전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배당의 허용	→ 각 분기별로 이사회 결의로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허용
이익배당의 특칙	→ 공공적 법인은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이나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주 주에게 배당 가능
주식배당의 특칙	→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 가능

법인격부인은 법인격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론적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 법이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형식만을 빌린채 실제사업의 운영은 어느 주주 개인의 사업과 다를 없을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제3자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 악용될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주체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대법원 2001.1.19. 97다21604; 동 2008.8.21. 2006다24438).

### 1)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법인격부인의 법리(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piercing the corporate veil)는 주로 영·미의 판례법과 독일의 실체파 악이론(Durchgriffslehre)에서 발전된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는 법이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근본취지에 반하여 반사회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악용될 경우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이유와 권리남용의 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제2항의 실체법상의 근거를 들 수 있다.

### 2) 법리적용의 요건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요건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우선 기본적 요건으로서 법인격의 형해화(形骸化: 허울만 남는 것) 및 신의칙 내지 법인격의 남용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보충적 요건으로서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회사설립취소의 판결, 기관의 책임추궁 등 기존의 제도나 법률해석론으로서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

은 자를 도저히 구제할 수 없어야 한다. 법인격부인론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깨뜨려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3) 법인격부인의 효과

법인격부인의 이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된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채권자는 사원(주주) 등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인격의 부인으로 인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 법인격의 불인정

#### 법인격부인론

법인격 유지를 전제로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론적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것

**근거** 권리남용금지(민법 제2조 제2항)

**요건** 법인격의 형해와 및 신의칙 위반  
내지 법인격 남용

**효과** 특정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 부인

- 정상적인 경우의 채권행사
  - 회사에 대하여만 청구 가능
- 법인격부인의 법리적용시 채권행사
  -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





## 14.

# 자본금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재산액의 기준', 즉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고,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기준', 즉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상법 제451조 제1항),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제451조 제2항). 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되지는 않으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다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한편 상법상 자본금은 회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주가 급여하는 기금을 표시하는 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으로서 추상적·규범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가변적·구체적 회사재산과는 구별된다. 자본금은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 1) 회사의 입장에서 본 자본금

주식회사는 자본금조달의 수단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은 회사성립의 기초가 되며, 회사의 존속 중 자본금 충실을 위하여 순재산액을 유지하여야 할 규범적인 기준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므로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만 회사가 성립된다. 자본금은 성립 후 사업을 계속하는 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에 있어서 규범적 기준이 된다.

### 2) 주주의 입장에서 본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을 뜻하며 책임의 한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주는 보유주식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며, 법적으로 각종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의 크기는 주식의 소유를 통한 각자의 출자가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3) 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신용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재산은 증감변동이 심하고, 결산기 외에는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자본금은 증감절차를 밟기 전에는 불변이고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기준재산이므로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보아 회사의 신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또 결산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익 또는 손실을 산출하므로 수익성이나 회사의 전망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 주식회사의 자본금

###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기준

회사	주주	회사의 채권자
회사성립의 기초.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할 규범적 기준	주주의 출자액. 책임의 한도	회사의 신용도 공시. 회사의 수익성 · 전망을 파악하는 기준



## 15.

# 자본금의 3원칙

자본금에 관한 3원칙이란, 자본금확정의 원칙, 자본금유지의 원칙, 자본금불변의 원칙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므로 회사는 회사 및 그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에 상응하는 재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본금에 관한 다음의 3원칙이 확립되고 있다.

### 1) 자본금확정의 원칙

자본금확정의 원칙이란 회사설립시 자본금은 정관상 확정되어야 하고, 그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금의 규모를 확정, 공시함으로써 회사와 거래하는 자들에게 회사의 사업과 신용의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엄격한 의미의 자본금확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제317조 제2항 제2호) 전부 인수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 내에서는 아직도 자본금확정의 원칙의 잔재는 남아 있다.

### 2) 자본금유지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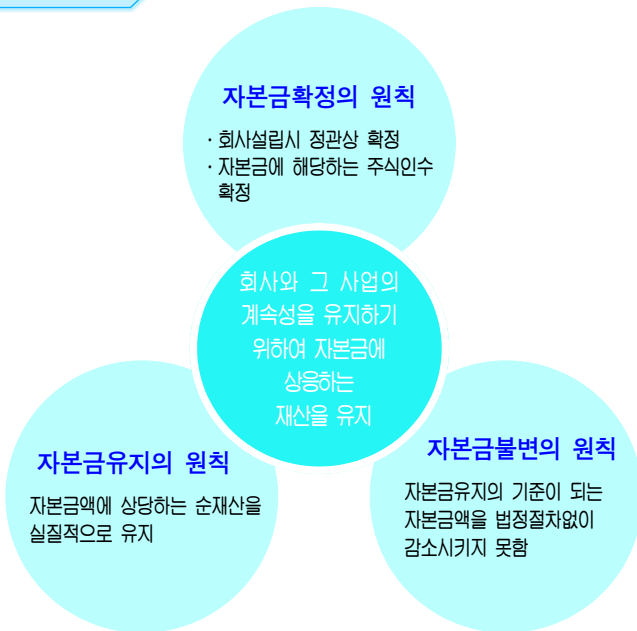
자본금유지의 원칙이란 회사는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순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회사의 존속을 보장하고 회사채권자 및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체로 납입의 충실화와 이익배당 등의 제한으로 나타난다.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상법 제330조·제417조), 발기인 등의 자본금충실책임(상법 제321조·제428조) 기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엄격한 규제(상법 제299조·제310조·제313조·제314조·제422조 등), 납입에 있어서의 임의상계금지(상법 제421조 제2항),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금지(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질취제한(상법 제341조의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상법

제342조의 2), 주식의 상호보유시 의결권행사의 제한(상법 제369조 제3항) 등은 전자의 예이고, 법정준비금제도(상법 제458조·제459조),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의 제한(상법 제462조·제462조의 2) 등은 후자의 예이다.

### 3) 자본금불변의 원칙

자본금불변의 원칙이란 자본유지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액을 법정절차없이 함부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상법상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 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16조), 자본금의 증액에 관한 한 이 원칙의 적용이 없다. 그러나 자본금의 감소를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438조),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상법 제439조 제2항) 등 엄격한 법정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것이다.

#### • 자본금의 3원칙



수권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 설립시에 자본금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후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케 하는 제도이다.

수권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 설립시에 자본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 전부의 발행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발행,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나머지 주식을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발행케 하는 자본금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회사가 성립되면서 자본금도 확정이 되고, 그에 대한 인수도 확정이 되어 자본적인 면에서 완벽한 상태로 출발하도록 하였다. 본래 자본금에 관한 권한은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고유의 권한이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 대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자체를 개최하기도 쉽지 아니하다. 또한 오늘날은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시의적절한 자본금조달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법은 소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자본금조달에 관한 결정을 맡김으로써 기동성있고 편의성있는 자본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수권자본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발행예정주식총수와 발행주식총수

회사의 정관에는 자본금총액이 기재되지 않으며, 다만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③ 일주의 금액만이 기재될 뿐이다. 그러므로 설립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회사의 자본금총액은 정관의 기재에 의해서만 알 수 없고, 그 시점에서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총수와 주금액에 의하여 또는 등기를 열람하여 알 수 있다.

### 2) 신주의 발행

신주의 발행은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

정하며,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다(상법 제 416조).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결의로도 가능하다.

### 3) 수권자본금제도와 주식의 할인발행

수권자본금제도를 채택한 후에도 주식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의 제한(상법 제330조)을 고수하면 발행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 이하로 하락한 경우 기동성 있는 신주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법은 예외적으로 주식의 할인발행을 인정하여(상법 제417조), 수권자본금제도를 보완하였다. 다만 주식의 할인발행은 자본금유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격하고, 할인발행 후에도 회사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변경등기에 의한 공시(상법 제420조 제4호)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 수권자본금제도의 보완책으로 무액면 주식제도가 있다(상법 제291조 제3호·제329조 제1항).

#### • 수권자본금이란?

##### 수권자본금제도란?

설립시 인가된 자본금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전부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 설립 후 잔여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게 하는 제도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②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 ③ 회사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17.

# 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그 종업원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도(從業員持株制度)란 회사가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그 종업원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투자자가 자사의 종업원이고, 투자대상이 자사의 주식이며, 회사가 그 종업원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원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 1) 종업원지주제도의 장점

종업원지주제도는 물론 완전하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문제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와 중요성을 갖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종업원의 애사심 함양과 노사협조의 증진, 근로의욕의 증진과 생산성 향상, 종업원의 정착화 등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장기안정주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가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고, 자본금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종업원측으로서도 소액자금에 의한 자사주 투자가 가능하고, 재산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의 취득과 관리를 일괄적으로 집행하므로 간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세법상 또는 회사의 장려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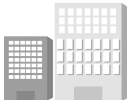
### 2) 근거법률

종업원지주제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65조의 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자금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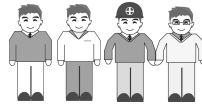
• 종업원지주제도의 장점

종업원지주제도



기업측

종업원의 애사심 함양  
 노사협조의 증진  
 근로의욕의 증진과 생산성 향상  
 종업원의 정착화  
 주가의 안정성 유지  
 자본금조달 수단



종업원측

소액자금에 의한 투자 가능  
 재산형성 촉진  
 간편한 투자  
 투자위험의 감소  
 경제적인 지원혜택

종업원지주제도는 ‘자본시장법’에 규정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1. 회사의 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자기 자신이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이 현실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는 기관이 하는 행위는 당연히 회사의 행위가 되고, 이것을 대표관계라고 한다. 기관에 의한 법인의 대표는 이론상 개인법적 대리와는 다른 것이나, 기관의 대표행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회사의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 또 회사는 소송능력도 있고,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도 있다.

## 2. 우회상장

우회상장은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결합을 통하여 상장회사 등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주식교환, 주식스왑(주식취득 및 제3자배정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 영업양수 및 제3자배정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사업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하고 상장심사를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주식스왑의 경우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지는 않으나, 상장기업의 자회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여 광의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 제 2 부

# 주식회사의 설립



## 주식회사 설립의 주체인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하고, 이들의 모임을 '발기인조합'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한다. 이들이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의 모임을 '발기인조합'이라 한다.

### 1) 발기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상법 제289조 제1항)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회사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할지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발기인이 아니고, 또 실제로 회사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사람은 발기인이 된다.

발기인제도는 주식회사에 특유한 것인데, 이는 주식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와 달리 정관에 의해 사원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설립절차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고 또 자본금충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립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해진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발기인의 지위는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인 회사의 구성원이 되며, 설립업무의 집행기관이 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법인이건 자연인이건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상법 제293조). 발기인은 설립

### 발기인이란?

회사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사무를 관장함에 있어 회사가 성립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의 책임을 진다.

## 2) 발기인조합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1인이어도 무방하나(상법 제288조),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발기인 사이에서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궁극적인 목적 아래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가 있게 되고, 이에 의하여 발기인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지는 않는다.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상호간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로서 그 자체는 설립후의 회사 또는 설립중의 회사와 직접적인 법적 관련은 없다.

발기인조합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실익은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 사이의 합의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설립과정에 있어 업무집행방법을 규율하며, 대외적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조합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정관작성, 주식인수 등 설립에 이르기까지 발기인의 일련의 행위는 이 조합계약의 이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성립시까지 존속한다.

### •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발기인

- 1인 이상
- 1주 이상의 주식 인수
- 내·외국인·법인·자연인 미성년자도 가능

#### 발기인조합

2인 이상 발기인의 단체  
(민법상의 조합)



상법은 회사설립관여자에게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과 행정벌인 과태료의 제재도 마련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그 절차가 복잡하여 설립절차에 과오나 부정이 생기기 쉽고 주식인수인 또는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을 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상법은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유사발기인, 납입금보관자(상법 제318조) 등 설립관여자에게 엄격한 민사책임을 지울뿐 아니라, 특별배임죄·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납입가장죄 등의 형사책임과 행정벌인 과태료의 제재도 있다(상법 제622조·제625조·제628조·제635조). 이들의 민사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각각 다른 책임을 진다. 먼저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충실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납입의 담보책임인 자본금충실책임(상법 제321조)과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1항)을 진다. 제3자에 대하여도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 제2항)을 진다. 그리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326조).

### 2) 이사·감사의 책임

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절차에 관한 조사보고임무를 소홀히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같은 원인으로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는 발기인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323조).

### 3) 검사인의 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5조).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의 책임은 이사·감사의 책임과 같다.

### 4)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설립에 참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수락한 자이다. 이 자는 사실 발기인은 아니나, 외관상 발기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이들에게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27조). 그러나 이들은 발기인으로서의 임무가 없으므로 임무소홀로 인한 책임은 있을 수 없고, 회사성립시의 자본금충실책임과 회사불성립시의 원상회복의무만을 진다.

#### • 설립관계자의 책임

##### 발기인의 책임

회사성립 : 자본금충실책임, 손해배상책임  
회사불성립 : 회사설립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 이사·감사의 책임

손해배상책임

##### 검사인의 책임

손해배상책임

##### 유사발기인의 책임

회사성립 : 자본금 충실책임  
회사불성립 : 원상회복의무

발기설립을 할 것인가, 모집설립을 할 것인가는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결정한다.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발기인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단순설립·동시설립)과 발기인이 주식 일부분을 인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모집설립(복잡설립·점차설립)의 방법이 있다. 발기설립을 할 것인가, 모집설립을 할 것인가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종래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의 설립경과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수인에 의한 회사설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집설립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었다. 그러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 발기설립절차를 간편하게 고쳤으므로 장차 발기설립도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모집설립이든 발기설립이든 2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설립준비를 하게 된다.

### 1) 정관의 작성

회사설립의 최초의 단계는 정관작성인데,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을 확정하고 이





## 21.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발기설립에서는 발행주식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야 하나, 모집설립에서는 각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한다.

### 1) 발기설립

정관작성과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후, 발기설립에서는 ① 발기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다. 주식인수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고 또 현실적인 필요도 없으므로 정관작성과 동시에 또는 그 전후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② 주식 총수에 대한 인수가 끝나면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1항). ③ 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발기인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 제1항). ④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감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의 설립경과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상법 제3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

### 2) 모집설립

모집설립에서도 ① 각 발기인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01조). 주주모집은 공모이든 연고모집이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으나, 응모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청약서주의(항목 28 참조)를 채택하고 있다(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율 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2통의 주식청약서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302조 제

1인 이상의 발기인

(상법 제288조)

정관의 작성·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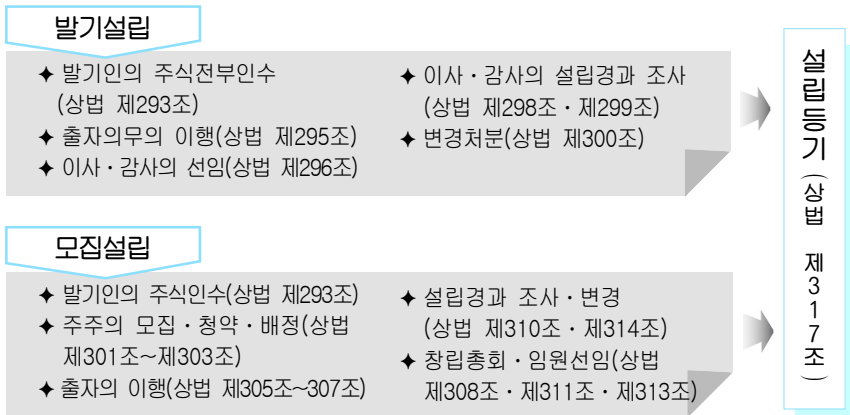
(상법 제289조·제292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상법 제291조)

1항).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으면 발기인은 모집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배정을 할 수 있다(배정자유 원칙). ②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인수가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이때 현물출자도 할 수 있다. 주식인수인이 주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발기인은 납입을 게을리한 주식인수인에게 소정의 실권예고부 납입최고를 하고(상법 제307조 제1항), 그래도 납입을 하지 않아 실권을 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모집을 할 수 있으며(상법 제307조 제2항), 만약 손해가 있으면 실권한 주식인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상법 제307조 제3항). ③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된 때에만,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상법 제310조 제1항), 감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10조 제2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는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로 감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10조 제3항). ④ 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08조 제1항).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의결권·의사·결의의 하자 등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08조 제2항). ⑤ 이사는 창립총회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이 종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상법 제3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講學上)의 개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간으로 말하면 태아에 해당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아직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 1)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본래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두 번에 걸친 재산의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인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등기 등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도 설립 후의 회사로 자연스럽게 이전된다.

###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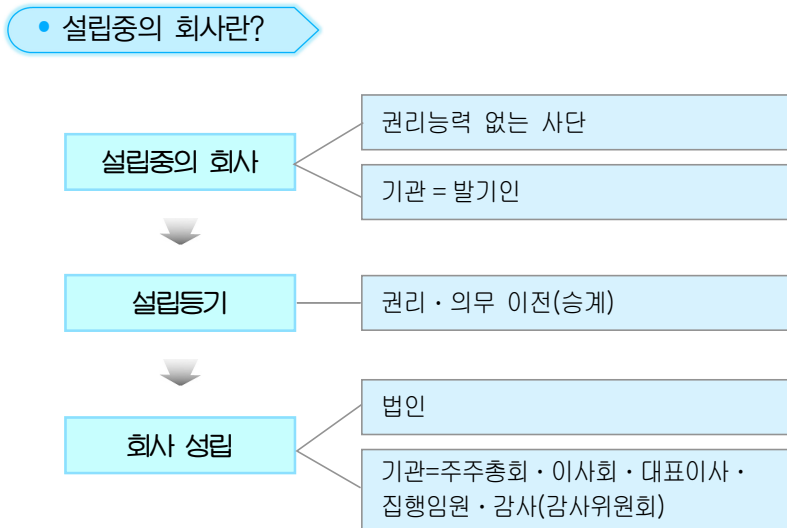
태아는 임신하는 순간 그 존재가 인정되겠지만, 설립중의 회사가 언제부터 존재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분분하다. ① 정관을 작성한 때라는 학설도 있고, ② 발기인이 주식을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도 있으며, ③ 발행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도 있다. 다수설과 판례(대법원 1990.12.26. 90누2536)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을 인수한 때라고 한다.

### 3) 성립후의 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권리·의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은 발기인이다. 따라서 발기인의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무는 일단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가 성립하면 당연히 회사로 이전한다. 다만 성립후의 회사로 귀속될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견해가 분분하다. ① 회사설립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학설도 있고, ② 회사설립을 위해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학설도 있으며, ③ 회사성립후의 개업을 위한 준비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학설이 있다. ②설과 ③설에 의하면 회사설립사무를 처리한다는 발기인의 고유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하므로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현재 ③설을 취하고 있다.

### 4) 설립중의 회사의 소멸

태아는 탄생하면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태아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과 같이, 설립중의 회사도 설립등기를 하면 법인이 됨과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한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말한다.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제 규정, 즉 이사회 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관리규정 등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 마치 국가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확실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고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정관은 회사 설립 후 금융기관, 관공서, 거래처 등에 제출하는 수가 많이 있으므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는가 하면,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도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도 있다.

###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상법 제289조)으로는 ① 사업의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一株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

### 정 관

-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칙
-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다. 이들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된다(상법 제329조 제3항).

## 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이 일일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히 회사설립에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이다.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으로는,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이 있다. 이들은 과대평가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한다. 그 밖에 집행임원을 두기로 한 것이나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등과 같이 임의로 규정을 두는 사항으로서 법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엇이든 관계없다.

###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 사업의 목적, 상호, 발행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

#### 상대적 기재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내용, 회사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종류·가격·수량과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로 규정을 두는 사항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사의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에 기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가 회사의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가 문제이다. 상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회사에도 적용하면, 회사가 목적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제한받고, 목적 이외의 행위는 권리능력없는 자의 행위로 간주되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적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것이다.

### 1) 제한설

회사의 권리능력을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한설의 근거를 들어 보면, ① 민법 제34조의 규정은 법인 일반의 성질에 따른 원칙을 밝혀 놓은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원칙은 회사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② 회사는 목적단체로서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인의 본질상 당연하다는 점, ③ 회사의 목적은 정관에 기재하고登記되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악의가 의제되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목적을 확인하지 못한 제3자가 불이익을 입는 일이 있더라도 부득이하다는 점, ④ 회사의 사업목적을 믿고 투자한 사원 또는 제3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제한설도 ‘목적의 범위’의 의미를 ‘회사의 목적인 사업에 속하는 행위 및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상당 또는 유익한

####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행위' 심지어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일체의 행위'까지로 확장해석하여 왔다 (대법원 1987.9.8. 86다카1349; 동 2005.5.15. 2003다57659·57666). 결국 목적의 범위가 극히 넓게되어 실제로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된다. 판례는 제한설을 취하면서도 목적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설과 결론을 같이 한다.

## 2) 무제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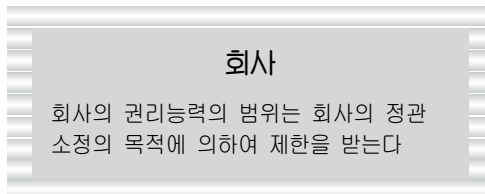
최근에는 회사가 일단 법인격이 인정된 이상 널리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을 갖고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무제한설이 다수설이다.

그 이론적 근거로는, 대체로 ① 회사의 활동범위는 실제로는 매우 넓은 것인데 그 능력을 제한하면 제3자가 목적범위 내의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회사가 그것을 남용하여 책임을 면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는 점, ② 민법 제34조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규정으로서 영리법인인 회사에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고, 사실 유추적용할 명문의 근거도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3) 결 론

법인은 법률이 인정하는 인간이므로 법인의 능력에는 투자자의 의사, 설립 및 활동의 목적 등 내재적 한계가 있다.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관 소정의 목적은 회사기관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하므로 폐지될 수는 없는 것이며, 정관 소정의 목적을 위반한 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사원이 손해를 입는다면 위법행위유지청구(상법 제402조), 손해배상청구(상법 제399조), 대표소송(상법 제404조) 및 이사의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클라이브 크룩은 "주식회사의 경영자가 주주의 지시 없이 주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헌금은 목적범위 내로 인정되고 있다.

### • 회사의 목적범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인데,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다같이 변태설립사항(항목 24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참조)으로서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의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에서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이들에 준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 자체가 필요 없다(상법 제299조 제2항).

### 1)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금전을 갖지 아니한 자는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생기는 차손을 피할 수 있고, 회사가 설립 후 구입해야 할 재산을 출자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 회사재산으로 함으로써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될 경우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현물출자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각종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 현물출자

-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제(출자자의 성명·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재산인수

- 특정인의 재산을 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것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재산의 종류·수량·가격·양도인의 성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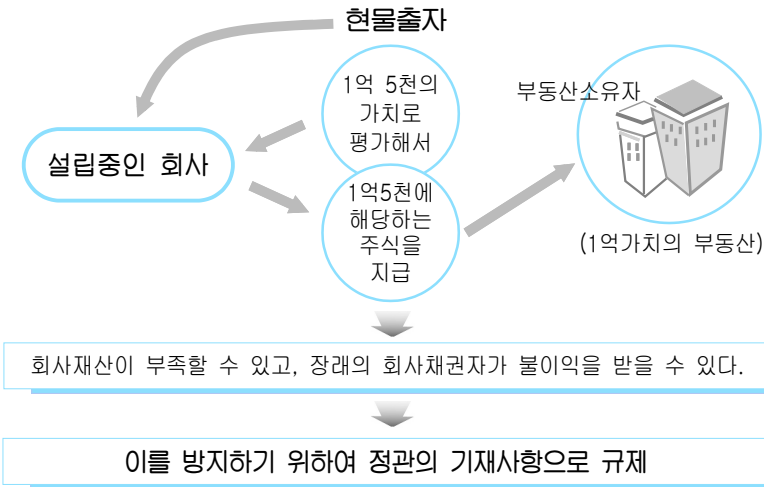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290조 제2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동산·부동산·유가증권·특허권·광업권·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도 될 수 있다.

## 2) 재산인수

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가 성립한 후에 그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290조 제3호).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래 발기인은 회사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와 설립에 필요한 행위만을 할 수 있고, 성립 후의 회사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성립 후 공백없이 회사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인수계약이 인정된다.

재산인수는 현물출자에 가해지는 제약을 피하면서 현물출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상법은 이를 현물출자와 같이 변태설립사항으로 하여 정관에 기재하게 하면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인의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2.9.14. 91다33087).

### •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설립비용이란 회사설립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 중 설립비용이란 회사설립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무실의 임차료, 통신비, 비품비, 정관 및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비,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사용인의 보수, 납입금 취급은행의 수수료 등이 이에 속한다. 설립비용은 정관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상법 제290조 제4호). 설립비용은 회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회사의 자본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과다하게 지출하여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변태설립사항으로 한 것이다.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는 방식은 반드시 사항별로 지출내역을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 금액만 표시하더라도 무방하다.

### 1) 개업준비비·등록세의 제외

성립 후의 회사사업상 필요한 공장, 건물, 집기 등의 구입비는 개업준비비로써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발기인은 개업준비행위를 할 수 없는 이상, 개업준비비용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업준비를 위한 금전차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등록세도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등록세는 자본금에 대한 일정비율(1,000분의 4)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과다계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당연히 회사의 부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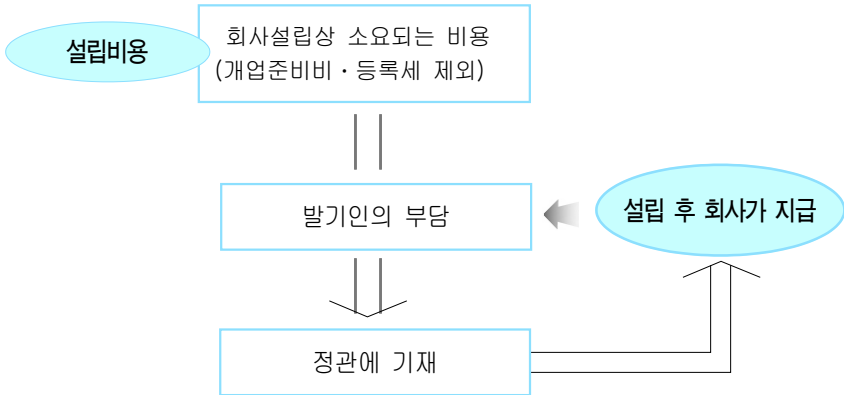
### 2) 정관 기재의 효력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생긴 채무는 정관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법원의 검사와 창립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성립된 회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먼저 지급하고 성립된 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한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하였거나 정관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설립비용은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고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를 이유로 회사에 청구할 수도 없다. 회사도 주주총회 결의로 그 지출을 추인하거나 또는 회사 성립 후 정관변경 등으로 이를 회사의 부담으로 할 수 없다.

정관에 기재하였다 하여 그 지출에 관한 발기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이 위법·부당하다면 발기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정당하게 지출한 설립비용이라도 회사가 불성립으로 그친 경우에는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회사설립비용



주주의 모집에 있어 응모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청약서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기설립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다. 그러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각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면 되므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01조).

### 1) 주주모집의 방법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보통 모집주주라고 하는 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계없다. 모집주주가 인수하여야 할 주식의 수에 관하여서도 최저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1주라도 무방하다.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은 공개모집이건 연고모집이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모집을 할 경우(모집상대방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모집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설립시에 연고모집에 의해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모집에 응하여 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주식청약을 하게 되고 그 청약 내용에 따라 주식의 배정과 인수, 그리고 출자를 행하게 된다.

### 2) 주식청약서주의

주주의 모집에 있어 응모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응모주주가 회사의 현황을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발기인으로 하여금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변태설립사항 외에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응모주주는 이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서만 주식인수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였다(상법 제302조). 주식청약서는 회사조직의 대강과 참고자료를 기재한 사업계

회서를 작성·공고한 후에 주식청약을 받도록 강제하고 과대선전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영미법상의 사업계획서에 상당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모집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모집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발행인은 이 신고서와 일괄신고서(증권신고서)에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자금 제119조), 우리나라에서도 유가증권의 모집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주주의 모집

#### 모집의 방법

##### 공개모집

→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서 모집

##### 연고모집

→ 일반적인 모집의 형태(절차가 간편하다)

#### 주식청약서주의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및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설립인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되므로 주주의 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집설립을 하게 되는 경우 발기인은 총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때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은 발기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자유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증권의 모집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자금 제9조 제7항).

### 2) 공개모집의 절차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만 주주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자금 제119조 제1항). 그러나 일괄신고서(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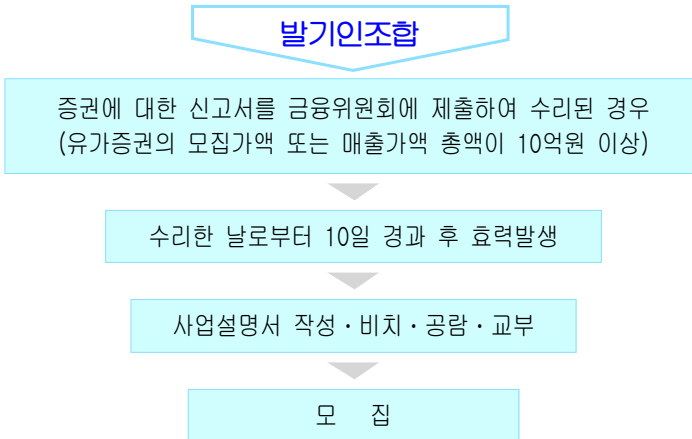
#### 모집설립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인수할 자를 모집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자금 제 119조 제2항). 발행인은 신고서와 일괄신고서(양자를 합하여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예측정보)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자금 제119조 제3항).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자금 제 120조 제1항).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금 제123조 제1항).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자금 제125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자금 제127조).

• 공개모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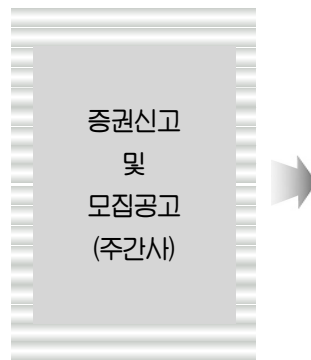


주금납입은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을 하여야 한다.

회사설립시 발기설립으로 할 것인가 모집설립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면 각 방법에 따라 주주를 확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때 인수가액은 주금액 뿐만 아니라,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때에는 액면 초과액을 포함한 금액이 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 1) 주금납입의 공정

주식회사는 국가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출자의 이행을 공정하게 할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을 하여야 하고(상법 제295조 제1항 제2문),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2항·제302조 제2항 제9호). 또한 납입금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306조). 납입금을 받아 보관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 그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18조 제1항), 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설립등기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이므로 주금납입의 부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



인 회사를 받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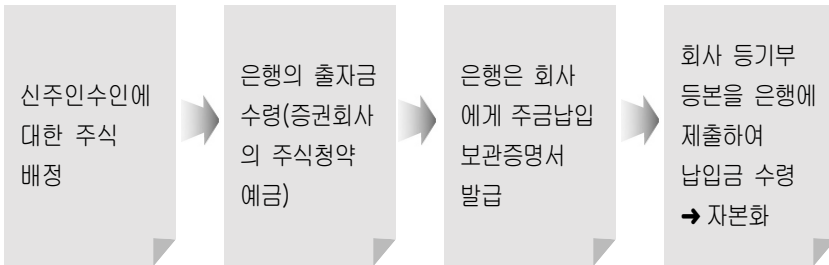
## 2) 주금납입의 실제적 절차

모집설립의 경우 주금납입의 실제적 절차는 ① 대행증권사인 주간사가 증권신고 및 모집공고를 내고, ② 모집된 신주인수인은 보통 증권사의 주식청약예금을 통하여 주식의 배정을 받고, ③ 주금납입은행은 이로부터 출자금을 수령하게 된다. ④ 주금의 납입이 있는 후 납입은행은 설립 중의 회사나 회사에 대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⑤ 설립 중의 회사나 회사는 이를 등기에 등재한 후, ⑥ 등기부 등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본화할 수 있게 된다.

## 3) 가장납입의 문제

주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발기인 등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일시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가장납입이라 한다. 이때에는 자본금이 한푼도 없는 주식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장납입이 유효인가 아니면 무효인가가 문제되는데, 학자들은 실질적인 자본구성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6. 2002다29138)는 어쨌든 현실적인 납입이 있었으므로 가장납입이 있었더라도 납입은 유효하고, 따라서 회사설립도 유효라고 한다.

### • 주금납입의 절차



창립총회란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전신이다.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의무사항이다.

창립총회란 회사설립의 종결단계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 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은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권, 소집절차, 결의의 하자(瑕疵), 기타 창립총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08조 제2항). 반면 그 권한사항은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설립경과의 조사 등 설립절차를 마무리하는 사항에 한정되고 결의방법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한다(상법 제309조). 인수된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08조 제1항). 창립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발기인으로부터의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인은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 및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상법 제311조 제1항·제2항),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12조).

### 2) 이사·감사·검사인의 조사·보고수령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

#### 창립총회

-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 (주주총회의 전신)
- 창립총회의 성립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 인수된 주식총수의 1/2

기인은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10조 제1항·제2항).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13조 제1항). 발기인 및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313조 제2항·제298조 제2항·제3항). 또한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발기설립과 같이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도 있다(상법 제314조 제1항·제2항).

### 3)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상법 제316조 제1항), 소집통지서에 이런 뜻의 기재가 없는 때에도 동일하다(상법 제316조 제2항). 정관변경시 회사의 목적까지 변경할 수 있는가 의문이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회사설립 후 변경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보다 사전변경을 인정하여 설립 이전에 목적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 창립총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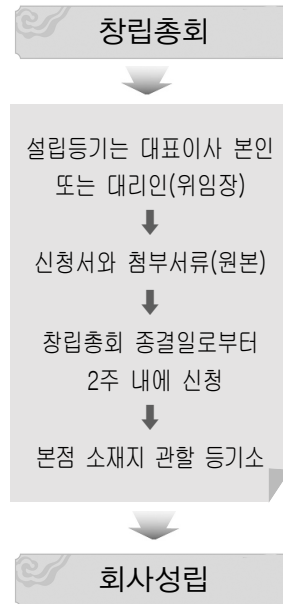
- 발기인으로부터의 보고수령과 이사·감사의 선임
- 이사·감사·검사인의 조사·보고 수령
-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회사실체형성절차가 완료된 후 2주 내에 대표이사 신청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회사가 성립한다.

정관작성과 공증, 출자이행 및 발기인 총회 또는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이사와 감사의 선임 그리고 설립경과조사·보고가 완료되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지만, 회사설립등기를 하여야만 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된다. 회사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설립경과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2주내에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회사의 설립 당초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한다.

### 1) 등기사항

설립시에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① 회사의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금의 액,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⑪ 지점의 소재지, ⑫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⑭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제기한 사항, ⑮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⑯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⑰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⑱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⑲ 감사위원회 설치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위의 사항 중 ①, ②, ⑤, ⑥, ⑫, ⑯, ⑰에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3항). 본점의 이전도 등기사항이며, 위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제181조 내지 제183조).

## 2) 등기신청서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법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관,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청약서, ④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사항(상법 제291조)을 증명하는 서면,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⑥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⑦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⑧ 창립총회의 의사록, ⑨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⑩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와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⑪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제11호).

## 3) 절차 및 효과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고, 회사가 성립된다(상법 제172조). 이제 발기인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는 소멸하고 발기인을 통하여 설립 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당연히 설립 후의 회사로 승계된다.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그 밖에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면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제한되며(상법 제320조 제1항), 권리주(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상법 제319조 참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상법 제355조 제2항), 발기인 등의 자본충실책임·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소로써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다(상법 제328조).

### 1) 법인설립신고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9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설립신고시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정서류인 ① 법인설립신고서, ② 설립시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③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때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소·성명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재한 증명서 등이다. 법인설립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점설치신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정서류로는, ① 임원명부, ② 주주의 주민등록 등본, ③ 대표이사와 주주의 호적 등본, ④ 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⑤ 주주출자확인서, ⑥ 주주의 인감증명서 등이다.

#### 법인설립신고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단, 사업자등록시  
법인설립신고 의제)

## 2) 사업자등록신청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직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법정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 등기부 등본,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등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년월일,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 밖에 대표이사과 과점주주의 재산세납부증서가 정상적인 영업개시 여부 판단 및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보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 3) 기타의 조치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 • 설립 후의 절차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단, 신규창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 가능)

기 타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연금 · 건강보험 의무가입



### 1. 가장납입의 경우 형사처벌

가장납입(假裝納入)이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된다.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및 동 해사죄(형법 제229조)의 처벌을 받는다. 주식발행의 편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이때 가장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2007도5206).

### 2. 벌처펀드(Vulture Fund)

벌처펀드는 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ing)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형성된 국제펀드(international fund)의 일종이다. 부실자산이나 부실기업을 싸 값에 인수해 직접 정상화시키거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려 고가에 되팔아 차익을 내는 기금 또는 회사를 말한다. Vulture는 동물의 시체를 뜯어 먹는 대머리 독수리를 뜻한다.

### 3. 헤지 펀드(Hedge Fund)

헤지펀드는 많은 돈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자금 또는 회사를 말한다. 헤지란 위험을 상쇄하는 베틀이나 투자 등을 통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 제 3 부

## 주식과 주권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단위인 금액을 가리키고, 동시에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을 의미한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물적 요소인 자본금과 인적 요소인 주주를 결부시키는 개념으로서, 주식이라는 용어에는 법률상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단위인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①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의미이다(상법 제329조 제2항). 즉, 주식회사는 일정한 출자의 단위를 설정하고 이것을 집적함으로써 자본금이라는 물적 실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출자의 단위를 주식이라고 한다.

②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즉 주주권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주주권은 자본금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이 때때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상법은 이를 '주권'이란 용어로 표현하여 주식과 구별하고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제336조). 모든 유가증권이 권리의 유통을 보장 촉진하기 위하여 창안되었듯이, 주식도 주권이란 형태로 유가증권화시켜 주식양도시 공시하게 함으로써 최대의 유통성을 보장한다.

###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권은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0. 3. 23. 99다67529). 따라서 회사가 주권을 인쇄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주권은 무효이다. 또한 회사가 주권을 작성 후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압류·제권판결 등도 불가능하다.

## 2) 주주권의 행사와 주권과의 관계

주주의 지위에 기한 권리의 행사시(주주총회 등)에는 대부분 주권의 제시가 필요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권이 발행된 이상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식 양도계약서의 작성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고, 반드시 주권이 양수인에게 교부되어야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

## 3) 주주권의 이전과 주권과의 관계

주식을 이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기만 하면 된다. 주권상장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실제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진다(항목 47 참조).

## 4) 주권불소지제도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주권불소지의 의사)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그 신고된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58조의 2 제1항). 이를 주권불소지제도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을 분실·도난당한 경우에는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상법 제336조 제2항) 제3자가 쉽게 선의취득을 하게 되고(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주주가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크다. 분실·도난의 위험이 있는 주권을 구매여 소지할 필요가 없다.

### • 주식이란?

#### 자본금의 구성단위



#### 주식



누구든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대중자본의 결집이 가능하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경영권은 회사의 운영권을 의미한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하고, 경영권은 회사의 운영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유자가 당연히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 1) 자본과 경영권의 분리과정

①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기업 또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개인 내지 몇 사람이 출자자(소유자)로서 직접경영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소유경영자는 노동자를 별도로 고용하여야만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으므로 자본과 작업은 상호 분리된 상태이다.

② 기업이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노동자를 감독할 자를 채용하여 작업관리를 위임하게 되면 경영관리와 작업관리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③ 기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경영관리의 복잡성마저 증대되면 경영관리기능의 일부 내지 대부분까지 부하에게 위임·분화하여 소유경영자는 기업의 최고경영권을 계속 지배하되 경영관리기능의 일부 내지 대부분을 고용경영자에게 위임하여 자본과 경영권의 일부 분화가 이루어진다.

④ 기업이 계속해서 더욱 대형화·국제화되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경영자의 책임하에 자율적, 체계적 경영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기업의 유지·성장이 어렵게 된다. 이는 대규모 자본금조달의 필요성과 기업경영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자본과

#### 자본과 경영권의 분리과정

##### 기업규모의 증대에 따라 경영관리와 작업관리의 분리

- 자본과 경영권의 일부 분화
- 전문경영자에 의한 기업 경영권의 지배



경영권이 인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이와 같은 자본과 경영의 완전분리는 전문경영자들에 의한 기업 경영권의 지배를 뜻한다.

## 2) 자본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이유

자본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이유는 자본의 측면과 경영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대규모화 됨에 따라 더 많은 자본금조달을 위해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도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형태는 자본금의 증권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분산된 다수의 주주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며 대규모의 자본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고도의 분산은 증권시장의 발전에 따라 더욱 촉진되고 주주의 목적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대중자본이 필요치 않고 주식이 고도로 분산되기 전에는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주식의 고도분산은 종래 주주들의 관심을 경영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이익배당이나 투기이득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시켜,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 전문경영자에 의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되었다.

②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전문화·복잡화 됨에 따라 오늘날의 기업은 전문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영자에 의하여서는 성공적으로 경영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인 기업일수록 전문경영자에게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맡길 수밖에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 • 자본과 경영권의 분리

#### 분리이유

- 자본의 측면 : 더 많은 자본금조달을 위한 주식의 고도분산
- 경영의 측면 : 기업경영의 복잡화에 따른 전문경영자 요구



주식은 여러 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무액면주식의 의의

무액면주식(non par value share)이란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주식의 수만을 기재하거나, 정관과 주권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주식을 말한다.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고 주식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액면주식이나 다른 액면을 100원으로 하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으므로,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은, ① 권면액이 없으므로 권면액을 기준으로 한 할인발행(상법 제330조)의 문제가 없어 자본금조달이 쉽고, 동시에 액면초과금에 대한 문제도 없다. ②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액면과 비교하는 관념을 없애 주고,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률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③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증자를 할 수 있으며, 흡수합병·자본금감소 및 주식분할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 2) 무액면주식의 발행허용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29조 제1항), 하나의 회사가 양자를 모두 발행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무액면주식의 발행이 인정된다(자금 제196조).

### 3) 자본금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법은 회사설립시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하도록 한다(상법 제291조 제3호).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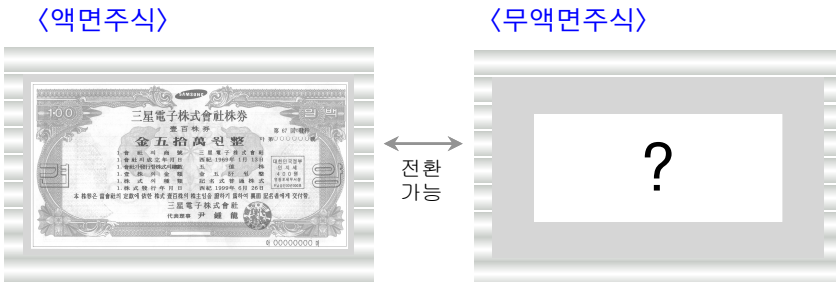
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제1문).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제2문).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제4항). 이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환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제329조 제5항). 전환의 효력은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제329조 제5항).

#### 5) 기타 사항

회사는 신주발행시 이사회 등에서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16조 제2의 2호). 또한 본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제1호 본문),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



회사는 정관에 정해두면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외에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 등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1) 종류주식의 발행

상법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종류주식이란 주식의 권리내용이 각각 다른 주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류주식은 회사측에 자금조달방법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법정의 종류주식만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제1항).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 2) 종류주식의 활용

종류주식은 첫째, 회사의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배당우선주식이거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하면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상환주식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사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다. 의결권제한주식을 활용하여 ‘배당우선 + 의결권제한’ 주식을 발행한다면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를 유치하여 이사의 선임 등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반대로 경영권확보의 필요가 있는 자에게는 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된다. 의결권제한 주식은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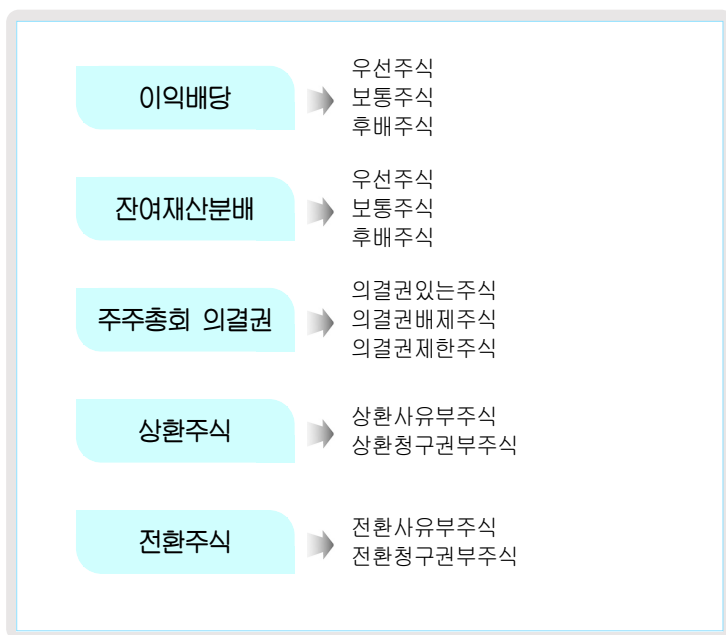
### 3) 종류주식 발행 절차

상법에서 인정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한편, 종류주식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종류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종류주주총회의 개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다양한 종류 주식



상법이 인정하는 종류주식의 기본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당해 종류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 2 제1항).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 2 제2항).

### 2)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주식은 의결권배제주식 또는 무의결권주식이고, 정관이 정하는 일부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권이 없는 종류의 주식은 의결권제한주식이다.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 3 제1항). 다만, 이러한 종류의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 3 제2항). 이러한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사 선·해임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주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의결권 없는 보통주). 회사는 의결권제한주식은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그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의3 제1항).

회사가 의결권제한주식을 발행하면 회사지배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외에 경영권 승계나 적대적 M&A 방어에 활용할 수 있고 주주총회 운영에 따른 주주관리비용 및 사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〇〇% 이상일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면 그 비율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적대적 기업매수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결권 행사조건은 일정한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가 문제되나, 주주간 차별이 주주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3)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즉, 상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고, 상환주식은 보통주로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45조 제5항). 상환권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3항).

### 4)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으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권은 회사에 부여할 수 있고(상법 제346조 제2항 제1문), 주주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1항).



## 종류주식의 구체적 유형(조합)

종류주식은 한 가지 유형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또는 3가지의 요소를 결합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현실적으로 발행가능한 종류주식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보통주와 상환주식의 결합은 법률상 허용하지 않으므로 발행이 불가능하다. 의결권 있는 사항을 정한 종류주식은 발행할 수 없고, 의결권이 없는 사항을 정한 종류주식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주식의 내용에 따른 유형구분 〉

이익의 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소멸(상환·전환)
(1) 이익배당우선주식	(i) 의결권있는주식	(가) 상환사유부주식
(2) 이익배당보통주식	(ii) 의결권배제주식	(나) 상환청구권부주식
	(iii) 의결권제한주식	(다) 전환사유부주식
		(라) 전환청구권부주식

### 〈 한가지 유형의 종류주식 (6종류) 〉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소멸 (상환·전환)	발행 가능	비 고
(1) 이익배당우선주식			✓	
(2) 이익배당보통주식			✓	
	(i) 의결권있는주식			(2)에 포함 되므로 제외
	(ii) 의결권배제주식		✓	
	(iii) 의결권제한주식		✓	
		(가) 상환사유부주식		단독발행 불능
		(나) 상환청구권부주식		단독발행 불능
		(다) 전환사유부주식	✓	
		(라) 전환청구권부주식	✓	

〈 두 가지 결합형의 종류주식 (6종류) 〉

결합형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소멸 (상환·전환)	발행 가능	비 고
(1) + ( i )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있는주식			(1)과 동일
(1) + (ii)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배제주식		✓	
(1) + (iii)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제한주식		✓	
(1) + (가)	이익배당우선주식		상환사유부주식	✓	
(1) + (나)	이익배당우선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	
(1) + (다)	이익배당우선주식		전환사유부주식	✓	
(1) + (라)	이익배당우선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	
(2) + ( i )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있는주식			(2)와 동일
(2) + (ii)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배제주식			(ii)와 동일
(2) + (iii)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제한주식			(iii)와 동일
(2) + (가)	이익배당보통주식		상환사유부주식		발행불능
(2) + (나)	이익배당보통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발행불능
(2) + (다)	이익배당보통주식		전환사유부주식		(다)와 동일
(2) + (라)	이익배당보통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라)와 동일

〈 세 가지 결합형의 종류주식 (12종류) 〉

결합형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소멸 (상환·전환)	발행 가능	비 고
(1)+( i )+(가)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상환사유부주식		(1)+( i )는 (1)과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1)+(가), (1)+(나), (1)+(다), (1)+(라)와 동일
(1)+( i )+(나)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1)+( i )+(다)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전환사유부주식		
(1)+( i )+(라)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1)+(ii)+(가)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사유부주식	✓	
(1)+(ii)+(나)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	
(1)+(ii)+(다)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전환사유부주식	✓	
(1)+(ii)+(라)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	
(1)+(iii)+(가)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사유부주식	✓	
(1)+(iii)+(나)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	
(1)+(iii)+(다)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사유부주식	✓	
(1)+(iii)+(라)	이익배당우선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	
(2)+( i )+(가)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상환사유부주식		발행불능
(2)+( i )+(나)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발행불능
(2)+( i )+(다)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전환사유부주식		(2)+( i )는 (2)와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2)+(다), (2)+(라)와 동일
(2)+( i )+(라)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있는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2)+(ii)+(가)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사유부주식		발행불능
(2)+(ii)+(나)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발행불능
(2)+(ii)+(다)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전환사유부주식	✓	
(2)+(ii)+(라)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	
(2)+(iii)+(가)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사유부주식		발행불능
(2)+(iii)+(나)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청구권부주식		발행불능
(2)+(iii)+(다)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사유부주식	✓	
(2)+(iii)+(라)	이익배당보통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전환청구권부주식	✓	

☞ 기본적 유형의 종류주식을 조합하여 발행가능한 종류주식의 수 - 24종류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뜻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직원의 업적과 연결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3 제1항).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각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3 제2항).

###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로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그러나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 위에 열거한 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부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상법 제340조의 2 제2항).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

회사의 임직원이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 또는 양수할 수 있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 5)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체결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3 제3항).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더라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았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1.3.24. 2010다85027).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상법 제542조의 3 제4항).

####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 4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더라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았으면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다(상법 제542조의 3 제4항).

#### 7)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 4 제2항).

#### 8) 변경등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본 점소재지에서 소정사항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 5, 제351조).

#### 9) 상장회사의 특칙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특칙이 있다(자금 제165조의 17 참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란 주주가 주식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 1) 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내용이 되는 주주권으로서, 주권과 떨어져서 양도나 전부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권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 즉 채권자적 권리(예컨대, 특정액의 이익배당금지청구권)와는 구별된다.

주주의 권리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면,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인 자익권(예컨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등)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인 공익권(예컨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구권, 각종의 소권 등)이 있다.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면, 소정의 비율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대표소송제기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이상 100분의 1),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주주제안권(이상 100분의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의 보유기간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행사에 필요한 주식 이상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7. 18.

2012다86163).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취득이 자유롭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량의 주식을 매집하여 회사에 소수주주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나 박탈할 수 있는 비고유권이냐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 2) 주주의 의무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 의무를 말하는 것이며,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상법 제331조)일 뿐 이 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다(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상법 제421조 제2항). 또 회사도 납입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의 내용	일반 주식회사		상장회사	
	보유기간	지주비율	보유기간	지주비율
대표소송권, 이익공여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청구권	불문	1%	6월	0.01%
이사·감사·청산인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1%	"	0.05% 또는 0.025%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	3%	"	0.5% 또는 0.25%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	"	0.1% 또는 0.05%
주주제안권	"	"	"	1% 또는 0.5%
임시총회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권	"	"	"	1.5%
집중투표청구권	"	"	불요	1%
회사해산청구권	"	10%	-	-
총회검사인 선임	"	1%	-	-

\* 위의 표에서 '또는'으로 표시된 지주비율은 상법 시행령에 의하여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위와 별개로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 은행법 제17조, 자금 제29조, 보험업법 제19조).

# 41.

## 주주명부

주주명부란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는 장부이다.

주주명부란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는 장부(상법 제352조)를 말하며, 상업장부는 아니다. 이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상법 제396조 제2항).

### 1) 주주명부의 내용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기재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이 밖에 질권등록사항(상법 제340조) 및 주권불소지사항(상법 제358조의 2) 등도 기재한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전환의 취지·조건 및 기간과 새로이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2항·제347조). 이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공유주식의 권리행사자의 성명과 주소(상법 제333조 제2항 참조) 등이 있다. 주주명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이사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 2)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권은 항상 유통되고 있으므로, 회사는 의결권의 행사나 이익의 배당 기타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권리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명의개서)을 정지하거나(주주명부의 폐쇄), 일정한 날(기준일 또는 등록일)을 정하고 그 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 주주명부

- 이사가 작성
-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는 장부

권리자로 볼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신탁재산표시의 기재 및 말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변동과 상관없는 주소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주권발소지인신고, 불소지신고주식의 주권발행청구 등은 할 수 있다.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않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주주는 계속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주식양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법은,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하며(상법 제354조 제2항), 기준일도 권리행사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54조 제3항). 회사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상법 제354조 제4항 본문), 정관으로 이를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회사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병용할 수 있다.

주주명부 폐쇄 중에도 명의개서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은 폐쇄기간 후에 발생한다. 명의개서 후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 실질적 주주로 추정되며(추정력),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면 면책된다(면책력).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를 실질주주로 인정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이사 등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며(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주식양수의 효력과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3.7.13. 92다40952).

### 주주명부의 폐쇄

- ◆ 의결권의 행사 · 이익배당 · 기타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권리자(주주 · 질권자)를 확정
- ◆ 일정기간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명의개서)을 정지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에게만 주주권 인정”

(대법원 2017년 3월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안돼” vs. “진정한 권리자 인정해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을 형식주주라고 하고, 이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를 실질주주라고 한다. 가령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나,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구(舊)주주가 계속 명부상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경우 실질주주 문제가 생긴다. 종래 법원은 실질주주의 존재가 확인되면 형식주주를 배제하고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했다. 권리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년 초 회사가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고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오직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형식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7년 3월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원고는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식 총 5092만9817주 중 260만4300주의 명의상 소유자다. 피고 회사는 2014년 3월28일 연 정기주주총회에서 모씨를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을 했다. 원고는 해당 주총결의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및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해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 취소를 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명의대여주주에 불과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해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전 항변을 했다.

## □ 남의 자금으로 주식 취득한 형식주주

사정은 이렇다. 원고는 2013년 10월7일께 은행에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했다. K는 자신과 자신의 처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 등의 명의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75억5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했다. 원고는 이 돈을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원고의 주식매수자금은 K가 송금한 돈에서 나왔다는 것이 증명됐다. 원고는 K로부터 법정에서 자금을 차용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확정한 사실은 K가 위 주식의 실질주주고 원고는 형식주주라는 점이다. K는 원고를 내세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에게 경영권 매수를 제안해 사실상 주주로서 행세한 적도 있어서 회사나 대주주는 K가 실질주주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자신이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형식주주일 뿐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없다고 다했다.

## □ 대법원 “상장사는 형식주주만 인정”

종래 판결이라면 피고의 주장이 맞다. 따라서 원심(서울고법 2015년 11월13일 선고, 2014나2051549 판결)은 원고가 명의대여 주주에 불과한 점을 들어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인하고 피고 회사의 항변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피고 회사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고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장회사의 경우 오직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형식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식주주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논리적 모순이자 주주명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물론 주주명부에 형식주주가 기재된 것 자체가 실질주주가 형식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 형식주주만 배타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거래상으로는 명의차용이 흔히 있고, 명의차용이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금융실명제와 같은 주식실명제 제도가 도입된 것도 아닌데(금융실명제법도 차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차명을 금지한다) 주주명부와 관련해 이런 판단은 진정한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를 박탈해 ‘권리자에 의한 권리행사’라는 중요한 사법원리(私法原理)를 저버린 것이다.

## □ 실질주주 인정한 종래 판결 폐기

이 판결은 많은 종래의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왔다. 첫째, 명의대여자의 경우 과거에는 명의차용인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젠 명의대여자만이 주주로 인정된다. 둘째, 주식을 인수 및 양수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지위를 인정했는데, 이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될 수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셋째,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가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 종래의 많은 판결이 폐기됐다. 넷째,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고, 또 이를 용이하게 증명해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종래의 판결이 폐기됐다.

이 외에도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이제는 명의상 주주인 수탁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권리가 없게 된다. 사업자가 은행에 주식을 양도담보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된다. 실질주주는 이제 장부열람청구, 임시총회소집청구, 이사직무집행정지청구,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자 파악’ ‘1인 회사의 판단’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채당납입금 상환의무자 판단’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의 판단’ ‘주식상호소유 여부 판단’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 10%를 초과 소유한 타회사 주식, 상호보유주식,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감사선임의 경우 3%를 등에 대한 판단’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 연대책임’ 등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 실질 권리자 보호해야

이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인과 실질적 소유자와의 내부적 관계는 그들 사이의 사실관계를 따져 소유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대외적 권리행사는 주주명부에 의해야 하게 됨으로써 권리 귀속과 권리 행사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논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실질적 권리자를 찾아 보호함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함에도 주주명부라는 형식에 얽매어 권리 없는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됐다. 무슨 대단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형식주주를 인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질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으나 실질을 찾아 정의를 세우라는 것이 법원에 내려진 국가와 국민의 명령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뒤 앞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으로 그때그때 모면하려는 계책으로 보일 뿐이다.

### ■ 독일 회사법, 주주명부만 인정... 국내법은 명문 규정 없어

주주명부는 주식·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는 장부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등기부가, 금융실명제는 금융기록이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가능한 것이다.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비교적 엄격히 관리되나 비상장회사는 세무서 보고용을 따로 만들어 두는 등 신뢰도가 극히 낮다. 독일 회사법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다.

명문 규정이 없는 한국에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 추정(推定)되지만, 추정은 반증(反證)에 의해 깨뜨려질 수 있다. 그리고 상장회사라 해서 주주명부의 의미를 비상장회사의 그것과 법적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2017. 10. 20. 한국경제신문)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러스트=조영남기자

주식의 매매와 양도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식의 매매와 양도란 거래에 의한 주식의 이전을 말한다. 주식의 매매와 양도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의무가 양수인(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이 주주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주식의 양도는 곧 사원권의 양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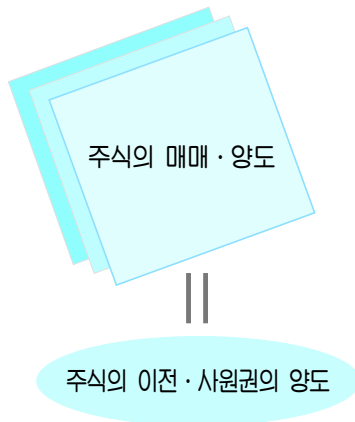
주주의 자본회수방법에는 주식양도와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방법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양도에 관해서 이사회가 승인거부를 하는 경우(상법 제335조의 6)와 회사의 영업양도, 임대차 등의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4조의 2)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이로써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고 회사운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다.

### 1)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주주(사원)의 투자자본회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정관 규정으로도 주식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0.9.26. 99다48429).

### 2)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회사내부의 지주비율의 보장과 외부참가인사를 배제함으로써 회사의 기밀보호와 회사운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상법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35조). 이로써 회사운영에 탄력을 기하도록 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주



주도 보호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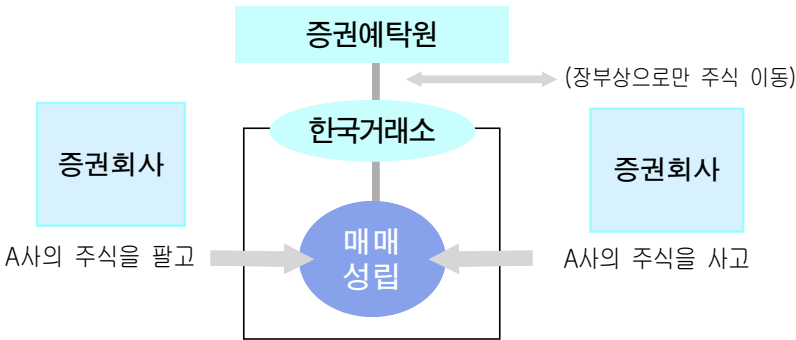
한편 법률에 의하여서도 주식양도가 제한된다. 그 예로는 권리주양도의 제한(상법 제319조),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의 제한과 회사지배의 변태적 현상과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특별법상의 제한이 몇 가지 있다(항목 45 참조).

### 3) 주식양도방법

주식양도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의 교부로써 이루어지는데, 주권이 실물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주권예탁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서 대량의 주권도 간단하게 장부상의 이동만으로 쉽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주권의 교부에 의한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이른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 • 주식의 매매와 양도



양 도	양도자유의 원칙 :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양도의 자유를 보장
	양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주 양도의 제한</li> <li>□ 자기주식취득 금지</li> <li>□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 금지</li> </ul> </li> <li>—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li> <li>— 특별법상의 제한</li> </ul>

주식의 증여는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시가로 증여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중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을 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유가증권의 일종인 주식도 당연히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므로 주식이 상속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지며,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계약에 의해서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는 모두 주식의 양도의 한 가지 방법이고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와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 1) 주식의 증여에 따른 신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증여·상속·취득·매각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자금 제173조 제1항).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자의 주식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자금 제147조).

### 2)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식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기업 상속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 평가(30%)하고 있어 최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OECD 35개 국가 중 13개 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다. 이미 세금을 다 내고 보존하고 있던 재산을 그 소유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탈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속히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 3) 주가의 하락과 주식의 증여

주식의 증여는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시중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을 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가가 떨어진 틈을 타 주식을 증여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덜 부담하기 때문으로, 증시침체를 증여세의 절세기회로 활용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장회사의 증여세의 경우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를 기준(최근 30일 평균)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거의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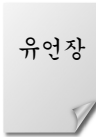
## • 주식의 증여

### 무상증여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것

### 유증



유언장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

→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립

### 생전 증여

→ 증여를 승낙할 때 성립    → 증여를 거부하면 불성립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시중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주식의 자유양도성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상법상 또는 특별법상 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주식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권인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주식양도자유 원칙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색이다. 다만, 상법상 또는 특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 1) 상법에 의한 양도제한

#### (1) 권리주양도의 제한

회사설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권리주의 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에 있어 사무처리를 번잡하게 하고, 투기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제한하였다(상법 제319조·제425조).

#### (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회사에 대하여만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발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주주는 주권없이도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대법원 2010.4.29. 2009다88631).

#### (3)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자본의 유지를 위협해서

### 특별법에 의한 제한

#### 정책적 이유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

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  
내부자거래제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투기행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자금 제165조의 2).

#### (4)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식을 자회사는 취득할 수 없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그 다른 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상법 제342조의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은 이른바 주식의 상호소유의 한 형태인데, 주식을 상호소유하게 되면 회사 지배가 안정되어 생산재의 확보나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재벌산하기업간의 횡적 결합이 강화될 수 있으며, 기업간의 경영정보의 교환 및 기술제휴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자본의 공동화 현상,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및 투기행위, 사실상의 조세회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2)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335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3) 특별법에 의한 양도제한

정책적 이유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공개매수의 제한, 증권회사 대주주의 주식양도제한,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 내부자거래제한, 증권회사임원 등의 매매거래제한, 독점규제법에 의한 제한, 은행법에 의한 제한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 • 주식의 양도제한

#### 상법에 의한 제한

- ◆ 권리주 양도의 제한
- ◆ 주권발행 전의 양도제한
- ◆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 ◆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 → 주식매수청구권

#### 정관에 의한 제한

- ◆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한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주식이란 기업이 취득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treasury stock)이란 기업이 취득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은 언제나 법정자본금을 유지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 1)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금지

회사는 원칙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무효이다. 회사가 타인에게 금융지원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금지된다. 제3자가 회사의 금융지원을 받아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무효이나, 다만 손익이 그 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이 허용된다(대법원 2007. 7. 26. 2006다33609).

### 2) 자기주식취득의 예외적 허용

#### (1)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의 취득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즉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①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제341조 제1항 제1호) 또는 ②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341조 제1항).

## (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341조의 2).

이 외에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도, ①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위탁의 실행으로서 타인의 계산 하에 취득하는 경우, ② 신탁회사가 자기주식의 신탁을 받은 경우, ③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④ 자기주식을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3) 특별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특별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 341조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자금 제165조의 2).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자금 제165조의 2 제1항), 이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3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자금 제165조의 2 제5항, 자금령 제176조의 3).

## 3) 자기주식의 지위

(1) 자기주식에 대한 공익권 중 의결권에 대하여는 상법이 명문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제369조 제2항). 따라서 자기주식은 의결정족수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소수주주권이나 각종의 소제기권과 같은 의결권 이외의 공익권도 그 성질상 회사에 인정될 수 없다(통설).

(3) 자익권 중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권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의 교부는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4)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모든 주주권은 부활된다.

## 4)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정관에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대가의 지급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제342조).

주식의 담보방법은 상법상 규정된 질권설정과 관습법상 인정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의 담보란 주식을 가지고 피담보채권의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담보 또한 주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주권에 의하여 설정된다. 주식의 담보방법으로는 상법상 규정된 질권과 관습법상 인정된 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 1) 주식의 입질

주식의 입질방법으로는 약식질과 등록질의 두 가지가 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림)의 합의와 질권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로서 성립하고,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여야 한다(상법 제338조). 약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이익배당이나 이자배당을 받으려면 등록질의 경우와는 달리 이익 또는 이자의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또 물상대위권(상법 제339조)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서 주권의 교부 전 또는 금전의 지급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2조). 그 밖에 신주인수권,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질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등록질은 정식입질이라 하는데, 약식질의 요건을 구비하는 외에 질권설정자인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권의 등록은 등록질의 효력발생요건인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그 등록이나 말소를 할 수 없다. 등록질권자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340조 제1항), 그 지급을 받거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압류를 할 필요없이,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2항·제3항). 그러나 신주인수권이나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등록질의 경우에도 질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

### 2)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상법 제341조의 3). 이러한 제한을 위반

하여 주식을 입질하면 그 질권설정은 무효가 된다. 회사는 예외적으로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때(상법 제341조의 2 제1호),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상법 제 341조의 2 제2호)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취할 수 있다(상법 제341 조의 3 단서).

### 3)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의 처분승락서를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담보의 목적으로 주권을 담보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담보권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는 약식양도담보와 담보권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등록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 • 주식을 담보로 하는 방법

##### 질권(質權)설정

약식질 :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써 성립(주권의 계속적인 점유가 필요)  
 등록질 : 약식질의 요건+주주명부예의 등록

##### 양도담보

약식양도담보 : 양도담보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써 성립  
 등록양도담보 : 약식양도담보의 요건 + 주주명부예의 등록도 필요

주권(증권)대체결제제도란 주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시켜서 주식의 양도나 담보권의 설정시 주권의 교부없이 장부상의 이체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권(증권)대체결제제도란 증권의 대량거래에 따르는 문제점과 주권의 분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써 주권의 소유자가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면 증권회사는 투자자계좌부(投資者計座簿)에 기입한 후 다시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預託者計座簿)에 구좌를 개설하고 주권을 예탁시켜서 주식의 양도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장부상의 이체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권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이동한다.

### 1) 주권의 예탁

투자자가 예탁한 주권을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고자 하는 증권회사, 은행 등 기관투자자(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구좌를 개설하여 자기의 소유증권과 투자자로부터 받은 유가증권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할 수 있다. 현재 동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 약정서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2) 예탁증권의 양도

증권의 양도는 각 계좌부(計座簿)에의 이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체의 기재는 증권을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자금 제311조 제2항).

### 3) 예탁주권의 반환청구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주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자금 제312조 제2항).

#### 4) 예탁주권의 권리행사

예탁주권에 의한 권리행사는 주주명부상의 주권인 예탁결제원과 예탁자 또는 투자자가 행사한다. 즉, 예탁주권에 대한 권리는 예탁자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이 행사하는 경우와(자금 제314조 제1항) 실질주주인 예탁자 또는 투자자가 실질주주명부에 의하여 직접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자금 제316조 제2항).

#### 5) 예탁주권의 분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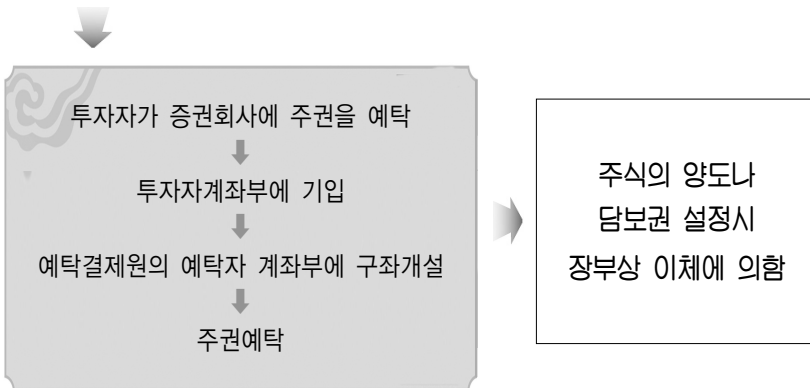
예탁주권이 분실·도난 등으로 부족하게 된 때에는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가 연대하여 이를 전보하여야 한다.

#### • 주권대체결제제도란?



#### 주권대체결제제도

증권의 대량거래에 따른 문제점과 주권의 분실위험에 대처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의 변동을 일으킨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이 있다.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의 결과 회사의 자본감소, 1주의 금액, 발행주식총수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317조 제3항·제183조).

### 1)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회사의 해산시에 전주식을 소멸시키는 것과 구별되며,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주식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권만을 소멸시키는 주권의 제권판결 및 주식인수인의 자격만을 실효시키는 실권절차와도 구별된다.

#### (1) 자본금감소방법에 의하는 경우

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제343조 제1항 본문). 자본금감소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39조 제2항).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제439조 제2항 단서)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할 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단서)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이 있다.

#### (2)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므로(제343조 제1항 단

### 주식의 분할

자본의 증가없이 발행한 주식수를 증가

예) 1만원권 주식 1주 → 5천원권 2주

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 그 규정은 등기사항이다(제317조 제2항 제6호). 회사는 임의로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실효절차를 취한다. 이때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한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식소각의 효력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실효절차를 밟은 때에(제341조 제1호, 제342조) 생긴다.

## 2)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3주를 묶어서 2주로 하거나 1주로 하는 것과 같다. 주식의 병합은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상법 제440조가 규정하고 있다.

## 3) 주식의 분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주식의 분할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발행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종래의 5,000원권 주식 1주를 100원권 50주로 하는 것과 같이 발행한 주식을 세분화하여 종전보다 많은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329조의 2 제2항).

주식의 분할은 회사재산을 변동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자본도 변동시키지 않는다. 주식분할은 주가가 너무 오르거나 시장에 나도는 주식수가 너무 적은 경우, 주가를 낮추거나 유통주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이다. 주식분할의 결과 1주의 금액이 변경되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필요하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제434조).

### • 주식수의 변경

#### 주식의 소각

회사의 존속중에 발행주식의 일부를 절대적으로 소멸

- 자본감소를 위한 소각 :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이익소각 : 이익이 소각의 재원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주식의 병합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종전의 주식수를 줄이는 것



### 1.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원칙이다. 주주는 일정한 출자의무를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않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인 것이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도 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

### 2. 명의개서란

실체상의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혹은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의전의 대항요건으로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기명사채이전의 경우 사채원부·사채권의 명의개서, 주식 이전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등이 있다. 이 중 주식의 명의개서가 가장 빈번하며, 보통 명의개서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식의 명의개서청구권은 주권소지인이 주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 3. 주가지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수품목의 주가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지수를 말한다. 지수의 산출에는 다우존스식 주가평균방법과 스탠더드앤드푸어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4년에 다우존스방식으로 주가평균을 배어 1972년초를 기준 100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의 산출을 위해서 상장회사의 거의 50%인 1,000개사의 주식을 채용하여 종합주가지수를 내고 있으며, 업종별지수는 31개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 제 4 부

# 주식회사의 기관



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의 경영권의 분배구조를 말한다.

### 1) 지배구조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경영권의 분배구조가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견제와 균형이 깨어져 기관 중 일부분의 기능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약화되어 기업경영이 불투명해지고 기업은 부정과 부패에 빠져들어 도산하는 계기가 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 2) 이사의 수

1998년 개정상법에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과거의 비현실성을 개선하여, 소규모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이 주주총회와 대표이사에게 분산됨으로써, 업무집행기관이 대표이사로 일원화되어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크게 단순해졌다.

### 3) 각종의 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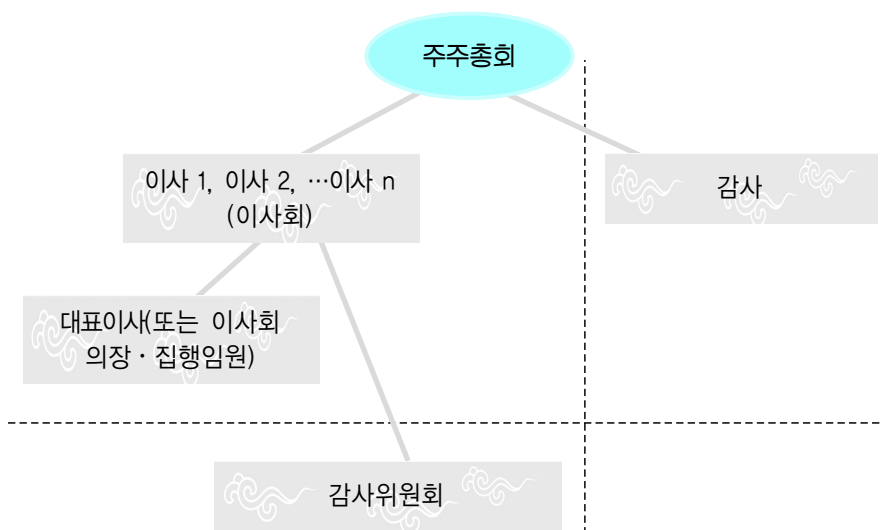
1999년 개정상법은 이사회 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 제도(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 등)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경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社外理事(outside director)제도를 수용하여 종래의 감독기관이었던 감사 외에 이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회사가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집행임원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은 이사회 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집행임원을 둬으로써 종래 이사회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업무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한 것이다. 집행임원을 둘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집행임원을 두고자 할 경우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집행임원(Chief Executive Officer: CEO)을 두어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제408조의 2 제1항).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08조의 2 제1항).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 수직선 왼쪽 구조 또는 수평선 위쪽 구조 중 선택

[재계뉴웨이브]

## 한국식 지배구조 모델인 가족기업 장점 살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지정한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 중 총수(오너) 있는 52개 가족기업집단을 재벌이라 한다. 이들 중 상위 5대 가족그룹의 매출이 60대 전체 그룹 매출액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가족기업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중견이상을 기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40%, 유럽은 35% 이상이 가족기업이고,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의 약 37%, S&P 500 중 약 35%가 가족기업이다. 미국 만은 그렇지 않은데 이를 '미국 예외현상(American Exceptionalism)'이라 한다. 가족기업의 성과가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로써 증명되고 있다.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경영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오너 있는 기업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경영계획 수립,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연구개발(R&D)투자, 위기 상황에서의 구심점 기능, 주주가치의 실질적 확보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오너 있는 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불만인가.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 시장을 석권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서 나쁘고 낮아서 좋다는 것은 근거 없다. 시장집중도는 캐나다 0.5, 이스라엘 0.18, 호주 0.17, 한국 0.14, 중국 0.08, 미국 0.06이다. 경제력 집중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이 너무 크고, 한국의 부(富)를 몇몇 기업이 다 빨아간다는 것도 완전한 오해이다. 삼성전자의 이익 8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발생한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66%가 해외에서 제조되고 85%가 해외에서 판매된다.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과 소득 격차, 또는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절대빈곤에 빠져 기아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한국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지만 청년들은 외면한다. 상대적 소득 격차를 절대빈곤으로 오해하는 것이고 이것 역시 착각이다. 대기업들이 연간 국가에 납부하는 수십 조 세금으로 이 나라가 굴러간다. 경제력 집중도를 해소하려면 기업은 해외로 뻗어나가 성공해서는 안 되고 모두 국내에서 좀비가 되어 서로 죽기로 싸워야 한다.

가족기업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이고 나쁜 것이 아니다. 유일한 기준으로 경영성과에 기초한 지배구조 평가가 중요한 것이다. 가족지배구조를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기업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이윤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다.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벌개혁을 기치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정책 목표로서 공익법인을 규제하고,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며, 기존 및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에는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 국제 마라톤에서 한국 선수의 발목을 족쇄를 채우는 것이며, 단기에 치고 빠지는 악성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어 국부를 유출시킬 뿐이다. 재벌그룹 내부 거래를 사익추구(tunneling)가 문제인데, 적어도 한국 대기업에서 사익추구는 바로 배임죄로 연결되므로 모든 총수가 떨고 있는 문제이다. 모든 경영자들이 총수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통 대기업은 대기업으로 출발함으로써 그 확장가능성이 거의 무한대이다.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더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포춘 선정 Global 500 기업은 미국 126개, 중국 120개, 일본 52개인데 한국은 16개뿐이다. 세계 10위 안에 든 한국 기업은 없다. (아시아경제신문, 2018.09.06.)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을 회사의 기관이라 한다.

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법률상 인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자연인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이 필요한데, 이를 회사의 기관이라고 한다.

### 1)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주주(사원)와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 분리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분리되지 않아서 사원이 당연히 기관을 구성하는데(자기기관·당연기관) 반하여,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주주의 수가 많아서 주주가 곧 기관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경제적 특색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다.

### 2)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권한의 집중

주식회사의 기관은 명료하게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적 회사의 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특색이다. 즉, 임시기관인 감사인 외에 필요적 기관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집행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또는 이사회 의장·집행임원), 감독기관인 감사(감사위원회)로 분화되어 있다.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이사회에 결의사항이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과 회사대표행위를 할 대표이사를 선임케 함으로써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또는 이사회 의장·집행임원)로 분화되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중심주의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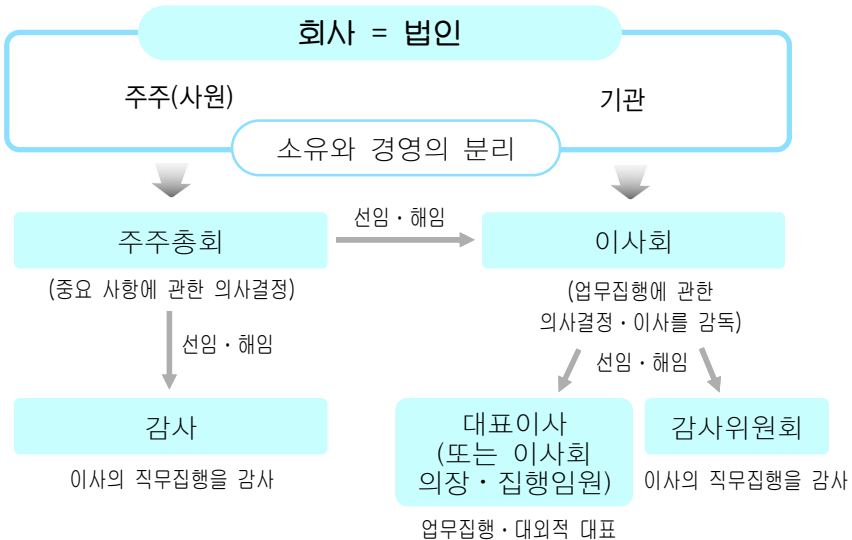
오늘날 기업의 발달로 경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에 주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투자주주·투기주주 등 회사사업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없어서 보통 주주총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주주가 늘어나, 대중주

주들의 토의·결정의 광장인 주주총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는 균립하되 지배하지 않는 기능상실현상을 나타내고, 그 운영은 극히 형식화 되어 ‘관객 없는 희극’이라는 혹평까지 받게 된다. 실제로 회사의 실권은 대주주와 그 지지를 받는 이사 등 일부 소수인의 수중에 집중되기 마련이고, 자연히 이사회중심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 3) 현행 상법상의 기관구조

결국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은 주주총회, 이사회·대표이사(또는 이사회회장·집행임원), 감사(감사위원회)로 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전체적으로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대회사 보다는 중·소회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 중·소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에 따른다는 것이 오히려 낭비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중·소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상태에서 대표이사·사장을 정점으로 한 단순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상법이 예상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조화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 • 주식회사의 기관



주주총회란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고 회사의 최고기관이다.

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회의체로서 상설기관은 아니나,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된다. 상법은 이사회에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고(상법 365조 제1항),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며(상법 365조 제3항), 통상 이사회에 결의에 의해 소집되나(상법 제362조), 소수주주(상법 제366조), 감사(상법 제412조의 3) 그리고 법원(상법 제467조)도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1) 주주총회의 권한

상법은 이사회제도의 채택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즉, 상법이나 정관에서 규정해 놓은 사항만을 권한사항으로 한정하였으므로(상법 제361조),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그 권한이 한정됨으로써 주주총회의 만능기관성은 변질되었으나, 이사·감사의 임면권(상법 제382조 제1항·제385조 제1항·제409조 제1항·제415조)뿐만 아니라 정관의 개정권(상법 제433조)마저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최고기관성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은 그 결의방법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대체로 재산권(회사재산)의 처분·수익에 관한 결정권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재산권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경영전문가로 구성되는 이사회·대표이사에게 맡기되 이사의 임면권 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관장한다.

## 2)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및 회사가 특정비율(총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호보유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에는 의결권이 없다. 또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한(상법 제368조 제4항) 및 감사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이 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고, 특수결의는 특별결의의 특수형태로서 그 요건이 더 엄격하여, 총주주의 동의 또는 다른 특수한 요건을 요하는 결의를 말한다.

주주는 본인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으며(상법 제368조 제3항),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 3). 또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 2 제1항 제1문). 이는 신탁회사나 증권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와 같이, 명의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다른 때에는, 명의상의 주주가 여러 실질상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행사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유한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주주총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주주총회란?

#### 주주총회

-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기관
- 정기총회(매 결산기 1회) · 임시총회(필요에 따라)

#### 소집권자

-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법원

#### 권한

- 이사 · 감사의 임면권, 정관의 개정 등

#### 결의방법

-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특수결의 : 총주주의 동의

회사는 각 주주에 대하여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제363조 제2항), 정관변경·자본금감소·회사합병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제433조 제2항, 제438조 제2항, 제522조 제2항). 회사가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의부존재의 원인이 되고, 일부주주에게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 총회의 소집통지서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주주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63조 제1항 단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에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542조의 4 제1항).

### 1) 의결권 없는 주주

의결권 없는 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주식의 상호소유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통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363조 제7항 본문). 다만, 소집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363조 제7항 단서).

### 2) 소집철회 또는 회일의 연기

회사는 총회소집통지를 한 후에도 그 소집을 철회하거나 총회일을 연기할 수 있고 회의의 목적사항 일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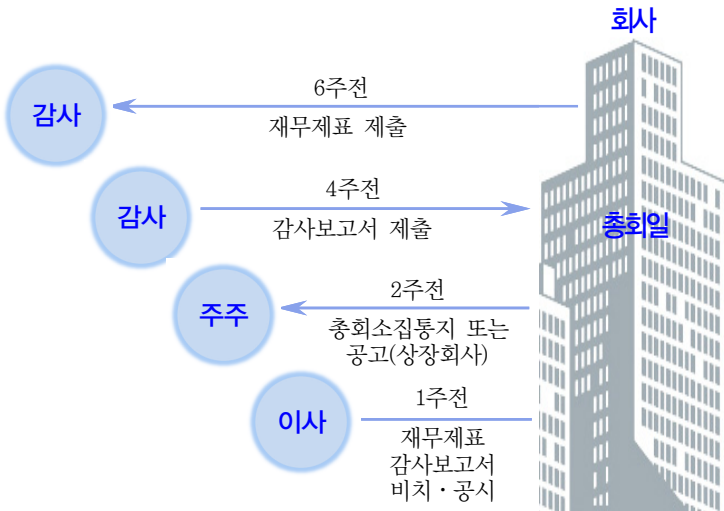
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24. 2009다35033). 철회, 연기의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에 준하여 소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미 통지된 회일 이전에 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 이미 개최된 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 결의를 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 3) 1인회사 주주총회와 전원출석총회 경우

1인회사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주주가 출석하고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유효한 주주총회로 성립한다. 또한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에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 의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3.2.26. 92다48727).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 총회검사인의 임명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367조 제2항).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1)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그의 의사진행을 맡을 의장이 필요하다. 상법은 총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66조의 2 제1항). 그러나 소수주주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의장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더라도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2)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

총회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366조의 2 제2항). 그리고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의 2 제3항). 이는 총회꾼들이 총회장에서 회의질서를 교란하여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주주총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인정된 권한이다.

### 3)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진행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정관이나 총회결의의 정함에 따라서 혹은 관습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

### 선임

- 정관의 정함
- 총회에서 선임
- 법원

### 권한

- 질서유지, 의사정리
- 의사진행 방해자 발언정지 또는 퇴장 조치

### 의사진행

- 정관의 정함이나 총회결의
- 관습에 의한 의사진행

##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정관의 변경과 같이 등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첨부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이 결의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공증인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 의사를 확인시켜야 한다.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없다.

### 1) 보통 결의사항

보통결의사항으로는 감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제367조·제542조 제2항),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선임·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제409조 제1항·제388조·제415조·제542조 제2항), 이사·청산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제533조 제1항),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책임해제의 유보(상법 제450조·제542조 제2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단서), 청산인의 해임(상법 제539조 제1항),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등이 있다.

### 2) 특별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주식소각(상법 제343조의 2 제1항), 주식교환계획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상법 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제434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회사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신설합병 때의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회사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30조의 3 제2항),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제415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호), 영업전부 또는 경영위임, 이익공동계약,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예컨대 영업의 임차, 경영의 수입, 공동판매카르텔 등)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2호),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3호), 사후설립(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상법 제375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3항),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등이 있다.

### 3) 특수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는 발기인·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조·제400조·제415조·제542조 제2항),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에 있어서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고(상법 제309조), 이 규정은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27조 제3항).

### 4) 기타의 결의사항

기타의 결의사항으로는 법정결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성질상 당연히 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예컨대 총회에서 선임한 감사인(상법 제366조 제3항·제367조)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해임, 총회회장의 선임, 총회의 연기·속행의 결정 등]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한 것[예컨대 상법에 규정이 있는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 2 제2항 단서) 같은 것]에 대하여는 결의할 수 있다.

#### • 주주총회의 법정결의사항

##### 보통결의사항

회사의 기관구성과 관련된 사항, 회계와 관련된 사항 및 업무 감독과 관련된 사항 등 주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결의사항

회사의 기본구조 변경이나 회사의 자본에 관계된 사항

##### 특수결의사항

총주주의 동의 또는 기타 특수요건을 요하는 결의

##### 기타의 결의사항

기타 성질상 당연히 총회의 권한사항인 것

주주제안권이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 1) 주주제안권의 의미

주주제안권이라 함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 제안권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이다(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은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에는 0.5%)을 보유한 자가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6 제2항). 금융기관(은행법 제17조 제4항), 종합금융회사(자금 제350조, 제29조 제6항), 금융투자업자(자금 제29조 제6항) 등의 경우에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이 더욱 완화된다.

### 3) 주주제안권의 내용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자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의제제안권)(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총회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의안제안권)(상법 제363조의 2 제2항).

### 4) 주주제안권 행사의 효과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그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이사가 주주제안권을 무시한 경우 또는 의제를 변경하여 상정한 경우, 제안권을 행사했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만(상법 제635조 제1항 제19의 3호), 제안에 대한 결의는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다른 결의사항은 당연히 유효하다.

## 주주제안권

### 의미

- 소수주주의 총회 의제와 의안 제안

### 제안권자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
-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

### 제안내용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제제안
- 총회소집 통지에 의안제안

### 제안권행사

- 총회의 목적사항
- 총회에서 의안설명

주주는 누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주주의 고유권이므로 상법 기타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도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상 다음과 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1) 자기주식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 2) 상호보유주식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3항). 모자회사간에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되나, 비모자회사간에는 주식의 상호보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 3)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가 가진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4항).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수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상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71조 제2항).

### 4) 감사선임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개별 3% rule).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는 있으나, 높은 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대주주의 영향을 감소시켜 중립적인 인물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권상장회사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합산 3% rule).<sup>1)</sup> 주권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대상(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선임의 경우와 동일하다(상법 제542조의 12 제4항).

## 5) 집중투표의 배제

집중투표를 배제하려면 이를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의 2 제1항). 정관에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정관을 변경하여 배제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7 제3항).



1) 최대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제한을 하지 못한다: 大判 2009. 11. 26, 2009 다 51820.

[한국경제신문 시론]

##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간섭 통로돼선 안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도입해도  
기금찾는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기업 자율성 훼손하는 일 없어야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자 만든 자율적 행동 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결정했다. 기관들이 고객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고 실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불안해한다. 국민연금의 투자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상 중요 결정을 할 때마다 국민연금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이나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거의 틀림없이 안건이 부결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276개사, 투자규모는 131조1000억원이고, 주요 상장기업의 1대 주주 또는 2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자금의 46%를 34개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한다. 국민연금은 이들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거나 운용사 정기평가 때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 이행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위탁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 된다. 또 정기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수화해 차기 위탁 여부 또는 위탁규모 결정에 반영한다면,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강행규범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부터는 34개 위탁운용사는 물론 국내 220여 개 자산운용사도 국민연금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고한 자산운용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기 귀찮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국민연금을 따라 해야 후환이 없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주총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배당정책 개선 요구 외에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수행, 횡령·배임·부당지원 행위·경영진 사익편취 행위·임원 보수한도 과다 건(件), 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등 선임 반대 등에도 관여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기업으로서는 국민연금의 투자가 축복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다.

배당만 해도 그렇다. 작년 12월 결산법인 중 실질주주에게 지급된 총 배당금은 22조6798억원이고, 이 중 외국인 실질주주가 9조원 정도를 가져갔다. 기업이 장기 전략을 세우려면 '실탄'(사내 유보금)이 있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압력으로 매년 배당금 잔치를 벌인다면 채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며,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창조적 기업으로 알려진 아마존과 빅셔해서웨이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다.

기관들이 고객의 집사라면 투자 실패로 고객 재산이 감소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집사가 아니겠는가. 서슬 퍼런 공정거래 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외에 기관들까지 나서서 기업을 감시한다니 오지람이 넓기도 하다. 투자한 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금을 빼 철수하는 것이 그 기업에 대한 최대의 응징이 아니겠는가.

국민연금이 이제 와서 스투어드십 코드 참여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첫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결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위탁운용사가 스투어드십 코드에 참여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줘서는 안 되며, 그 이행 여부에 가산점을 줘서도 안 된다.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소송행위와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에 개입하기보다는 스투어드십 코드를 기업과의 건전한 대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2018.07.24 19:06.)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가 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②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③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4호)를 할 때의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경우(상법 제374조의 2 제1항)와, ⑤ 주식교환 또는 주식 이전에 관한 특별결의사항(상법 제360조의 3 제2항, 제360조의 16 제2항)에 반대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 5, 제360조의 22) 및 ⑥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사항(상법 제522조, 제530조의 3 제2항)에 반대하는 경우(상법 제522조의 3, 제530조의 11 제2항)에 인정된다. 위의 결의는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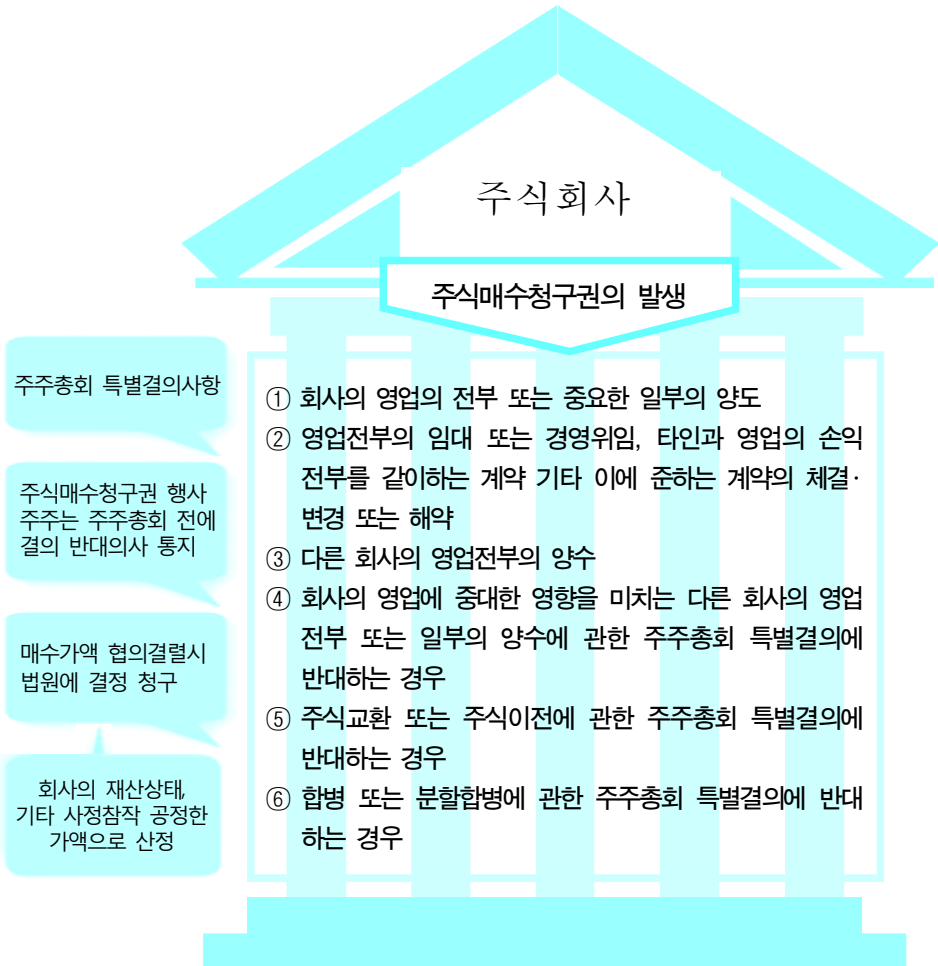
### 2) 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 5 제1항, 제360조의 22, 제374조의 2 제1항, 제522조의 3 제1항, 제530조의 11 제2항).

### 3) 매수가액의 결정

주식의 매수가액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74조의 2 제4항). 이때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74조의 2 제5항). 회사가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으면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근본규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한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중에는 정관변경도 포함한다.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근본규칙(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특별법상 은행·보험회사 등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은행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 1)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절차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33조 제1항), 그 총회의 소집의 통지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그리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주게 될 때에는 다시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하는데(상법 제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종류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2항).

단순히 사실만을 기초로 하는 규정은 그 사실의 변경(예컨대, 지명의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정관이 변경되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의 규정이 변경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들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없다.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제18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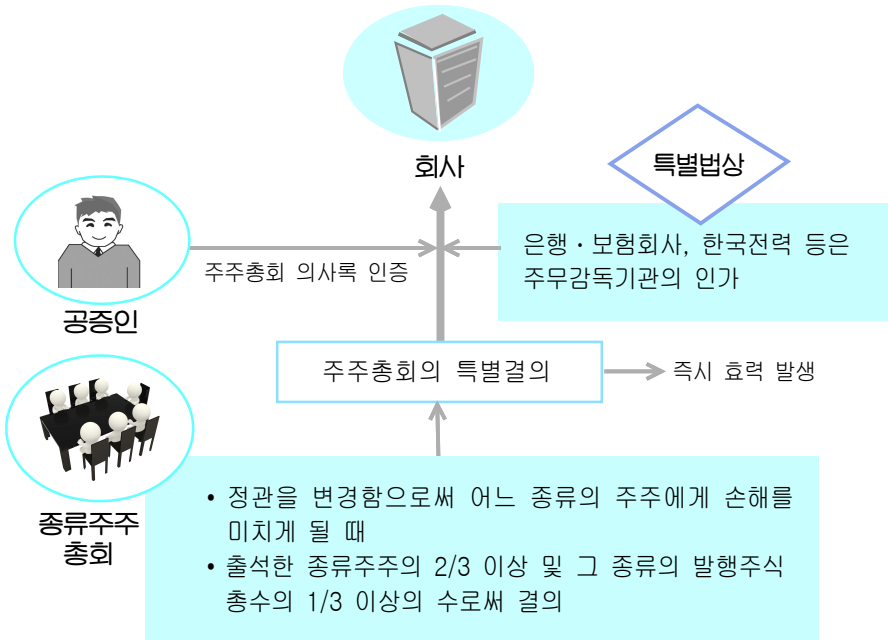
### 2)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서면의 변경은 후에 하되 공증인의 인증(상법 제292조)도 필요없다. 그러나 공증인법 제62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은 필요하다.

### 3)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변경

발행예정주식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그것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증가의 쪽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제3항·제183조).

#### • 정관의 변경



총회권 대책으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공여의 금지·공여 이익의 반환·이익을 공여한 이사 등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부실경영이나 부정행위 등의 은폐, 분식결산(粉飾決算)서류의 승인, 이사·감사 등의 선임 등을 둘러싸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총회꾼'이 흔히 출몰한다. 이들은 요구가 거부되면 총회장에서 주주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곤 하였다. 회사가 이들에게 회사의 자금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회사는 자산이 낭비되고 회사경영의 공정성을 잃게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항목 53 참조, 상법 제366조의 2). 또 많은 회사에서는 동일한 날자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총회꾼의 출몰을 예방하기도 하며, 일부회사에서는 오히려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지방순회 회사설명회까지 갖는 등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어떻든 상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있어 총회꾼들에게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부조리를 제거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익공여의 금지·공여이익의 반환·이익을 공여한 이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게 되었다. 판례는 회원제 골프장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양도가능한 골프장 예약권을 부여한 것은 이익공여를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4.7.11. 2013마2397).

### 1) 이익공여의 금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상법 제467조의 2 제1항). 이 경우 이익공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현재의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도 해당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467조의 2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

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이익의 공여를 받은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가 용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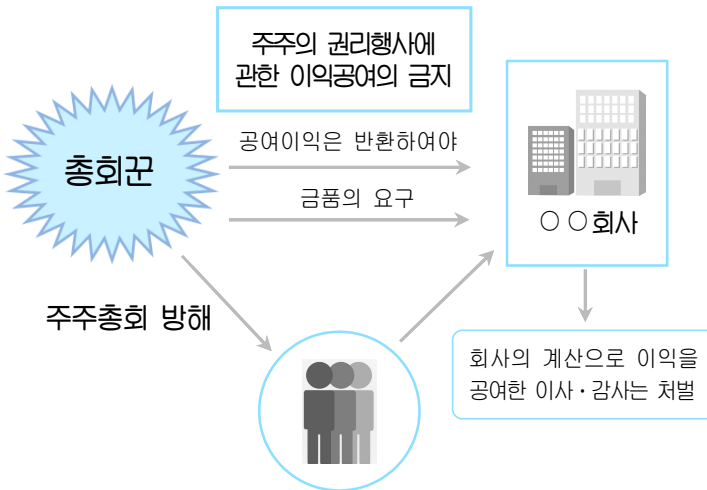
## 2) 공여이익의 반환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공여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은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467조의 2 제3항 제1문). 이 경우에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상법 제467조의 2 제3항 제2문). 회사측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대표이사가 하게 되나 이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이 인정된다(상법 제467조의 2 제4항).

## 3) 이익을 공여한 이사 등에 대한 처벌

이사·감사 등과 상업사용인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收受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한 사람과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법 제634조의 2).

### • 이익공여의 금지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 소, 결의부존재확인 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등 4종의 소(訴)가 인정된다.

### 1) 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예컨대 이사회 결의없이 또는 하자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흡결의 경우 등이다.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로는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정족수 및 가결요건위반, 이사의 불출석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의 결의 등이다. 그리고 결의방법의 불공정의 예로는 발언의 부당한 제한, 특정주주의 부당한 강제퇴장, 부당한 설명 생략 등의 상황에서의 결의강행 등을 들 수 있다. 결의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때란 정관 소정의 원수 이상의 이사의 선임같은 것이 해당된다. 법원은 결의의 내용 및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원의 재량기각)(서울고등법원 1998.8.25. 98나5267).

### 2) 결의무효확인 소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결의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상법 제380조)(대법원 2011.10.13. 2009다2996).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란, 결의의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유한책임원칙을 위반한 결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결의, 자산평가원칙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의 승인, 법률에 위반한 이익배당안을 승인한 때, 기타 결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등이다.

### 3) 결의부존재확인 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결의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상법 제380조). 원인으로서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총회의 결의, 의사록에 결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의가 없었던 경우, 일부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결의 한 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대법원 2011.6.24. 2009다35033) 등이다.

### 4) 부당결의취소·변경 의 소

특정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부당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 •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소의 종류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다룬 판례

#### 결의취소의 소

- 소집절차상의 하자
- 결의방법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 결의무효확인 의 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 결의부존재 확인 의 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

#### 부당결의 취소·변경 의 소

특별이해관계로 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가 청구



## 폐기되어야 할 경제민주화법안(상법개정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법률로서 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에게는 세상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매우 그럴듯한 제도이다. 1주당 선임해야 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면 주주가 그 의결권을 1명의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그들의 대표 한 사람쯤은 이사회에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사회라는 것은 군대의 참모장교 회의나 같은 것이어서 고도의 전략전술 전문가가 모여 작전회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지역구 대표들 모임이 아니다. 각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이사회에 모이면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일사불란한 행동이 불가능하고 각자의 이익만 앞세우게 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정치판이 된다. 기업은 민주적 조직체가 아니다. CEO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오케스트라이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이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 19개주 회사법이 이 제도를 채택했으나, 2016년에 와서는 Arizona, Nebraska, North Dakota, South Dakota, West Virginia 등 5개 주만 의무화하고 있고, California와 Hawaii는 비상장사만 의무로 되어 있다. 알다시피 경제력이 별로 없는 주들이다. 일본은 1974년에 의무화를 폐지했다. 한국은 현재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굳이 이를 의무화할 것까지는 없다.

### ■ 이종대표소송제도

이종대표소송은 모회사(자회사 주식 50% 이상을 초과 보유한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의 종류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자에 대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회사 주주에게만 이와 같은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소송할 필요가 있으면 그 자회사의 주주가 먼저 나설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최상위에 있는 최종모회사의 주주에게만, 또 자회사에

모회사 외에 다른 주주가 없는 경우(완전자회사)에만 인정한다. 또 자회사의 자산규모가 모회사 총자산의 5분의 1 이상인 중요한 자회사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외국 자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판례도 자회사의 법인격이 없는 정도로 형식화(paper company)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일반 이사와 분리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해괴하다. 감사위원도 이사이므로 이사를 모두 선임한 후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면 된다. 그런데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위원만을 별도로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하고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1명 이상의 감사(위원)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 감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을 감독할 수 있고 회사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헤지펀드나 적대적 세력들도 회사에 그들의 대표를 감사(위원)로 진출시켜 회사의 모든 고급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배당률 상향조정, 자산매각, 자회사 기업공개 등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 손 털고 철수한다. 한국은 2016년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펀드들의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이미 멋진 고속도로를 개통시켰다. 소액주주보호는 가짜 구호이고 결국 이익을 보는 자는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금융자본가(펀드)들이 된다. 회사로서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세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 ■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전자투표는 투표 방식 문제인데 법률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 전자투표는 회사가 필요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회사가 전자투표를 하든 위임장을 발송하든 알아서 하게 버려두면 된다. 국가가 이런 것까지 간섭해야 하나?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이다.

### 1) 이사회 의 법적 지위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이다. 이사회 의 결의사항은 그 성질상 주주총회 의 권한사항과 명백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나, 상법은 소유와 경영분리의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을 이사회에 맡기고 있다. 이사회는 회의체 의 기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집행은 대표이사 가 행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2항).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상법 제383조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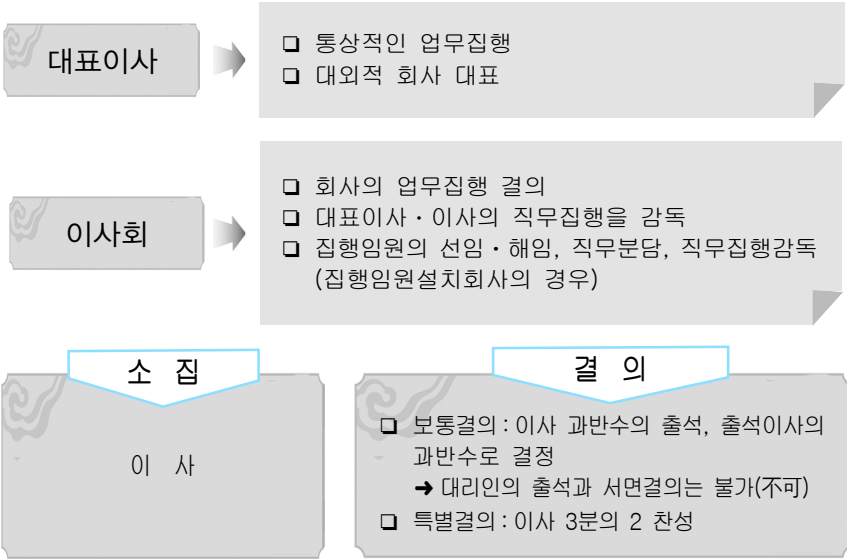
### 2) 이사회 의 권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의 결의로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이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 주주 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사항은 주주총회 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업무집행의 대표적인 예로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결정(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주주총회 의 소집(상법 제362조), 주주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 여부 결정(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이사회 소집권자 의 특정(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이사의 경업의 승인과 개입권 의 행사(상법 제397조), 회사 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승인(상법 제397조의 2), 이사의 자기거래 의 승인(상법 제398조), 집행임원 의 선임·해임 및 업무집행감독 등(상법 제408조의 2 제3항), 사채발행(상법 제469조), 재무제표 의 승인(상법 제447조), 영업 보고서 의 승인(상법 제447조의 2) 등도 이사회 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다만 대표이사 의 선정(상법 제389조 제1항), 신주 의 발행(상법 제416조), 준비금 의 자본전입(상

법 제461조 제1항),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 2 제2항) 등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권한이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2항). 즉, 이사회는 이사, 특히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업무집행의 방법, 내용 등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의 중단이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이사회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고,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지만, 감사가 소집을 청구할 수도 있고(상법 제 412조의 4),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소집권자를 따로 정해 놓을 수도 있다(상법 제 390조 제1항). 소집통지는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본문).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상법 제390조 제 3항 단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상법 제390조 제4항), 구두로 소집할 수도 있으며, 정관이나 이사회규칙에 정례회일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생략할 수 있다.

### 2)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결정권을 줄 수 없고,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이사는 그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하고 결의하여야 하므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고,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공람·회람 등에 의한 결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예컨대 전화회의(conference call)]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2항).

이사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의 경우와 같이 다시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상법 제392조, 제372조).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다만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서 한 이사의 행위의 효력은 그것이 대내적 사항이면 무효로 보고, 대외적 사항이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4. 90다카22698).

### 3) 감사의 출석·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상법 제391조의 2 제1항),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2 제2항). 그러나 감사는 이사회회의 구성원은 아니므로 결의에 참가할 수는 없다.

### 4) 집행임원의 출석 및 보고의무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상법 제408조의 6 제1항), 그 외에도 이사회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받은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08조의 6 제2항). 집행임원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결의에 참가할 수는 없다.

### 5) 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3 제2항).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 3 제3항). 회사는 주주의 이사회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회사가 거절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 3 제4항).

#### • 이사회회의 운영

##### 이사회회의 소집

- 각 이사가 소집
- 감사의 소집청구
- 회의의 1주 전에 각 이사·감사에게 소집통지

##### 이사회회의 결의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함

##### 감사의 출석·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이사회회의사록 작성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기재

이사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위원회란?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 2 제1항). 이는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후보 추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보수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등을 가진 회사가 많고,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자금의 투자를 검사와 자본의 수요와 분배를 검토하는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 스톡옵션위원회(stock-option committee), 연금위원회(pension committee), 공공정책위원회(public policy committee), 회사책임위원회(corporate responsibility committee) 및 환경위원회(environmental committee) 등을 두고 있는 회사가 많다.

### 2) 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내의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데(상법 제393조의 2 제3항), 이는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93조의 2 제5항, 제386조 제1항).

대형상장회사, 대형증권회사, 대형신탁회사, 보험회사·은행 등은 이사의 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 운영방법과 같다. 따라서 위원회에는 이사회 의 소집(상법 제390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상법 제391조), 이사회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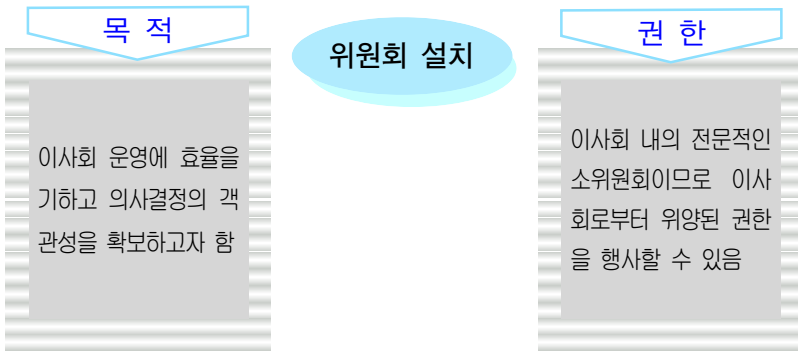
의사록(상법 제391조의 3), 이사회는 연기·속행(상법 제392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93조의 2 제5항).

#### 4)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전문적인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사회로부터 위양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상법은 이사회는,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상법 제393조의 2 제2항). 따라서 이사회는 위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면 그 권한을 위원회에 자유롭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翻覆)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 2 제4항).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 2 제6항).

#### •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권한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특례가 있다.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어 1인 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게 되므로, 상법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 1) 이사의 권한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권한사항 중 주식양도의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제2항, 제302조 제2항 제5호의 2, 제317조 제2항 제3호의 2, 제356조 제6호의 2), 주식양도승인의 청구(상법 제335조의 2 제1항·제3항), 주식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상법 제335조의 3 제1항·제2항), 주식양수인의 승인청구(상법 제335조의 7 제1항), 이사의 경영 승인 및 개입권행사(상법 제397조 제1항·제2항),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 2 제1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의 결정(상법 제451조 제2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 3, 제464조의 2 제1항), 사채의 모집(상법 제469조), 전환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등에 있어서 이사의 승인 또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 2) 이사의 권한사항을 1인 이사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이사의 권한사항 중 회사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종류주식의 전환통지(상법 제346조 제3항), 주주총회소집 결정(상법 제362조), 주주제안사항의 의제상정(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및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등은 1인 이사 단독으로 하며(상법 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에 의한 주총소집 청구(상법 제366조 제1항), 감사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상법 제412조의 3 제1항), 중간배당의 결의(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등은 1인의 이사에 대하여 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 3) 1인 이사의 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에 관한 규정 중 자기주식취득의 결의(상법 제341조 제2항 단서)이사회 소집(상법 제390조), 결의방법(상법 제391조), 감사의 이사회출석(상법 제391조의 2), 의사록(상법 제391조의 3), 이사회회의 연기·속행(상법 제392조),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상법 제393조 제2항),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제2항), 집행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상법 제408조의 2제3항·제4항, 제408조의3 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감사의 소집청구(상법 제412조의4),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462조 제2항 단서) 등의 규정은 이사가 1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383조 제5항).

또한 회사합병에 관한 규정 중 이사회회의 공고로 갈음하는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 2, 제527조의 3, 제527조의 5 제2항) 등의 규정도 같다(상법 제383조 제5항).

####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특례

##### 이사회회의 권한

을

##### 주주총회의 권한

으로

- 주식양도의 승인
- 주식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승인

- 주식양도승인의 청구
- 주식양수인 승인청구
- 사채의 모집
- 무액면주식발행시 자본금 계상 등

##### 이사회회의 권한

을

##### 1인 이사 단독

으로

- 주주총회 소집결정
- 자기주식 소각
- 주주제안사항의 의제상정
- 종류주식의 전환통지
-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해임 및 지점의 설치·이전 등

#### 1인 이사의 회사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

- 이사회회의 소집
-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자기주식취득결의
- 감사의 이사회 출석
- 이사회회의 연기·속행
- 집행임원설치
- 감사의 소집청구
- 재무제표의 승인 등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결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와 대등하게 병립하는 업무집행의 실행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지만(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당연히 대표이사가 된다(상법 제383조 제6항). 대표이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이면 누구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인원수에도 제한이 없다.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대표이사의 특수형태로서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대표이사가 있다.

### 1) 공동대표이사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2항). 이를 공동대표이사라 하고, 이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업무를 결정,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공동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막강한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동대표이사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수인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효력이 있다(수동대표: 상법 제389조 제3항·제20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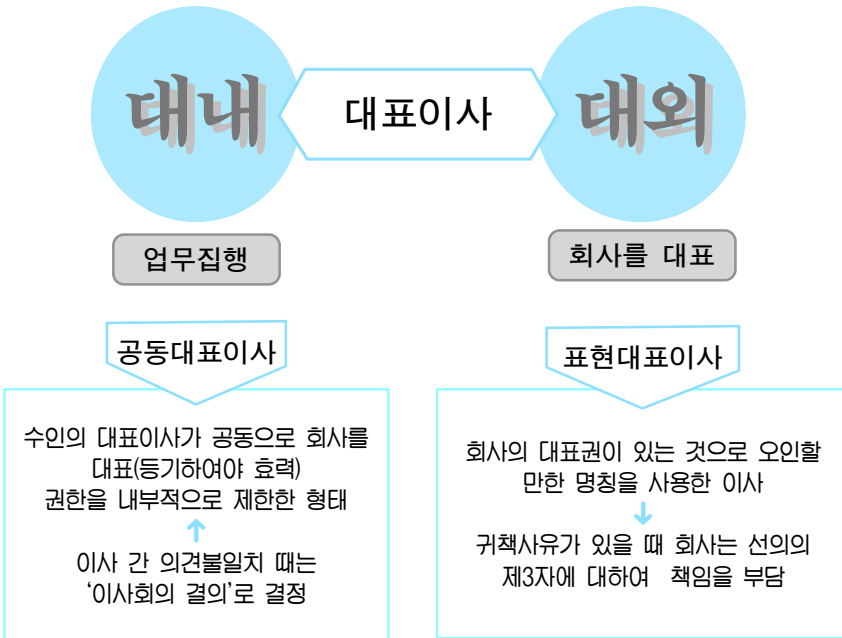
공동대표이사 중에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자신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공동대표이사제도의 본질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공동지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위임은 가능하다고 본다(대법원 1989.5.23. 89다카3677).

## 2) 표현대표이사

사장·부사장·전무·상무·기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395조). 이것은 외관을 신뢰한 거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9.11.12. 99다19797).

상법 제395조는 이사인 자가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사가 아닌 사용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때나, 이사직을 퇴임한 자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그러한 외관을 나타내게 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395조는 소송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적 효력도 다르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따라서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위법한 대표행위도 곧 회사의 행위가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 1) 권한을 넘는 행위의 유형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은 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 ② 법률·정관·이사회 규칙 등에 위반하는 행위,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④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전단적인 대표행위, ⑤ 대표권의 남용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2) 행위의 효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은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하거나, 유효라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 각 경우에 따라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유효·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는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를 유추적용하여 표현대표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법률을 위반한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때 원칙적으로 무효의 소급효도 인정되나, 예를 들어 법률에 위반한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가 이미 널리 증권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반한 대표행위는 대내적인 행위이면 무효이나, 예컨대 이사회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자기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거래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본다(대법원 1993.6.25. 93다13391). ③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④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얻지 아니하고 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대내적으로 무효이나,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유효로 보아야 한다. ⑤ 객관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이나,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도 거래의 안정상 유효로 보아야 한다.

•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은 행위

권한을 넘은 행위 유형 → 행위효과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  
→ 회사에 대한 효력 인정
- 법률·정관·이사회 규칙 등에 위반  
→ 원칙으로 무효
-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 회사·대표이사의 연대배상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  
→ 대내적 무효, 대외적 유효
- 대표권의 남용행위  
→ 유효

주식회사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사내이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지만 회사는 보통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에게도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이사를 사내이사(insider director) 또는 업무집행이사라고 한다.

### 2) 사외이사

사외이사(outsider director)란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제1문).

(i)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ii)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ii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iv)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v)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vi)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vii)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사외이사가 된 경우에도 위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제2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 결격사유가 있다(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제6항).

(i)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i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i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v)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v)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vi)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vii)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는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단서조항과 같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은행법 제22조 제1항, 자금 제25조 제1항 및 제350조, 보험업법 제15조 제1항).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추가로 다른 한 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겸직할 수 있으므로(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총 2곳까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사외이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를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라고 한다.

### 4) 등기

상업등기부에는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각각 나누어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1주1의결권의 원칙에 의한 보통결의로 하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가 인정된다.

### 1) 선임기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제3자나 다른 기관에 그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互選하고(상법 제296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 2) 선임방법

이사선임결의는 1주1의결권의 원칙에 의한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로 한다.

한번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중투표제가 인정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각 주주가 그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제2항). 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이사회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 2 제3항). 이 경우 최다득표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상법 제382조의 2 제4항). 집중투표제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총회는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총회의 결의가 곧 피선거에 대한 청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총회결의에 따라 회사대표자의 청약과 피선거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이 체결되며, 이 계약에 의하여 위임에 준하

는 관계가 생긴다(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제2항 제8호, 제317조 제3항, 제183조).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총회소집통지서 또는 전자공고를 통하여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5).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제635조 제25의 2호). 이 사후보를 통지하였다가 실제 주주총회에서 다른 후보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그 선임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04. 3. 18. 2003가합56996).

### 3) 대형상장회사와 금융기관의 경우

대형상장회사, 대형증권회사, 대형신탁회사, 보험회사·은행 등은 이사의 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4) 회사가 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총회에서 선임결의가 있고 피선거자의 동의를 있으면 즉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2016다251215). 총회결의에 따라 회사대표자의 청약과 피선거자의 승낙이 있고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장회사 대부분은 정관에 임기개시일을 명시하고 있다.

#### • 이사의 선임



#### 선임방법

- 1주1의결권의 원칙에 의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 집중투표제 인정(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임기의 만료, 사망·파산·금치산, 또는 회사의 파산으로 종임이 된다.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민법 제689조),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 또는 회사의 파산으로 종임이 된다(민법 제690조). 그리고 임기의 만료,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해임 또는 회사의 해산으로 인해서도 종임이 된다. 그런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이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상법 제527조의 4).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주주와 이사,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 감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 감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26. 2011다42348).

본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제368조 제4항), 이사의 해임결의에 있어서 해임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임의 효과는 해임결의 즉시 발생

하며, 해임의 고지를 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사의 해임결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자가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특칙도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종임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이사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假理事)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가 이사의 권한은 법원이 이를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본래의 이사의 권한과 같다.

#### • 이사의 종임과 효과

- ◆ 언제든지 사임 가능
- ◆ 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임기의 만료,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해임된 경우
- ◆ 회사가 파산·해산한 경우

#### 효과

- ◆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 ◆ 법원에 의한 가이사(假理事) 선임 가능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이사의 자격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사는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87조).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고, 감사도 직무의 성질상 이사가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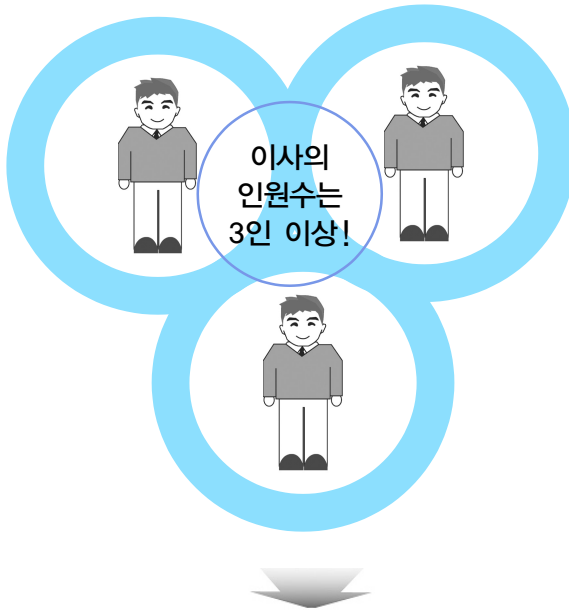
지배인 기타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며(상법 제17조 제1항), 대리상·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물적 회사의 이사는 본인·다른 사원 또는 이사회(사원총회)의 허락(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 제89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제269조, 제397조 제1항, 제567조).

### 2) 인원수·임기

이사의 인원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3항). 이와 같이 이사(감사도 같다)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한 경우 이러한 이사(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로 불려지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임기는 정기총회가 원래 개최되어야 할 기간의 경과로 종료된다고 본다.

• 이사의 인원수와 자격



- 자격제한이 없으며 주주가 아니어도 가능
- 지배인 기타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가능
- 대리상·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물적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1) 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이사가 판결확정시까지 직무를 맡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상법은 특칙을 두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제기 후 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이라도 가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407조 제1항).

### 2)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가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 제1항). 만약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408조 제2항).

### 3) 가치분의 변경·취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가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상법 제407조 제2항).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의 가치분에 의하여 직무의 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사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후임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즉시 위 가치분이 실효하거나 위 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분의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생긴다. 또 후임이사가 구성하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하더라도 그 대표이사는 가치분의 존속 중에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치분이 있거나 또는 가치분의 변경이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등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 • 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과 권한

### 이사직무 대행자의 선임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 상무(常務) 이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단,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는 가능)



이사의 보수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봉급·각종의 수당·상여금·퇴직위로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보수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1) 보수의 의미

이사의 보수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봉급·각종의 수당·상여금·퇴직위로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2014다236311).

### 2) 보수액의 결정방법

이사의 보수액은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88조). 보통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총회에서는 각 이사의 보수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배분의 결정을 이사회에 일임할 수도 있으며, 총액의 최고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인 금액결정과 각 이사에 대한 배분율을 이사회에 일임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보수액의 결정 및 지급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주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에서 이미 정해진 보수총액을 배분하는 이사회 결의에서의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3) 퇴직위로금

이사가 종임하였을 때에 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퇴직위로금은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종이므로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정할 보수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 퇴직위로금은 보통 회사가 내규로 정한 퇴직금지급규

정에 의하여 지급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것은 그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 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다(대법원 1977.11.22. 77다1742).

## 칼럼

### 임원 보수 공개는 '월급쟁이 등급' 줄 세우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상장사 모든 임원의 개인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논란이 있어 법안 상정을 유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753개 상장 회사의 사내이사는 1만4901명이고 5대 그룹은 3927명이다. 이들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다. 미국과 같이 이사회가 자신들의 연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임원의 보수를 개인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장기업은 모든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지는 않고, CEO(최고경영자), CFO(최고재무책임자), 연봉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상위 3명 등 모두 5명의 임원 보수만을 공개한다. 영국은 등기임원만 개별 공개하며,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하여만 공개한다.

우리나라의 임원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상법 제388조)을 받고 있어 고액 연봉 등의 문제가 사전 통제되고 있다. 만약 임원연봉이 공개 도입된다면 오늘날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과 같이 월급쟁이에 불과한 1만4901명의 임원들을 연봉에 따라 줄 세우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연봉이 많은 임원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노획물을 가져가느냐, 연봉이 적은 임원에게는 왜 이렇게 박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조직에서는 모든 임직원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임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임원의 보수 공개는 궁극적으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매우 높다. 임원들이 무슨 이유로 이만큼 받아야 하는지 그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연봉·급여 등과 같은 보수정책은 인사정책과 함께 기업의 중요한 경영 노하우이며 영업비밀이다. 보수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성적을 높이는 것은 대기업은 물론 대학교,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하는 중요한 경영 노하우이다.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비밀을 스스로 공개하여 중요한 경영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기업 영업상의 비밀이자 개인의 사적 정보인 급여까지 공개하라고 으박지르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원보수총액 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2012. 11. 27.)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 임원의 부당해임과 손해배상

(대법원 2013년 9월26일 선고, 2011다42348 판결)

**“임원은 언제든 해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잔여 보수 줘야**

이사와 감사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이사·감사를 임기 중 언제든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감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이처럼 상법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사·감사에게는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주와 이사·감사 쌍방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다.

그럼 임기 만료 전에 이사·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는 어떤 것이 인정 될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할까. '대법원 2013년 9월26일 선고, 2011다42348 판결'이 이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자. A회사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3년의 감사 갑을 취임 1년5개월 만에 해임했다. A회사는 갑이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일부를 부적절하고 과다하게 집행한 점 △A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자인한 12만7000원과 용도가 불분명한 42만여원 등을 부정 사용한 점 △서울로 출장 가서 자택에서 숙박했으면서도 숙박비를 지급받은 점 △법인카드로 주유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휴가 처리하지 않고 동유럽을 여행한 점 △사택을 배정받으며 부당 지시를 하고 사택에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용하게 한 점 △교체 연수가 되지 않은 업무용 차량을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교체하고 도색과 판금 수리 등에 회사 비용을 지출한 점 △A회사 계약 체결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점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등 감사 업무 수

행 방식이 부적절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갑은 해임당한 이후 다른 회사에 상근감사로 취업해 보수를 받았다. 이후 갑은 A회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정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 갑이 다른 곳에서 받은 보수만큼은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서 상계(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불화 등 신뢰 관계 상실만으로 부족

서울고법은 A회사가 갑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법 제385조 제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주주와 이사·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감사가 그 업무와 관련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감사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할 때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갑이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지만 갑이 개인적 목적으로 감사정보비 등을 사용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음이 분명하지 않고, 감사정보비 과다 사용으로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②갑이 A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휴무일에 서울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모두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갑이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③회사로서는 부당 사용한 금전의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밝히지 못했고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④A회사 여비 규정에 의하더라도 자택이 있는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출장비가 부당하게 집행됐을 경우 회사는 여비 규정에 따라 갑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⑤갑이 회사 업무에 관한 감사 권한이 있는 이상 회사의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⑥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언사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이거나 업무 태만에 관한 질책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갑에게 업무추진비 등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는 갑이 감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객

관적 상황을 인정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해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회사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손해액은 남은 임기동안 갑이 재직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해임된 감사는 바로 회사와의 위임 관계가 종료돼 더 이상 회사를 위해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감사가 해임 후 임기 만료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위임 계약 등에 따라 보수를 수령했다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다른 직장에서 받은 보수 공제해야”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감사가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돼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때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 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해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때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는 찬동한다. 다만 해임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해 받은 보수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부당 해고 시 근로자의 ‘중간수입공제’ 법리를 이사 해임에 차용한 것이다.

#### □ 회사와 이사·감사 관계는 ‘위임 관계’

먼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인 데 비해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다. 또 근로자의 경우는 부당 해고가 문제인 데 비해 회사는 이사·감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그 해고는 적법한 해고다. 근로자가 부당 해고 상태에서 회복되면 다시 정상적인 근로 관계가 계속되고, 중단된 근로 기간에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돼야 마땅해 그 기간 동안 재취업했다면 그 보수를 공제해야 한다.

이에 반해 위임 관계는 해소와 동시에 회사와 어떤 관계도 남지 않는다. 따라서 위임 관계 해소 후 새 직장을 구하든 말든, 보수를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근로 관계와 위임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근로자의 부당 해고 관계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이사 해임 관계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판결대로라면 해임된 이사는 정해진 임기까지는 일하지 않고 쉬어야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되고, 부지런히 새 직장을 구하면 손해배상을 덜 받는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판결은 이사의 지위(위임 관계)를 근로자의 그것(고용 관계)으로 격하시킨 판결이라고 하겠다.

#### ■ 부당 해고된 근로자는 손해배상액서 새 직장 수입 공제

근로자가 부당 해고 기간에 새 일터에서 보수를 받으면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한다.

이 중간수입은 해고 전 회사에서 본래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된다. 판례는 해고 후 상태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자 지체(즉 사용자 책임)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근로자의 중간보수는 동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대법원 1991.6.28. 90다카25277). (2018.05.11, 한국경제신문)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명예교수)



일러스트=조영남기자

이사와 사외이사이든 업무담당이사이든 묻지 않고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충실하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1)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382조의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충실하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사와 회사 간에는 신뢰관계(fiduciary relation)가 존재하므로 이사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이사(理事)의 충실의무(忠實義務)가 있다.

이 밖에 이사는 감사(監事)에 대한 보고의무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감시의무가 있다. 이것은 이사는 대표이사의 직무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상법 제393조 제2항)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당연한 의무이다. 이사는 대표이사의 정관이나 법령위반 혹은 부당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감사와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기타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시의무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도 부담한다(대법원 1985.6.25. 84다카1954). 또한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82조의 4).

### 2) 이사의 책임

이사는 상법상 특별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므로, 그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과 그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법정책임을 진다.

첫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1항).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대표이사

나 이사는 물론, 그 행위가 이사회에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399조 제2항).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99조 제3항).

둘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을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이사 전원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28조 제1항·제333조 제1항). 이를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이라 한다. 그러나 자본충실책임을 이행한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으면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도 진다(상법 제428조 제2항).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이사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이하)(대표소송). 나아가 그 이사의 해임청구의 소(상법 제385조 제2항)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대법원 1989.1.31. 87누760). 또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1항). 그러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의무위반(상법 제397조)·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위반(상법 제397조의 2), 자기거래위반(상법 제398조)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셋째,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역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때에는 책임이 없다.

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2002다70044). 또한 부실공시나 허위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하였는데 추후 허위의 사실이 주식시장에 알려져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2. 13. 2010다77743; 동 2014. 12. 24. 2013다76253).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당해 판단이 성실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이다.

2001년 12월 28일 서울의 각 일간신문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주)의 주주들 몇 명이 삼성전자(주)의 이사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주)의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902억원여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는 바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소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것이다. 이사의 책임을 묻는 이와 같은 소송에 대비하여, 이사의 책임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학자들은 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판례법상 발전되어온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을 주창하고 있다.

### 1)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당해 판단이 성실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당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이다.

### 2) 경영판단원칙의 근거

첫째, 기업의 경영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기업의 성공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사에게 엄격한 경영상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사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회사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므로, 법원이 이사의 경영판단을 사후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면, 자칫 법원의 경영판단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을 대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사, 공인회계사, 기타 농업·공업·환경 등 전문직업인의 책임과 비교하면, 회사의 이사에게만 경

영판단원칙을 적용해야 할 근거는 미약하다.

셋째, 만일 주주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요구한다면 회사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주주들이 가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주들에 의한 지나친 경영간섭 내지 경영권침해로부터 이사를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경영판단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유능한 인물을 이사로 영입할 수 있고, 남소예방의 효과가 있다.

###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사가 경영판단의 대상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그 경영판단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이사의 판단이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는 면책된다.

최근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대법원 2002.6.14. 2001다52407; 동 2002.8.23. 2002다2195; 동 2005.7.15. 2004다34929; 동 2005.10.28. 2003다69638; 동 2006.7.6. 2004다8272 등 참조). 그러나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0. 2004다68519; 동 2007.7.26. 2006다33609; 동 2007.7.26. 2006다33685; 동 2007.10.11. 2006다33333; 동 2007.11.16. 2005다58830; 동 2008.4.10. 2004다68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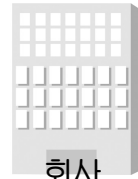
#### •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

경영판단

손해발생



회사

이사의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법원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경영상 판단까지 背任罪(배임죄) 적용해야 하나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 환경이 보장될 때 창의적인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기업인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행동이 아닌 이상 적어도 형벌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기업인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현대인 대부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 타인이 국가나 회사 등 조직인가 아니면 자연인인가의 정도 차만 있을 뿐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기업의 경영, 인수·합병(M&A) 등의 행위 자체가 대규모의 위험을 수반하고, 기업이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었던 경우는 물론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만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심지어 결과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 경우까지 ‘임무를 위배했다’고 하여 배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무 위배의 고의가 없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채권자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세력, 모회사나 자회사의 주주, 심지어 자기회사의 주주나 노조에도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고발이 있는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판결 전에도 일단 피의자로 몰린 기업인은 물론이고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종업원 및 주주까지도 일시에 패닉에 빠진다. 특히 기업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가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만 인정되고 벌금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과거 배임죄에 대한 처벌이 건전한 사회의 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형법에 배임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기죄만 규정돼 있었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악의적 기업범죄에 철퇴를 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배임죄 덕분이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이 선진화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형법상 배임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배임의 본질은 배신이고 배신은 윤리적 문제이며, 민사적으로 배상돼야 한다.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만 배임죄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형법에서 이 죄목을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인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적용은 면제되어야 한다. 기업인들이 지금처럼 사심 없는 경영판단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일하는 환경이라면 우리나라가 과연 자유시장경제인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검찰과 법원은 배임죄에 대해 예전과 달리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경영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처벌을 면하는 판결도 늘고 있다. 물론 이에 맞서 우리의 민사적 배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벌로 강하게 처벌해야만 기업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배임죄의 구성요건 재검토와 더불어 민사적 배상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2013. 4. 6.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률상의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업무집행지시자 등이라고 한다.

### 1) 실질상의 이사의 의의

법률상의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이하 '실질상의 이사'라 한다)도 법률상의 이사와 같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 2).

실질상의 이사라 함은 법률상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2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배후이사라 한다)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3호, 이러한 자를 표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는 이른바 그룹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숨은 실력자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지배회사 등 법인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8.25. 2004다26119).

### 2) 책임의 내용

#### (1)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상 법률상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과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지나, 실질상의 이사는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실질상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내용·추궁·면제·해제 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다(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399조, 제403조).

#### (2) 제3자에 대한 책임

실질상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역시 그 내용, 성질 등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동일하다(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401조).

### (3) 책임의 연대성

실질상의 이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도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이사는 실질상의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의 2 제2항).

#### •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

##### 실질상의 이사

법률상의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책 임

- ① 회사에 대한 책임
- ② 제3자에 대한 책임
- ③ 이사와의 연대책임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금지의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겸직금지의무).

### 1) 경업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397조 제1항).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란 회사가 실제 행하는 사업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뜻한다.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된 거래를 포함한다.

### 2) 겸직금지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란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을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회사도 포함한다. 다만, 이사는 다른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는 있다. 이사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이사 등 회사의 임원은 특별법상 겸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독규 제7조 제1항 제2호, 은행 제20조, 보업 제14조, 신업 제22조, 자금 제45조 제2항, 제250조 제7항, 제251조 제3항).

### 3) 승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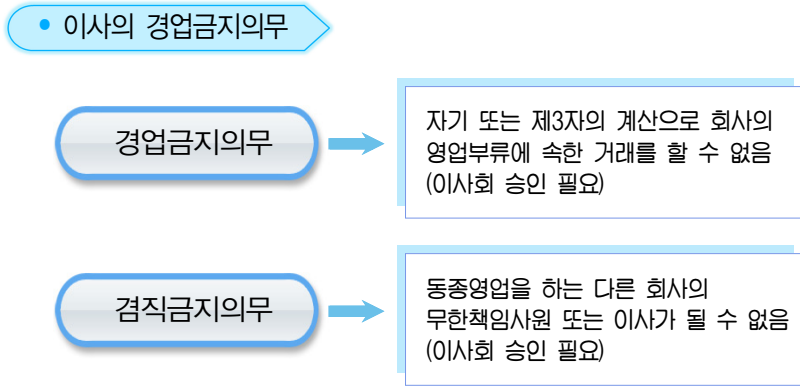
이사회의 사후승인(추인)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또 사후승인을 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백지식 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계속적 거래의 경우에는 포괄적 승인이 가능하다.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경영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 4)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사법상 효과는 영향이 없으나,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5조),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상법 제399조)를 할 수 있으며, 개입권(상법 제397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상법 제400조 제1항), 경업금지위반의 경우는 이사의 책임이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로 제한되지는 않는다(상법 제400조 제2항).

개입권이란 회사는 이사회(1인이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제383조 제4항). 개입권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397조 제3항). 경업금지위반은 경우에 따라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 제1항)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사는 기회유용이 금지된다. 집행임원의 경우도 같다(상법 408조의 9, 제397조의 2). 퇴임한 이어나 사용자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 금지되는 회사사업기회유용의 범위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상법 제397조의 2 제1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인 이상,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사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상법 제 397조의 2 제2호)

이는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의 연장선상(in the line of business)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기회를 회사가 이용할 필요성의 여부, 회사가 이전에 특정 또는 유사한 사업기회에 관심을 표현했는가 여부,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능력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legal capacity, financial ability and business practicality)이 있는지 여부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례를 보면, 이사가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 구회사의 수입선인 일본 회사를 신회사의 수입선으로 연결하고 구회사와 일본회사 간의 수입판매업을 폐지한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 된다. 이때 구회사가 상실한 사업기회의 가치도 구회사의 손해로 인정된다(대법원 2018.10.25. 2016다16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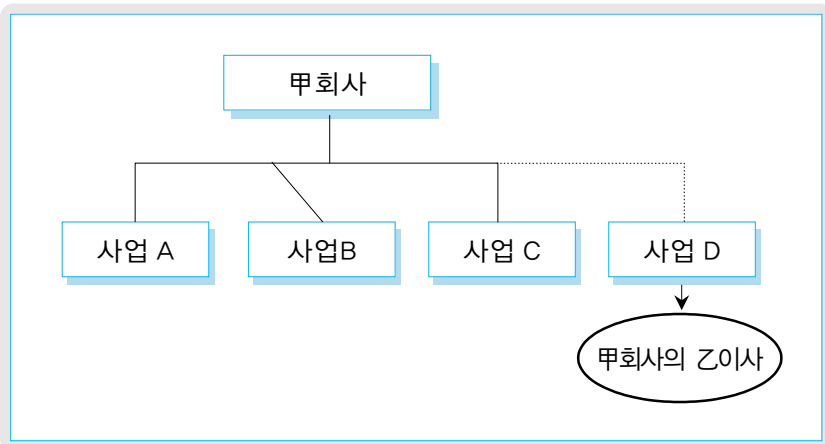
### 3) 회사사업기회유용의 허용

회사사업기회유용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있으면 허용된다. 사후추인도 가능하다.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용할 사업기회를 사전에 회사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1인회사의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 4) 회사사업기회유용금지 위반의 효력

거래의 사법상의 효력은 영향이 없어 유효하다. 회사사업기회유용금지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상법 제397조의 2 제2항).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상법 제400조 제1항), 회사사업기회유용금지 위반의 경우는 이사의 책임이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로 제한되지 않는다(상법 제400조 제2항). 회사의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이사는 특별배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상법 제622조 제1항).

## 회사 사업기회·자산의 유용



자기거래라 함은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 1) 자기거래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이사 등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상법 제398조 제1문). 이사 등이 자기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①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②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하며, ③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2)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 ① 이사, 집행임원 또는 주요주주(제542조의 8 제6호)
- ② 이사, 집행임원 또는 주요주주(제542조의 8 제6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③ 이사, 집행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위 ①에서 ③까지에 열거한 자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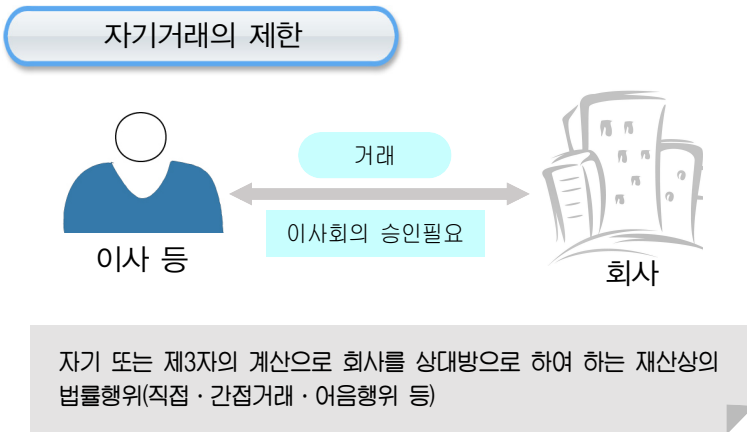
⑤ 위 ①에서 ③까지에 열거한 자 중 누구와 위 ④에서 말한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이다.

여기서 이사(집행임원)라 함은 거래당시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임시이사(상법 제386조 제2항), 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 제1항) 또는 청산인(상법 제542조 제2항) 등을 말하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자는 제외된다. 이사가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자라야 하므로, 전무이사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회사업무

에 관여한 동안에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는 한 상법 제3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실질상의 이사는 제외된다.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거래가 아니다(대법원 2013.9.12. 2011다57869).

### 3) 제한되는 거래

어떠한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거래행위에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대법원 1984.12.11. 84다카1591). 직접거래는 물론 간접거래 및 어음행위도 자기거래가 된다. 그러나 행위의 성질상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염려가 없는 거래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① 채무의 이행, ② 상계, ③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행위, ④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형적 거래행위(예금계약·운송계약·창고임치계약 등), ⑤ 이사의 증여행위나 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등은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사 등은 이사회에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으면 자기거래를 할 수 있다.

### 1) 자기거래의 허용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를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인 이사 등은 이사회에 승인결의 전에 미리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승인방법은 반드시 이사회 회의의 방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의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해당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인회사의 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이 필요 없다. 승인시기는 사전승인에 한하고 사후승인(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인 이사 등은 이사회에 승인결의 전에 미리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의 자기거래의 有效要件에 불과하고, 승인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승인이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행하였다면, 당사자인 이사 및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상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해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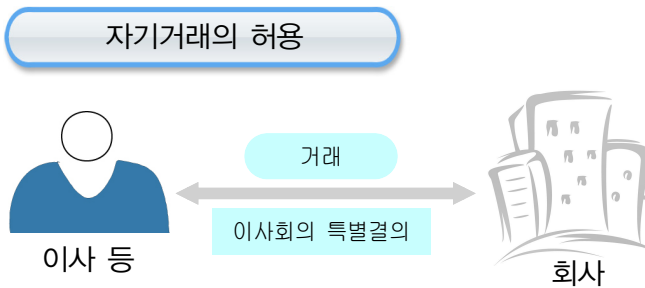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이 악의임(또는 선의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대법원 2005.5.27. 2005다480).

### 2) 상장회사의 경우의 특례

상법은 주권상장회사에 대해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상법 제401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집행임원, 감사와의 신용거래(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금지하므로(상법 제542조의 9 제1항), 이사회가 승인되어도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전 대여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 대여 등은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 9 제2항).

나아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회사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소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9 제3항). 다만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한 거래,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한 경우 등은 이사회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9 제5항).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違法行爲留止請求權)이란 이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은 이사회에서 하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의 선임·해임 및 재무제표의 승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상법은 주주지위의 강화요청에 따라 주주에게 회사의 기관적 지위를 인정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시정권을 인정하되 그 권리행사의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소수주주권으로 하였으니, 사전적 예방조치로서의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사후적 구제조치로서의 대표소송제도가 그것이다.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이사(청산인에게도 준용된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부여한 권리(상법 제402조)를 말하며(감사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미법상의 injunction(금지명령)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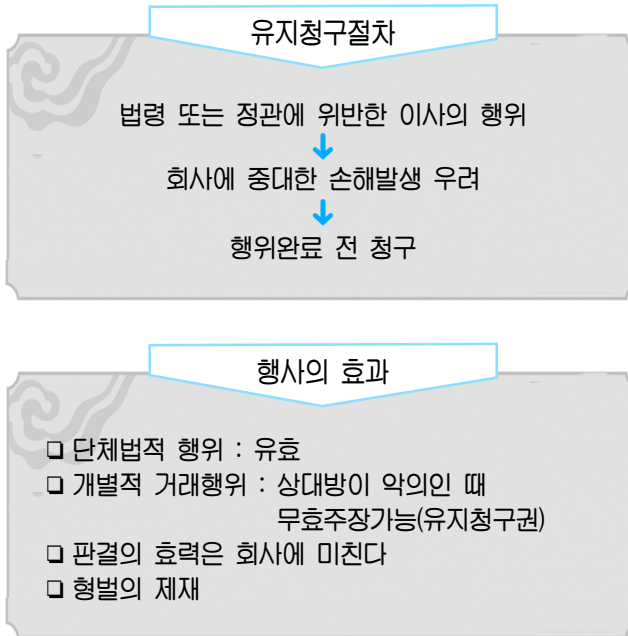
### 1) 유지청구의 절차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소수주주권자, 즉 발행주식 총수(무의결 권주를 포함)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0분의 50 이상,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감사이다. 행사요건은, ①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이사의 행위이며, ②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③ 그 행위의 완료 전이어야 한다. 행사방법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이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 소에 기한 가처분으로 그 행위를 유지시킬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유지에 관한 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상법 제403조 내지 제406조)을 유추적용해야 할 것이다.

## 2) 유지청구권행사의 효과

이사가 유지청구를 무시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했을 때 그 행위가 단체법적 행위(예컨대, 사채발행)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지만, 개별적인 거래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인 때(예컨대, 유지청구권행사의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유지의 소는 회사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유지청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의 제재가 있다(상법 제631조 제1항 제3호).

###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이다.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영미법의 representative suit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소가(訴價)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대표소송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1998년)에 삼성전자(주) 및 제일은행(주)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다.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이사의 책임[발기인·감사·청산인·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상법 제424조의 2),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은 자(상법 제467조의 2)의 책임에 관하여도 준용된다]은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 자본충실책임(상법 제428조)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예컨대,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은 이사의 변제책임)을 포함한다고 본다. 또 이사의 책임인 이상 이사가 그 취임 전에 부담한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재임 중에 부담한 책임은 퇴임 후에라도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다.

### 1) 소의 절차

무의결권주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 또는 이사이었던 자를 피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 그리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대법원 2010.4.15. 2009다9805).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제2문). 또 회사가 소의 제기를 거절한 경우 또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는 회사에 회

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예컨대, 이사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자력이 될 염려가 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4항).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03조 제5항).

## 2) 판결의 효과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은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대표기관적 지위에서 진행시키는 것이지만, 형식상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원고인 소수주주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이사가 부담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89조). 그러나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같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해 이익을 얻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법은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405조 제1항).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가 없는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405조 제 2항).

## 3) 재심의 소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소수주주권자에 한하지 않는다)는 확정된 중독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 제1항).

## 4) 이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대표소송의 제기를 청구하였는데 자회사의 주주인 모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스스로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를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이라 하는데, 판례는 이와 같은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23. 2003다49221). 현행 상법 제 403조에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예컨대 “甲회사의 주주가 자기 회사, 즉 甲회사에 대하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甲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인 乙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논리적 이유이다.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 이중대표소송의 부정(否定)

(대법원 2004년 9월23일 선고, 2003다49221 판결)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임원 상대 소송 안돼”… 완전자회사는 허용을

대표소송(代表訴訟)이란 회사가 이사회 감사 등 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소(訴)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을 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회사는 별도 요건 있음)가 회사를 대신해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를 말한다.

이중(二重)대표소송이란 자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그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이유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임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다중(多重)대표소송이라 한다. 이런 종류의 대표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이중대표소송에 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다. ‘대법원 2004년 9월23일 선고, 2003다49221 판결’은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했다.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자. H사는 S사 발행 주식의 80.55%를 소유한 순수지주 회사이고, S사는 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다. 원고는 H사 발행 주식의 29.25%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 갑·을·병·정 등은 H사와 S사의 이사, 대표, 감사 등으로 재직된 이들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H사 주주는 ① S사 이사회가 당시 26만원 상당인 주식 1주 가격을 2만3000원으로 산정하고 장외등록을 완료함으로써 S사에 손해를 끼친 점 ② 피고들이 H사가 보유하고 있던 S사 주식 5만700주를 자산재평가 없이 1만6200~2만3000원(매도 당시 자산가치를 재평가했다면 S사 주식은 1주에 19만5254원이 된다)에 타인에게 매도해 H사에 8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③ S사가 H사에 대여금 등 채권 13억2200여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H사 이사회는 이를 H사의 증자, 합병, 이익배당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S사 주식 7만586주를 주당 1만9550원에 경매 처분함으로써 회사에 12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등을 들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원고는 ④피고 을이 S사 대표로 재직할 때 보증금 및 임대료 5억7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전제 아래 S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 부분이 이종대표소송이 된다.

#### □ 최초로 이종대표소송 인정한 高法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및 이종대표소송을 심리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3년 8월22일 선고, 2002나3746 판결)은 위 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가 S사의 모회사인 H사 주주로서 S사 대표인 을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S사 손해에 관해 피고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소송(이종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심이 이종대표소송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 또는 지배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만으로는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지배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렵다.

둘째, 이종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으면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경영진이 종속회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반면 종속회사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들의 종속회사에 대한 부정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종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종속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종속회사의 손해는 종국적으로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로 귀속되므로 이종대표소송을 통해 종속회사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를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이종대표소송의 현실적 필요성을 근거로 원심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를 포함한다는 이론적인 조작을 통해 이종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大法院 “원고적격 흠결돼 위법”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특히 원심 법원의 판결 중 피고 을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부분(이종대표소송 부분)을 파기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결 중 이종대표소송에 대한 판단만 보자. 대법원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해 양자 간에 지배·종속 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다. 대표소송의 제소 자격은 책임 추구를 당해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므로, 종속회사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 주주는 상법 제 403조, 제415조에 의해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H사 주주로서 S사 대표인 피고 을에 대해 책임 추구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적격(원고로서 소송을 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흠결됐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에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중대표소송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 □ 완전자회사의 경우 구제책 필요

원심(고등법원) 판결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다. 그러나 상법 규정(제 403~406조)상 '주주'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자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모회사 주주라고 해도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자회사에는 자회사 주주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소를 제기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모회사 임원을 상대로 자회사 임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완전자회사의 경우 자회사 주주는 모회사밖에 없다. 이때 모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회사 손해를 구제할 길이 없다. 일본처럼 완전모자회사 간에만 이중대표소송을 입법을 통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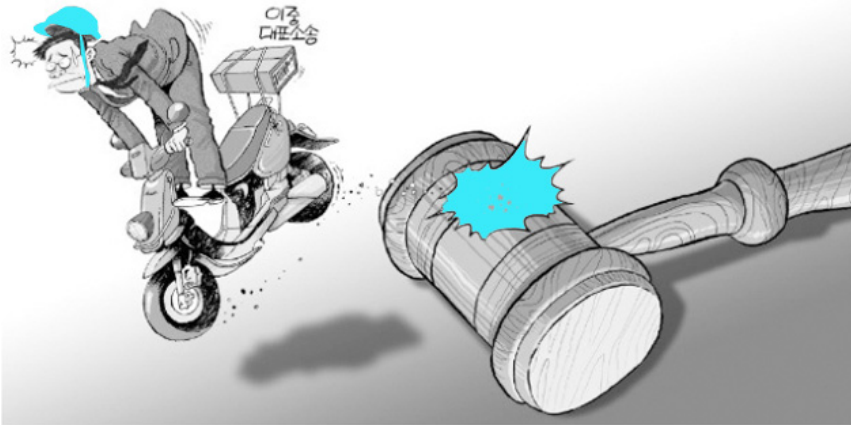
#### ■ 일본은 완전母子회사 간 이중대표소송 인정

일본은 완전모자회사 간에만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 일본 회사법은 ①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총자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외국회사는 제외한다) ②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주주(모회사 의결권의 100분의 1 또는 발행된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상장회사는 6개월의 보유 기간 필요)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847조의 3 제4항). ③ 다만 제소청구를 하는 주주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피하거나 자회사 혹은 최종완전모회사 등에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최종완전모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① 주식교환·주식이전에 의해 완전모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② 흡수합병에 의해 회사가 소멸해도 존속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표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이 주식교환 등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발생했어야 한다(제847조의 2).

(2018.04.27, 한국경제신문)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러스트=조영남기자

집행임원이란 이사회의 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CEO(대표집행임원, Chief Executive Officer), CFO(재무집행임원, Chief Financial Officer), CTO(최고기술경영자, Chief Technology Offic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집행임원제도는 집행임원에게는 업무집행권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회에게는 업무감독권을 전담케 하여 이사회의 고유의 기능인 업무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집행임원제도는 개별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장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나 소규모회사도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임원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 + 대표이사' 체제 또는 '이사회 + 대표집행임원'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 2) 집행임원과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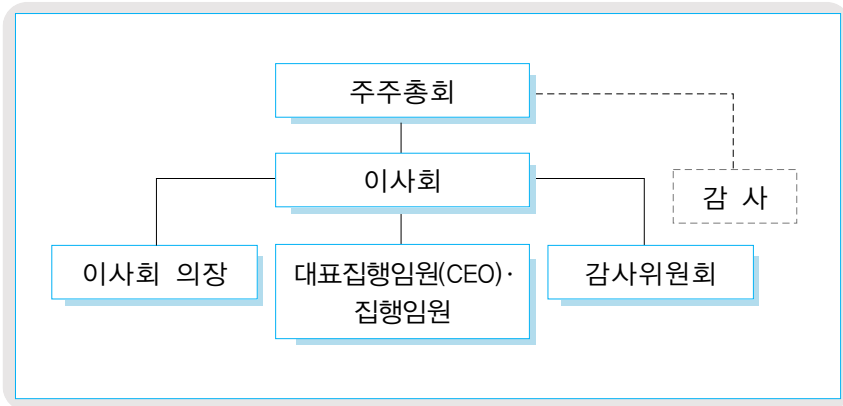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408조의 2 제3항 제1호).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상법 제408조의 3 제1항), 이사회는 집행임원이 임기 중이라고 하여도 해임할 수 있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는 두지 못하기 때문에(상법 제408조의 2 제1항) 집행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집행임원과는 별개로 이사로 구성되지만, 업무집행권 이외의 업무감독권 등을 가질 뿐이다.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임원의 선·해임권, 업무집행감독권, 집행임원의 직무분담권 및 보수결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08조의 2 제3항). 집행임원은 필요한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08조의 7 제1항),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 7 제2항).

### 3)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상법 제408조의 2 제2항) 이사와 회사의 관계와 동일하다. 즉, 집행임원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지고 있다(상법 제408조의 9). 또한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상법 제408조의 6 제1항),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08조의 6 제2항). 집행임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상법 제408조의 8 제1항),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8조의 8 제2항). 집행임원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08조의 8 제3항).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기관구조





## 정말 복잡한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기업경영과 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은 감사장치를 겹겹이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감사(監査)의 내용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대별되는데 다음의 기구들이 중첩적으로 감사한다.

### 1) 감사 및 감사위원회

주식회사에는 상설기관인 감사(監事)가 있어서, 회계감사를 한다. 이 감사(監事)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한다. 주식회사는 감사(監事) 대신에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2) 이사회

회사의 이사회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업무감사기능이다.

### 3) 검사인

검사인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양자를 할 수 있다.

### 4) 준법감시인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게는 각 금융관련법률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준법감시인은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 5) 준법지원인

일정규모(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 6) 외부감사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의 주식회사

는 재무제표(기업집단의 경우 결합재무제표 그리고 종속회사를 가진 주식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監事)에 의한 감사(監査)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외감법 제2조).

### 7)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외감법 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며,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을 통하여 회계의 적정성을 감사(監査)하게 된다.

#### • 주식회사의 감사기구

- 감사 · 감사위원회**

— 필요 · 상설기관
- 외부감사인**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외감법)
- 이사회**

— 업무감독
- 검사인**

— 임시적 감사기관
- 준법감시인**

— 금융기관
- 준법지원인**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외감법)

주식회사의 감사(監査)는 주주, 이사회, 감사(監事), 외부감사인, 감사인 등이 중첩적으로 행한다.

전형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보호와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건전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감사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상법은 주요 감사기관으로서 필요·상설기관인 감사와 임시적 감사기관인 감사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기관이 중첩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 1) 주식회사의 감사기구

주식회사의 감사기구는 주주(단독주주와 소수주주), 이사회, 감사(監事), 외부감사인, 감사인 등 많은 기관이 담당하여 물샐틈 없는 감사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많은 회사가 순식간에 도산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감사기관 중 어느 것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감사(監査)는 성질상 그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업무 감사와 회계감사로 대별되는데, 위의 감사기관을 감사(監査)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감사·주주·법원이나 회사(창립총회와 주주총회)가 선임한 감사인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양자를 다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업무감사를, 그리고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단독주주와 소수주주도 임시총회의 소집 청구·회계장부의 열람 등을 통하여 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곳에서 외부감사인(外部監査人)에 관하여만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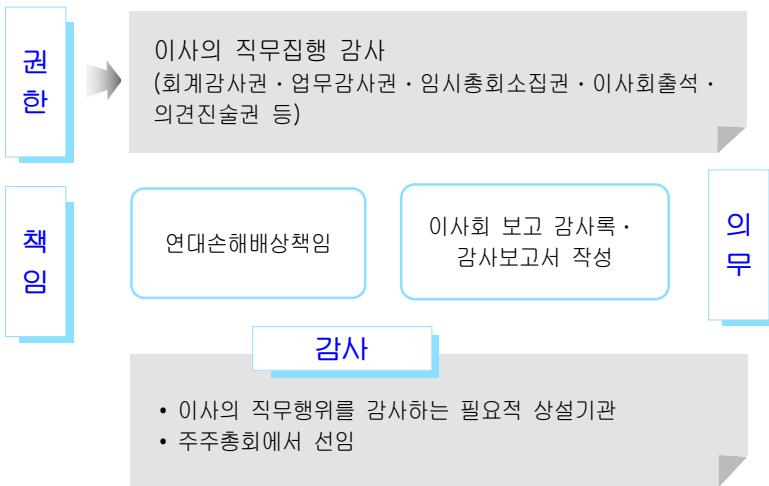
### 2) 외부감사인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비교적 대규모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기업집단의 경우 결합재무제표 그리고 종속회사를 가진 주식회사는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하여 감사(監事)에 의한 감사(監査)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회계법인 등에 의한 감사(監査)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된다.

외부감사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회계법인·감사반이어야 하며, 감사의 대상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 감사란 ?



감사(監事)는 이사의 직무행위를 감사(監査)하는 필요적·상설기관이다.

감사(監事)는 이사의 직무행위를 감사(監査)하는 필요적·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409조 제1항). 상장회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이사선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5).

감사의 선임방법은 독특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 감사가 독립된 감사기관이 된다.

감사의 인원수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411조).

감사의 임기는 3년이나,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상법 제410조).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제385조 제1항).

### 1) 감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12조 제1항),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이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3항).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12조의 2).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사권 외에도 임시총회소집권, 이사회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이사회소집통지를 받을 권한,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이사회회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유지청구권,

회사대표권, 회사설립무효의 소(訴)·총회결의취소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자본감소무효의 소·합병무효의 소 등 각종의 소권(訴權)이 있다.

## 2) 감사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 2 제2항). 또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議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또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기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제1항). 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 특례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 11 이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	← • 상근감사(상법 제542조의 10) • 특례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 2 이하)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	← • 상근감사 또는 비상근감사 • 일반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 2) 또는 특례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 11 이하)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 • 감사(비상근 가능) • 일반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 • 감사는 임의로 설치 가능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監事)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감사위원회란?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監事)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監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제1문). 즉,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위기관이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 2 제1항 제2문). 즉, 회사는 기존의 감사제도 또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회사 및 은행·증권·보험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 3) 특례감사위원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특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례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11 이하에 규정된 감사위원회로서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또한 특례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4)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므로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4항).

감사위원회는 그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 2 제5항).

#### 5) 감사위원회의 권한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채택하는 경우 감사제도(監事制度)는 폐지하여야 하며, 대신 감사(監事)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에 관한 조문은 모두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상법 제415조의 2 제7항).

#### 6)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 2 제3항).

### • 감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선택

회사는 기존의 감사제도 또는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회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증권·보험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의 하나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벌칙은 없지만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 1) 준법지원인의 의의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542조의 13).

### 2) 준법통제기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1항). 준법지원인은 내부통제제도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외에 회사경영의 적정성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나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3) 준법지원인의 선임과 임기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2항).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에 결의로 임명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4항).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근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6항).

### 4) 준법지원인의 자격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상법 제542조의 13 제5항). 이에 따라 사내 법무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 5) 준법지원인의 직무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3항). 준법지원인의 직무와 업무범위가 기존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적법성 감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용실태 평가·보고, 외부감사인의 종합검토, 공시책임자의 내부정보관리 등과 중복되므로, 회사의 내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6) 준법지원인의 의무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7항). 준법지원인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8항).

## 7) 회사의 협력의무

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9항). 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42조의 13 제10항).

## 8) 준법지원인 설치회사에 대한 혜택

회사가 준법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양벌규정(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중 회사의 벌금형을 면제한다(상법 제634조의 3). 이와 같이 준법지원인을 설치한 경우 혜택은 있으나 미설치시의 형사적 벌칙조항은 없다. 이 점은 상근감사제도와도 같다. 그러나 형사적 벌칙조항이 없지만 강행규정이다. 회사가 준법통제제도를 두지 않으면 법령위반이 되어 이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거나 해임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등 법적 책임이 따른다.



## 1. 슈퍼주중데이

정기주주총회시즌인 매년 3월 중 어느 금요일 우리나라의 수 백개의 상장 회사가 동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날을 슈퍼주중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일자에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문주주들(총회꾼들)이 동시에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게 만들어, 이들이 총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곧 바로 주말로 이어져,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언론의 관심을 덜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상장기업들은 다른 회사의 주총일과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총일, 그리고 요일을 고려하여 주총 날짜를 잡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주총회일이 특정일로 쏠리면서 주주권한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2. 코스닥 기업 M&A와 기업범죄

사채로 돈을 조달,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을 하는 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가 자주 드러나기도 한다. 그 수법은 예컨대 유상증자한 30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가장 납입해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80억원을 빼돌려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한다. 주당 500원이었던 주식을 2000원까지 올린 후 손을 털고 나갈 계획을 세운다. 주로 사채 등을 끌어들이거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받는 방식으로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한 후 퇴판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자금 지급 거부, 기업을 점거, 인수자 측을 협박, 심지어는 경영에 관여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기도 한다.

(임도원 기자, 2010. 6. 6. 한국경제)

제 5 부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자금조달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의 발행과 같은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 신주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조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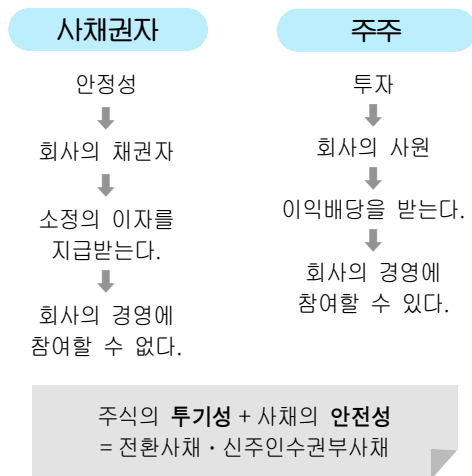
주식회사의 기업활동이 본궤도에 올라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금의 수요가 커진다. 회사설립시에 주금액의 납입을 통하여 집적된 회사재산만으로는 그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므로, 계속 소요되는 자금을 기동성있게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자금의 조달방법은 이른바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과 사채의 발행에 의한 조달로 다시 분류되고, 후자의 경우는 바로 신주발행에 의한 조달책이 된다. 생각컨대,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은 구체적인 절차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금리부담이란 중압 때문에 계속적인 자금조달책으로서 는 부적당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기업사회에서 기업의 공개와 더불어 신주발행의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게 된 것도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본조달수단인 신주발행과 사채발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주발행과 사채 발행의 비교

사채와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발행을 결정하고(상법 제469조·제416조) 일반대중으로부터 청약서에 의하여 모집하되 증권을 발행하며, 그 액면의 최저한이 법정되어 있고(상법 제329조 제4항, 제472조 제1항), 발행한도가 법정되어 있는 점 등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구성의 면에 있어서나 귀속자의 지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 2)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과 사채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그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은 회사의 자본구성 단위로서 사원권적인 지위를 가지나, 사채는 채무로서 채권자적 지위를 가진다.

② 주식은 자기자본을 구성하여 원칙상 반환을 요하지 않으며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필요가 없으나, 사채는 타인자본이며 부채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요하며 이익과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채권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채권자는 만기시에 상환을 받으며, 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주주에 우선하여 회사재산에서 변제를 받지만, 주주는 회사에 대해 투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⑤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지만, 사채는 회사의 채무일 뿐이다.

⑥ 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나 사채의 경우는 할인발행이 가능하다.

⑦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자기사채의 취득은 가능하다.

### • 자금조달의 방법

####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입(은행, 사채업자 등)

사채의 발행 : 주식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

####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신주의 발행 : ◇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린다 ◇ 장기적인 자금조달에 적합하다

#### 매각에 의한 자금조달

소유재산의 매각 :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때에 축적한 보유재산을 처분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자란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증자방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 1) 보통의 신주발행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성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통의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회사의 재산이 증가한다. 이를 다시 실무상으로는 증자 또는 유상증자라고도 하는데 사채발행과 함께 회사에 의한 직접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된다. 현행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이사회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자유로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기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이사회와 독선과 자의적인 신주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상법 제418조), 불공정한 신주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예로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에서 종업원(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권리를 인정하여 종업원지주제도를 법정화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자금 제165

조의 6 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공모증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종래 금과옥조처럼 지켜오던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다.

## 2) 특수한 신주발행

특수한 신주발행으로는, ① 전환주식의 전환(제346조 이하), ② 주식분할(제329조의 2), ③ 자본감소(제438조~제444조),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제461조), ⑤ 주식배당(제462조의 2), ⑥ 전환사채의 전환(제515조, 제516조), ⑦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제516조의 8), ⑧ 합병(제523조 제3호), ⑨ 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530조의 5, 제530조의 6), ⑩ 주식교환·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항 제2호, 제360조의 15 제2항)의 경우를 들 수 있고, 이 밖에도 특별법상 ⑪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제2호·제30조)과, ⑫ 회사회생계획(채무자회생법 제206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밖에, ⑬ 일반공모증자방식 등에 의한 신주발행(자금 제165조의 6, 제165조의 7, 제165조의 13) 등을 들 수 있다.

### •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의 차이

구 분	보통의 신주발행	특수한 신주발행
자산의 변동	자산의 증가	자산의 변동이 없다
자본의 변동	언제나 자본이 증가	자본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 또는 증가
신주발행의 결정	이사회 의결의	각기 다르다
효력발생시기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범위 내에서 발생	납입의 절차가 없으며 각기 다르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주주 이외의 특정한 제3자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1) 제3자의 신주인수권의 의의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제3자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제3자란 공모의 경우의 일반인을 의미하지 않는다(상법 제418조 제2항, 제420조 제5호).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자금 제165조의 6 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공모증자(제3자배정)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장회사의 경우는 제3자배정이 널리 행하여지므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부여요건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이와 같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 예컨대, 정관에 “회사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규정을 둘 수 없다. 정관의 기재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예컨대, 종업원·임원 등과 같이 어느 정도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 후 신주를 발행할 때에 이사회에서 제3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단지 ‘제3자’라고만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경영상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컨대 자금조달의 기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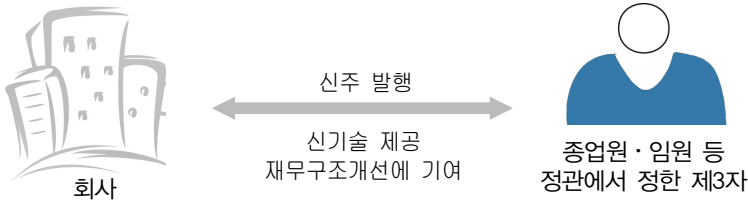
외국자본의 도입, 전후방 연계시장의 확보,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주주배정에 의해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외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우호세력인 제3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30. 2008다50776). 즉, 경영상 목적 달성과는 상관없이 특정 주주를 축출하거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없다. 경영권 방어는 일부주주나 경영자에게 국한된 이익으로서 회사의 경영목적이라는 보편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 3) 위반의 효과

이사의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의해 회사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사전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424조), 사후적으로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또한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에게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2조의 2).

한편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면서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제3자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계약상의 권리일뿐이므로 그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지는 아니하고, 그 제3자는 회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 이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 제3자의 신주인수권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주발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그리고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세목은 몰라도 그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여 수권자본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려고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의 결정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상법 제416조 본문 단서 참조) 물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②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③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④ 신주의 인수방법
- 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⑥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⑦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신주발행시에는 반드시 신주배정일을 정하고 그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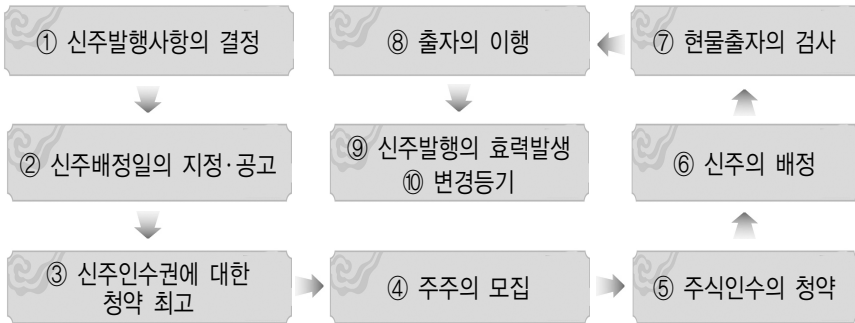
###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회사는 일정한 기일(청약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전에 신주인수권자에 게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실권예고부청약최고)를 하여야 한다.

#### 4) 주주의 모집

#### 5)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주주의 채택에 따라 주식청약서 2통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청약한다.



#### 6) 신주의 배정

#### 7) 현물출자의 검사

#### 8) 출자의 이행

####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면 그 날의 다음 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그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 10) 변경등기(상법 제317조 제4항·제183조)

#### 11) 주권상장법인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의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12) 위법한 신주발행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을, 효력발생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5.2.28. 94다34579).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인수하거나 가설인의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은 납입책임이 있다.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자신의 진실한 성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사용인, 친지 등 타인의 명의로 인수하거나 심지어 死者나 허무인의 명의로 인수하는 사례도 있다. 상법 제332조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납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인명의로 인한 주식인수도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기인과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누가 회사에 대해 납입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와 누구를 주주로 보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 1) 타인명의 차용의 유형

상법 제332조는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를 ① 가설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를 사용한 경우와,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사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의 납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설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식인수인만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1항).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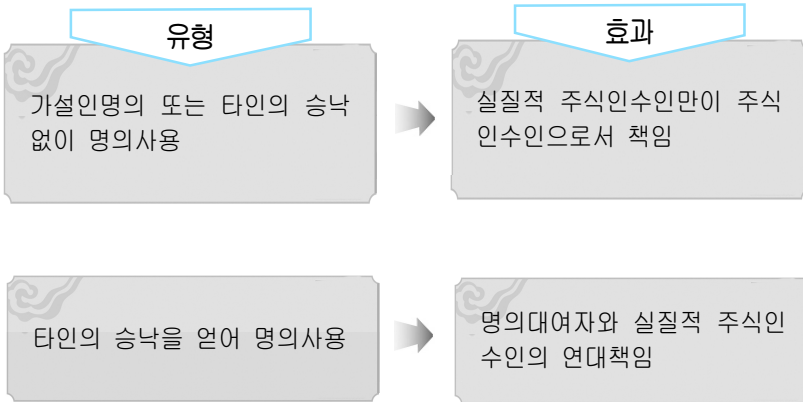
### 2)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상의 주식인수인과 실질적인 주식인수인 중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문제이다.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상호간에 있어서는 개인법적으로 해결될 일이겠지만,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의결권 등 주주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고, 또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명의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누구의 채권자가 주식을 압류할 수 있느냐 라는 등의 다름이 생긴다.

종래 판례는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 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라 판단했다(대법원 2011.5.26. 2010다27519 등),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7.3.23. 2015다248342; 동 2017.8.29. 2016다267722; 동 2017.9.21. 2017다241017; 동 2017.12.5. 2016다265351). 따라서 회사는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 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여야만 한다.

• 타인명의로의 주식인수



사채는 주식회사가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이다.

사채란 주식회사가 특정한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회사 채무로서 이를 표시하는 채무증서가 사채권(社債券)이며 이러한 일련의 발행절차를 사채발행이라 한다.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설비투자·증설 등 장기안정자금의 일시조달, 거액의 운영자금조달, 구사채의 상환, 증자에 의한 배당압력회피 및 주가관리 등이다.

### 1) 사채발행의 장·단점

사채를 발행하면 그 장점으로는 ① 배당압력과 경영권 침해위험없이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고, ②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배당금은 세후순이익의 처분으로 지급되지만 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상 손비로 인정되는데, 배당금과 비교할 때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④ 차환발행이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⑤ 이자율보다 기업의 총자본이익률이 높은 경우 부채에 의한 이익의 확대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만큼 금융기관에서의 차입여지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③ 회사의 수익이 감소되어도 이자지급은 계속되어야 하고, ④ 불경기하에서는 손실의 확대효과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다.

#### 사채발행

- 장기안정자금의 일시조달
- 거액의 운영자금조달
- 구 사채의 상환
- 증자에 의한 배당압력 회피
- 주가관리

## 2) 사채 발행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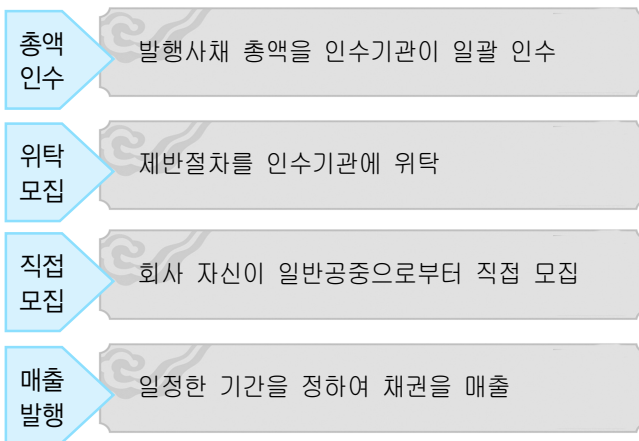
① **총액인수**: 발행사무 일체를 인수기관이 맡아서 처리함과 동시에 발행사채 총액을 인수기관이 일괄하여 인수한 후에 인수기관 책임하에 모집·매출하는 방법이다.

② **위탁모집**: 사채발행에 관한 제반절차를 인수기관에 위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인수기관은 발행회사의 대리인 자격 또는 인수기관 자신명의로 발행회사를 위하여 채권모집을 한다.

③ **직접모집**: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일반공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하는 것으로 회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자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반면에 발행사무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는 경우는 드물다.

④ **매출발행**: 사채총액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방법에 의한 사채모집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사채발행의 형태





특수사채란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1)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조건으로 당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이다(상법 제513조 이하 참조).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사회에서 한다.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고, 주주 외의 자에도 발행할 수 있다.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에 관한 규정이 거의 준용된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513조 제3항 제2문, 제418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전환의 청구는 전환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2통의 청구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은 그 청구를 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따라서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데 이 경우 전환 전의 사채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위법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5.29. 2007도4949 참조).

### 2)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상법 제516조의 2 이하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는 사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될 수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유하는 양자의 중간적 형태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 2 제4항 제2문, 제418조 제2항 단서).

위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익참가부사채  
일정한 원리금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

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5.29. 2008도9436).

### 3) 담보부사채

일정한 담보물건을 담보로 설정한 후 신탁기관에 신탁함으로써 사채의 원리금 지급이 확보되게 하는 사채로서, 담보사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이 규정하고 있다.

### 4) 교환사채

교환사채소지인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5)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일정한 원리금을 받을 권리 이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 6) Option부사채

사채발행시에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만기일 전이라도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첨부된 사채를 말한다.

### 7) 기타의 특수한 사채

기타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

#### • 특수한 사채의 종류

##### 전환사채

-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신주인수권부사채

- ◆ 신주인수권의 부여,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경유

##### 담보부사채

- ◆ 담보물건을 담보로 설정한 후 신탁기관에 신탁

##### 교환사채

- ◆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청구

자본금의 감소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이다.

자본금의 감소(減資)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감소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법적 효과를 말한다. 회사가 결산을 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자본금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될 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금은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 자본금의 감소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자본금감소는 그 목적에 따라 실질상의 자본금감소(실질적 감자)와 계산상의 자본금감소(형식적 감자)로 분류할 수 있다.

### 1) 실질상의 자본금감소

실질상의 자본금감소(실질적 감자)란 법률상 자본금을 감소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에 상당하는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주주에게 주식소각의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유상감자이다.

감자의 목적은 대개 회사사업의 경영에 불필요한 과잉자본금액을 감소시켜 회사의 자본금규모를 줄이고 주식의 이익배당률을 높이는 데 있다. 이 방법은 회사의 사업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이미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주식을 반환받고 소각하기도 한다. 한편 주식의 최초발행가액과 주주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감자차익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반대로 후자가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감자차손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 2) 계산상의 자본금감소

이에 대하여 계산상의 자본금감소(형식적 감자)란 이미 감소되어 있는 회사재산에 맞추어 법률상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명의상의 자본금감소라고도 한다. 그 목적은 대개 자본금의 결손이 크게 생긴 경우 장기간 이익배당을 할 수 없어서 회사의 절대적 신용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게 되므로, 자본금액과 회사재산액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익배당을 가능케 하고 주가의 인상을 획책하는 데 있다.

형식적 감자방법은 액면 5,000원의 주식 2주를 액면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는 것처럼 주식의 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키는 방법과, 액면 10,000원의 주식을 액면 8,000원의 주식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당 액면가액을 일괄적으로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다.

### • 실질상의 자본금감소



#### 실질상의 자본금감소 (실질적 감자)

-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고 주주에게 주식소각의 대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유상감자

##### 감자의 목적

- 회사의 과잉자본의 축소, 주식의 이익배당율의 향상



#### 계산상의 자본금감소 (형식적 감자)

- 이미 감소되어 있는 회사재산에 맞추어 법률상의 자본금을 감소하여 누적된 결손을 보전

##### 감자의 목적

- 자본금의 결손과 주가하락의 경우 자본금액과 회사재산액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고 주가의 인상을 도모



## 1. 기업의 공개란

넓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going public)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기업공개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 2. 배임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으로 배임죄가 있다. 배임죄 적용이 폭넓고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무죄율도 높아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2009년 손해액 5억원 이상인 배임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1심 무죄율이 15.6%로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2.2%)의 7배가 넘는다. 현행 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해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배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법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경영 판단 후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더욱이 판례는 실제 손해가 없이 손해 위험이 발생하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적용기준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경영 판단 의도에 대한 해석, 경영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법원 판결도 달라지는 예가 흔히 있다. 중요한 사건으로는 농협중앙회의 판택 계열사의 단기 기업어음(CP) 501억원어치 매입사건, 한일합섬을 인수한 동양그룹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등에서 하급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급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임도원 기자, 2010. 6. 8. 한국경제)

제 6 부

주식회사의 계산



회계관련법규로는 기업회계기준, 상법상의 회계관련규정, 각종 세법의 제 규정 및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기업회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이다. 이것은 기업회계의 관습으로부터 발달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회계행위를 지도하는 기준이 된다. 이외에도 상법상의 회계관련규정, 각종 세법의 제 규정 및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들 규정은 법령으로 성문화 되어 있으므로, 이것들은 관련된 분야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 1) 상법상의 규제

상법에서는 이익의 계산이나 재산상태의 파악을 위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제2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기업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작성방법은 특별히 상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은 유동자산의 평가시 저가주의의 적용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기업인 주식회사 회계처리에 관하여 제447조 이하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재무제표의 종류, ② 감사의 의무, ③ 자본금충실원칙을 위한 제규정, 예컨대 자본준비금의 적립, 유동자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영업권 등의 자산평가방법, 각종의 배당, 이익준비금의 적립,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주식할인발행차금, 연구개발비,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세법상의 규제

세법 중에서 기업회계와 관련이 깊은 것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다. 이들 세법은 재정수입의 확보 및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의 계산방법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세무회계)상의 소득계산방법과 기업회계상의 순이익계산방법은 기업의 소득을 계산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으나, 반드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법은 단순히 공정한 과세소득의 계산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때로는 소득재분배, 경제정책상 자원배분, 경제성장 및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의 규제는 과세표준액계산이라는 특수목적에서만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에서 상위의 효력을 갖는다.

###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규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위원회의 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적인 측면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 • 회계관련 법규에는...

##### 상법

###### 회계장부·대차대조표 작성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 회계처리방법의 규정

- ◇ 유동자산의 평가시 저가주의 적용
-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의무화

##### 세법

###### [소득세법·법인세법] → 국가재정수입의 확보·과세의 공평

→ 과세소득의 계산 외에, 소득재분배·자원배분·경제성장과 안정도 목적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매우 중요

(위 규정 제5장에서 정하고 있음)



상법상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그 부속서류가 있다(상법 제447조 제1항).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개별재무제표

(1) 대차대조표(B/S: balance sheet)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서 기재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시한 것으로 통상 기말 현재의 기업의 재산상황을 표시하여 준다(靜的概念).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2) 손익계산서(P/L: profit or loss statement)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입과 그에 대응한 비용을 기재하여 그 기간 중의 순손익을 표시한 것으로서 통상 매 결산기 동안 기업경영성과를 보여 준다(動的概念).

(3) 회사는 이들 서류 외에 영업보고서(business report; Geschäftsbericht)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47조의 2), 영업보고서는 영업연도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명서로서 재무제표는 아니다.

(4)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서류이다. 여기에서 현금이란 현금과 예금 및 현금등가물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58).

(5)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74).

(6)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금액의 세부내역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2.83).

## 2) 연결재무제표

법률상으로 독립된 기업이나 경제적 이해 관계가 높은 경우, 예컨대 지주 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재무실적이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동 기업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것이 연결재무제표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배회사가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지배를 하고 있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27호 13).

### •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 개별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일정시점의 모든 자산·부채·자본금을 표시

손익계산서 —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활동의 성과와 내용을 표시한 회계보고서

현금흐름표 — 기업의 지급능력과 현금 등의 유동성을 나타 내 주는 표

자본변동표 —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주석 —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포함

#### 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등 기업 군(그룹)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보고서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는 정기총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결산 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소집된 총회이다.

기업의 회계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이익처분을 결정하는 등의 결산을 확정하는 권한도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란 회사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

### 1) 결산보고서 작성

이사(대표이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매결산기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이고, 그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항목에 관하여 그 세부적인 것을 기재한 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영업보고서는 전영업연도의 영업의 경과나 상황을 기술한 설명서이고, 감사보고서는 監事가 이사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監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다. 감사는 이사로부터 위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의조 4 제1항).

### 2) 이사회 승인

이사는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앞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447조).

### 3) 주주총회 승인

이사는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결

산보고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는데 보통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가부동수이면 부결로 처리된다.

결산보고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결산은 확정되어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고, 결손이 있으면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게 된다.

#### 4)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재무제표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결의로 최종승인할 수 있다(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이와 같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의 2 제2항).

#### • 결산을 위한 주주총회의 절차

- ① 결산관계 재무서류(재무제표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 영업보고서)를 대표이사가 감사에게 제출
- ②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제출
- ③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4주 내에 대표이사에게 제출
- ④ 대표이사는 결산보고서(①, ②, ③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결산관계서류를 회사에 비치하여 열람
- ⑥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2주 전에 발송(소집지는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인접지)
- ⑦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개최(결산의 승인)

준비금이란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회사의 재산액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계산상의 수액(數額)이다.

준비금이란 자본금을 초과하는 회사의 재산액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준비금은 실질적으로는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사내에 적립한 회사이익의 유보액이며, 형식적으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부에 기재되어 이익산출을 함에 있어서 공제항목이 되는 금액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 본래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재산만이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가 되므로, 상법은 자본금을 확정하고 그 자본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재산을 보유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자본금유지의 원칙). 그러나 자본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전부 배당한다면, 장래에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회사채무자에게도 곤란하게 되므로,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일부를 회사에 적립하게 한 것이다.

### 1)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

준비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적립하는 재원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관행되고 있는 擬似준비금(예컨대 감가상각적립금, 대손충당금, 가격변동준비금)이나 비밀준비금은 이른바 부진정준비금으로서 본래의 의미의 준비금은 아니다.

### 2) 준비금의 용도

임의준비금의 폐지·변경·사용은 정관의 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 할 수 있으나, 법정준비금의 용도는 자본금의 결손전보와 자본금잔입 두 경우에 한정 된다. 결손의 전보는 결산기 말의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금

과 법정준비금에 미달할 경우 임의준비금, 자본준비금 순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자본금전입이란 준비금계정의 금액 중 일정액을 차감하고 대등액을 자본금계정으로 이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자본금전입으로 자본금은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며 이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자본금전입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 제1항).

### 3)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 2).

#### • 준비금이란?

##### 준비금

- ◆ 자본금을 초과하는 회사의 재산액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적립하여 두는 '적립금'

##### 준비금의 용도

- ◆ 결손의 전보 : 자본금의 결손(순자산액(자본금+법정준비금))을 전보
- ◆ 자본금전입

##### 임의준비금

- ◆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

##### 법정준비금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 ◆ 이익준비금 : 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 조성(결손의 전보와 영업상황의 악화에 대비)
- ◆ 자본준비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조성

준비금의 종류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임의준비금이 있다.

### 1)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란 회사의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즉,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이때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이란 그 결산기에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주식배당과 같이 자본화된 금액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은행 등과 같은 공공기업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높다.

이익준비금은 본래의 주주에게 배당할 것이지만 장래의 손실에 대비해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건실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한계를 초과한 금액은 임의준비금이 된다.

### 2)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란 회사의 자본금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자본준비금의 재원은 회사의 자본금의 증감거래에서 생긴 이익, 즉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액면초과금액, 감자차익금, 합병차익금, 분할·분할합병차익금, 기타 자본금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인데, 이것은 주주의 출자의 일부 기타 자본금에 준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성질상 이익배당에 충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그대로 적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한도도 있을 수 없다. 다만 합병잉여금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상법 제459조 제2항).

이 밖에 특별법상의 적립금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다. 이것은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자본준비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을 구성하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본준비금과 분리하여 기재되고 그 용도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3) 임의준비금

임의준비금이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잔여이익에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대개 장래의 사업확장, 배당의 평준화, 사채의 상환, 손실의 전보, 주식의 소각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나, 그 목적은 법률상 제한이 없다.

#### • 준비금의 종류

##### 자본준비금

- ◆ 회사의 자본금거래에서 생긴 이익적립(액면초과금액, 감자차익금, 합병차익금, 분할·분할합병차익금 등)

##### 임의준비금

- ◆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잔여이익에서 적립

##### 이익준비금

- ◆ 회사의 영업에서 생긴 이익 적립(자본의 1/2에 이를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이상)



배당이란 株主의 소유지분을 기반으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배당이란 株主의 소유지분을 기반으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의 자본금출자에 대한 보상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상(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액과 그 결산 기 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나, 이에 앞서 이사회는 이익처분안을 결정하고, 이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금액과 이익배당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며, 주주총회는 이것을 승인·확정하게 된다(상법 제449조 제1항).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에 의하여 구체적인 배당액도 정하여진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464조의 2 제1항).

위법한 배당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채권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이사와 감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1) 현금배당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할 때에는 현금배당을 의미한다. 그러나 때로는 주식이나 현물 등의 형태로 배당하는 수가 있다.

### 2) 중간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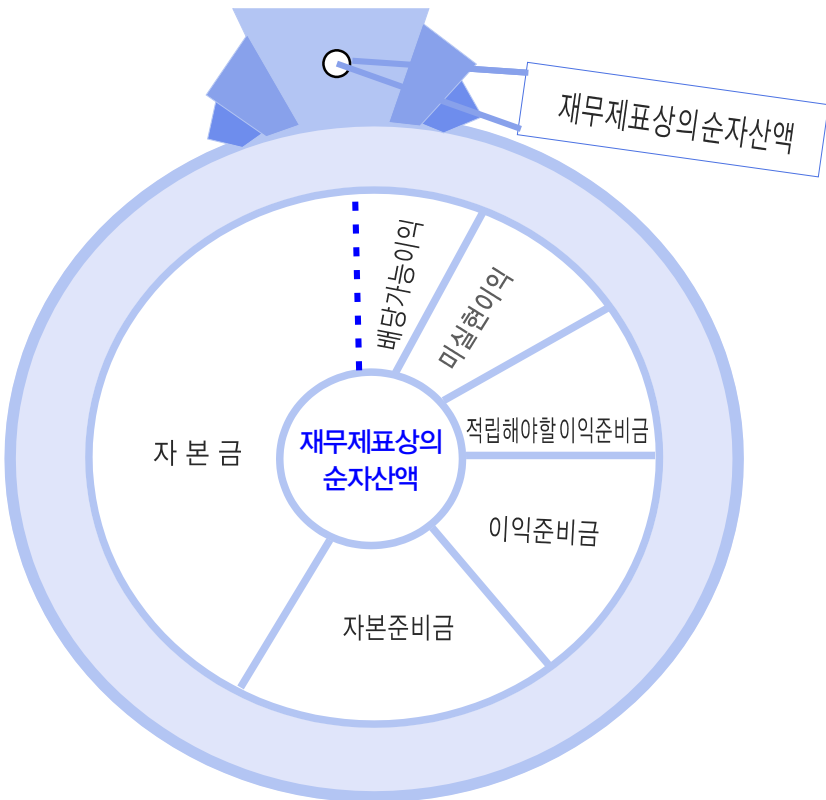
중간배당이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462조의 3 제1항). 본래 이익배당

은 영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에서 생기는 이익만으로 하고,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므로 매 결산기에 1회로 한정되나, 영업연도 중 1회 배당에 따른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일반대중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 개정상법에서 중간배당제도가 도입되었다.

### 3) 현물배당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및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462조의 4).

• 배당가능이익



특수배당으로는 현물배당 또는 재산배당, 부채배당, 청산배당 등이 있다.

이익배당은 현금배당이 가장 보편적이지만 오늘날 주식에 의한 배당도 실 무적으로는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잘 이용되지는 않으나, 현물배 당 또는 재산배당, 부채배당, 청산배당 등이 있다.

### 1)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기업이익의 일부를 자본화하여 영구적으로 유보시키고자 할 경우에 주주의 지주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시가가 권면액에 미달하는 경우 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주식배당이 결의되면 현금배당과는 달리 어떤 형태의 자산도 기업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배당이 이루어지면 주주들은 단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서 새로운 주식을 추가적으로 분배받을 뿐이다. 따라서 주주들이 기업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분비율이나 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주주지분의 세부항목을 재분류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식배당의 결과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와 자본금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현물배당 또는 재산배당

현물배당 또는 재산배당은 비화폐성자산(상품·부동산·유가증권)으로 배당 하는 것이다.

### 3) 부채배당

부채배당이란 배당선언일(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일정한 기일이 경과한 후

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어음(증서)을 교부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을 때 이 증서와 교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방법을 말한다. 부채배당의 수령자는 증서에 표기된 날자까지 그것을 소유하면 현금을 받게 되며 또한 그것을 할인하여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음배당이라고도 불린다.

#### 4) 청산배당

청산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잉여금 잔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 잔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은 이익의 배당이라기 보다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환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중인 회사가 그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청산배당이라고 볼 수 있다.

#### • 특수한 배당

##### 현물배당(재산배당)

- ◆ 비화폐성 자산으로 배당

##### 청산배당

- ◆ 청산 중인 회사가 그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

##### 주식배당

- ◆ 주주의 지주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것

##### 부채배당

- ◆ 어음교부 후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었을 때 이 증서와 교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

법인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확정한다.

법인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확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決定 또는 경정(更定)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1) 과세표준의 신고

먼저 신고기한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2항).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를 보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97조 제5항).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 계산서
- ④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 위의 ① ~ 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들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 2) 법인세의 납부

법인은 적법하게 계산한 법인세를 위의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01조 제2항).

-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의 신고

◆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신고

**제출서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법인세의 신고

◆ 신고기간 내에 납부

▲

◆ 분납가능

1천만원 초과  
→ 납부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①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주주는 누구나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가 본점·지점에 비치하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할 수 있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448조, 외감 제14조 제1항·제5항), 재무제표를 열람하고도 그 실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그 원자료인 회계장부(원장, 일기장, 분개장, 전표 등)와 서류(신서, 계약서, 영수증 등)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 1) 회계장부 열람권자

회계장부의 공개는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므로, 그 열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자(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한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3% 持株要件을 완화하고 있다. 즉,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0.1%(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는 0.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42조의 6 제4항). 이 요건은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1.9. 2015다252037).

### 2) 회계장부 열람청구의 내용

열람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람청구의 이유는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장부의 범위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열람하여야 할 회계장부의 범위에는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포함한다(대법원 2001.10.26. 99다58051). 상법상 보존 또는 비치기간이 지난

장부에 대하여는 비록 현재 보존 또는 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동경지방법재판소 2006.2.10. 결정).

### 3) 열람청구의 거부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회계장부열람권의 행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66조 제2항). 주주는 열람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12.21. 99다137).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7.3.19. 97그7결정). 회계장부에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의 비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18.2.28. 2017다270916).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주주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회계장부열람권자인 주주가 원고로 되고, 회사가 피고로 되며,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사가 정당한 거부 사유 없이 주주의 열람청구권의 행사를 거부한 때에는 이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제635조 제1항 제4호), 주주는 회사 또는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의 열람 전에 이사가 장부와 서류를 변경하거나 훼손·은닉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의 신청(민소 제375조 이하)을 하거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9.12.21. 99다137; 동 1997.3.19. 97그7결정).

### 4) 주주명부의 열람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396조 제2항)(대법원 2017.11.9. 2015다235841). 다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11.9. 2015다235841).





# 제 7 부

##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내부의 사정변화나 기업외부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때에 기업형태의 변경을 위한 제도이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그 성격이 유사한 합병회사·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 간에만 가능하며 전자의 인적 회사와 후자의 물적 회사 간에는 그 사원의 책임과 회사의 조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직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의 경우 종래의 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종류의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나, 그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충분하다.

### 1)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하는 조직변경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①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②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③ 사채를 발행한 경우는 그 상황이 완료되어야 하며, ④ 조직변경후 유한회사 자본금의 총액은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정하지 못한다.

회사가 조직변경된 후에도 권리·의무의 주체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권리·의무의 이전이 생기지 않는다.

### 2)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조직변경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①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②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며, ③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하고, ④ 조직변경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

###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상법 제287조의 43 제2항),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결의로 유한책임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 43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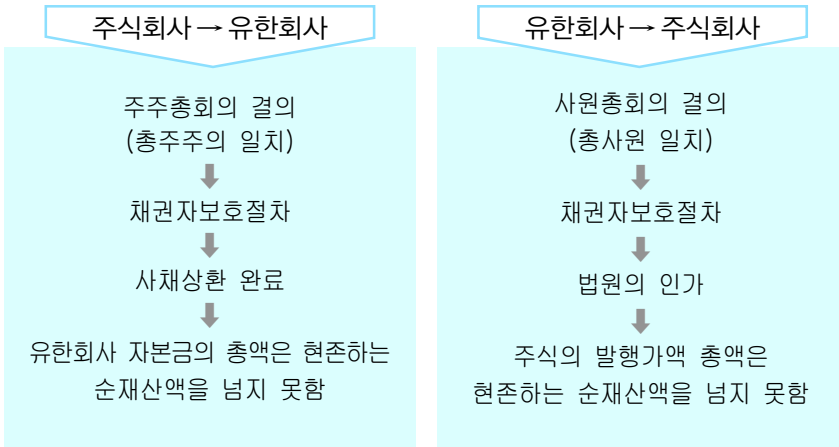
### 4)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하는 조직변경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는 경우 새로이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조직변경과 회사의 계속이 동시에 행하여 진다. 그리고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조직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

### 5)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하는 조직변경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어 회사채권자의 이익은 오히려 보호되므로 등기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 • 회사의 조직변경



지주회사란 타회사의 주식전부의 소유를 통하여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사 위의 회사이다.

### 1) 지주회사란?

지주회사(持株會社)란 타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전부의 소유를 통하여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독점규제법 제2조 제1의 2호). 지주회사는 그 타회사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 2) 지주회사의 분류

지주회사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지주회사가 사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와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로 나눌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란 어떠한 사업활동(생산, 판매 외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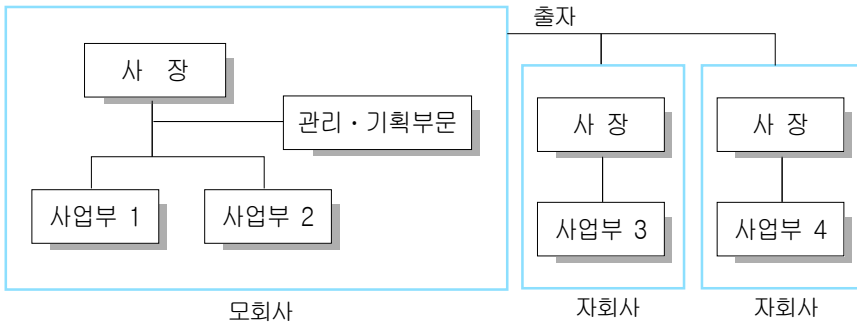
### 3) 지주회사의 효용과 폐해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즉, ① 경영과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② 조직이나 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하여 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용이하고, ③ 경영과 사업의 분리로 각각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④ 주주중심의 경영을 촉진할 수 있고, ⑤ 사업회사가 실패하더라도 지주회사는 출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험의 절단이 가능하며, ⑥ 사원의 채용, 임금문제 등을 사업회사별로 차이를 둠으로서 다양화된 인사·노무관리를 기할 수 있으며, ⑦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로 능률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그 밖에 ⑧ 자금조달기능, ⑨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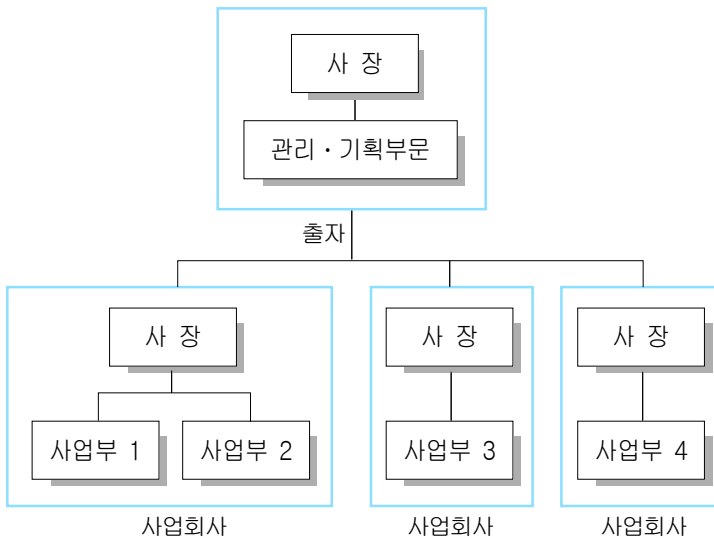
제적 제도와의 조화, ⑩ 소비자 이익의 증진과 고용확대 등의 효용이 있다.

반면에 그 폐해로는, ① 경쟁제한과 부당염가판매, 내부거래, 대주주의 지배력 독점 등에 의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가능성과, ② 경영자의 권한 남용, 다수결의 남용 및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으로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③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기업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 사업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



지주회사 설립방법은 주식매수방식, 증자방식, 꺾데기 방식, 주식교환방식, 주식이전방식 등이 있다.

### 1) 지주회사의 설립방법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매수방식, 증자방식, 꺾데기 방식, 주식교환방식, 주식이전방식 등 다양하다.

주식매수방식이란 기존의 회사(A회사)가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B회사: 순수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그 B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A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로 취득하여 사업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되는 방법이다.

증자방식이란 기존의 회사(A회사)가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B회사: 순수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그 B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기존의 사업회사(A회사)의 주주가 A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B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되는 방법이다.

꺾데기 방식이란 지주회사로 될 기존의 회사(B회사)가 완전자회사인 A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 자신의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 영업의 양도는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형태로 한다. B회사가 그 영업 전부를 완전자회사인 A회사에 이전하고 스스로는 꺾질만 남아있게 된다.

### 2) 각 설립방법의 장단점

주식매수방식과 증자방식은 간편한 방식이기는 하나 A회사의 주주 중에 경영진에 대하여 적대적인 주주 등이 주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따라서 순수지주회사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꺾데기 방식의 경우에는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에 시간이 걸리고, 조사기간 중에는 영업을 방해되며, 영업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채권양도(채무자의 승낙 또는 통지: 민법 제450조), 면책적 채무인수(채권자의 승낙), 근저당권의 이전 등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불편이 따른다. 이와 같은 불편이 없고 모든 주식이 강제로 이전하는 주식교환·주식이전 방식이 가장 나은 지주회사설립방법이다.

###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독점규제법 제8조).

#### • 지주회사의 설립방법

주식매수방식	간편한 방식이지만 기존회사의 주주 중 경영자에 대한 적대적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제공을 강제할 수 없어 순수지주회사를 만들 수 없다.
증자방식	
깍대기 방식	채권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근저당권의 이전 등 절차에 있어 실무상 불편하다.
주식교환방식	실무상 불편 없이 모든 주식이 강제로 이전된다. → 가장 나은 지주회사 설립방법
주식이전방식	



주식교환이란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기존의 두 회사가 완전모회사·  
완전자회사관계로 되는 절차이다.

### 1) 주식교환의 의의

주식교환이란 기존의 회사(B회사)가 다른 회사(A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를 취득하고 대신 A회사의 주주에게 B회사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B회사가 A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절차를 말한다(상법 제360조의 2 이하 참조). 이는 바로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A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완전모회사인 B회사로 이전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A회사의 주주는 대신 완전모회사가 되는 B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주식교환일에 B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와 같이 A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을 강제적으로 B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점이 주식교환제도의 특징이다.

### 2) 주식교환의 기능

주식교환제도는 다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첫째는 100% 자회사, 즉 완전자회사를 산하에 두게 되는 지주회사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 발행할 자사의 주식을 대가로 하여 회사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매수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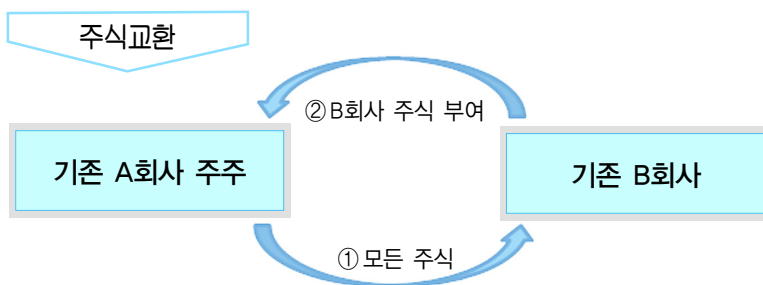
### 3) 주식교환의 절차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 3 제1항). 다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상법 제360조의 3 제2항), 이때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다음 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5 제1항). 소규모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과 간이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충분하다(상법 제360조의 9, 제360조의 10).

#### 4)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14 제1항).



주식이전이란 주식이전을 통하여 완전모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절차이다.

### 1) 주식이전의 의미

주식이전이란 기존의 회사(A회사)가 100% 모회사(순수지주회사, B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로서, 기존의 회사(A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모든 주식을 강제로 B회사에 이전시켜 A회사는 스스로 B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이에 대하여 B회사는 A회사의 주주들에게 B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여 본래 A회사의 주주였던 자들이 B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 2) 주식교환과의 차이

주식교환과의 중요한 차이는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기존의 두 회사가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의 관계로 진전되는 것임에 비하여 주식이전의 경우는 완전모회사를 새로이 설립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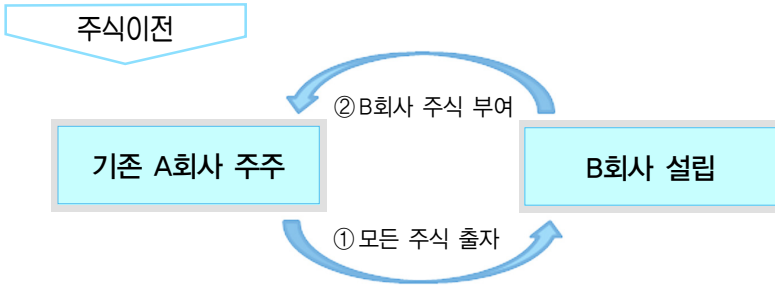
### 3) 주식이전의 절차

회사가 주식이전을 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360조의 16), 주식이전의안 등의 서류를 주주총회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와 꼭 같은 절차를 거쳐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완전모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주식이전무효의 소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23 제1항).



회사의 합병은 당사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한 당사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주식회사의 합병이란 법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는 회사간의 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주주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장 완전한 기업합동형태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모의 확장, 영업비절약 등 경영합리화, 경쟁의 회피, 원료공급원의 확보, 시장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 이러한 합병에는 당사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한 당사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 1) 합병의 자유와 제한

회사간의 합병은 원칙으로 자유이나(상법 제17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 다만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이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600조 제1항). 또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이면 소멸된 주식회사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상법 제600조 제2항).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제3항).

한편, 특별법상의 제한으로는 독점규제법상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은행·보험·신탁 등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회사, 정리절차 중인 회사 등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 밖에 공업발전법상의 제한이 있다.

## 2) 합병의 절차

회사의 합병은 당사회사 대표이사간의 합병계약서에 의하며, 이 계약서에서 합병의 조건·기일·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의 정관 등을 정한다. 다음으로 각 당사회사는 합병계약서에 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결의하여야 하며 당사회사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 2).

한편 당사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합병총회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합병결의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권을 인정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친 후,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후 합병등기를 마침으로써 합병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보고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총회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한편 합병을 한 후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 6 제1항, 제522조의 2 제2항).

### 회사의 합병 절차

합병계약서 (합법의 조건·기일·존속회사의 정관 등을 규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 → 창립총회 보고총회 → 합병 등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생략되는 간이 합병과 소규모합병이 있다.

### 1)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기가 있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 2 제1항).

이 경우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 2 제2항).

### 2) 소규모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 3 제1항 본문).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최종재무상태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27조의 3 제1항 단서).

이 경우 존속회사의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상법 제527조의 3 제2항),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의 3 제3항). 합병 후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이러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27조의 3 제4항).



## 간이 합병

- ①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규모 합병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 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합병대가의 유연화

회사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 제4호). 특히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상법 제523조의 2).

### 2) 현금지급합병

(1) 상법은 합병대가의 유연화 차원에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 현금 등의 대가를 자유로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합병대가를 존속회사의 주식 이외에 현금 기타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일반적으로 현금지급합병(cash-out merger)이라고 한다.

(2) 회사가 합병하려면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각 당사회사들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주주들에게는 존속회사의 신주를 교부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현금지급합병이 가능하게 되면 각 당사회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한 후 존속회사는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서 존속회사의 신주대신에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을 축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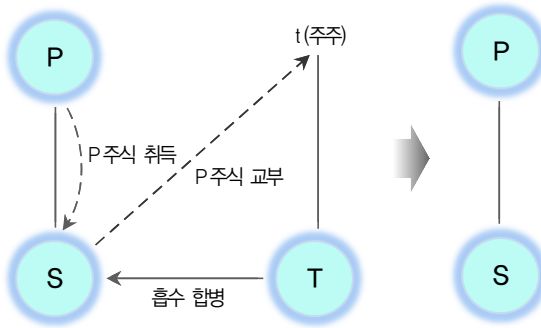
### 3) 삼각합병

(1) 회사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 2). 이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하다. 삼각합병이란 어느 회사

(A)가 자회사(S)를 설립하여 모회사관계가 된 다음, 자회사(S)가 다른 회사(T)와 흡수합병할 경우, 자회사(S)가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T)의 주주에게 모회사(A)의 주식 등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triangular merger). 이에 대하여 매수모회사(B)의 자회사(S)가 매수대상회사(T)에 흡수합병할 경우, 매수대상회사(T)의 주주에게 매수모회사(B)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이라 한다. 삼각합병을 이용하면 부실기업의 재건에 활용할 수 있고, 그룹 내의 조직을 재편성하거나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로의 자금공급수단이 될 수도 있다.

(2) 삼각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모회사는 소멸회사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나 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자회사를 통하여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내에서만 채무승계 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적인 합병도 가능하다. 삼각흡수합병은 삼각흡수합병계약에 의한다.

### 삼각합병



주식회사의 조직재편과 관련하여 2015년 상법 개정으로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을 인정하였고,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 1) 삼각주식교환

포괄적 주식교환의 결과 완전모회사로 될 S가 완전자회사가 될 T의 주주 t와의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자신(S)의 모회사 P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이를 삼각주식교환이라 한다. 삼각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 P의 주식을 이용하여 인수대상회사(T)를 소멸시키지 않고 모회사(P)의 손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먼저 완전자회사(S)와 인수대상회사(T)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일어난다. 양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결과로 S가 T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T가 완전자회사가 된다. 즉, T의 모든 주주(t들)가 그 소유주식을 P의 완전자회사인 S에게 교부하고, 이때 S회사는 그 대가로 S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때 S회사는 자신의 주식이 아닌 P의 주식을 T의 주주 t들에게 교부한다. 결과적으로 T의 모든 주주는 P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T는 S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최종적인 결과는 P(완전모회사) — S(완전자회사) — T(S의 완전자회사, P의 완전손자회사)가 된다. T의 모든 주식은 S가 소유하고 있고, T의 모든 주주는 이제 P의 주주가 되었다. 만약 S를 이 목적을 위한 SPC였다면 P는 S를 소멸시킬 수 있고, 그 경우 S가 소유한 모든 T의 주식은 P에게 귀속되고, 결국은 P(완전모회사) — T(완전자회사)의 구조가 된다.

이와 같은 삼각주식교환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완전자회사인 S가 그 완전모회사인 P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회사주식취득금지(주식상호소유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여 삼각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0조의 3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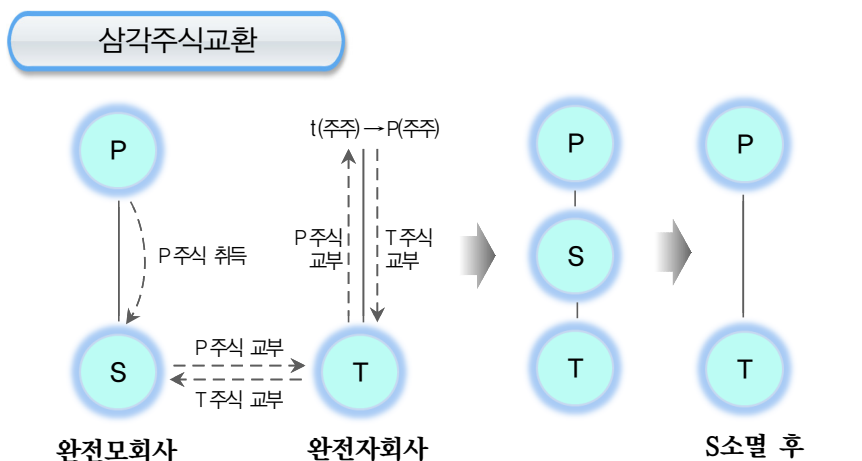
### 2) 삼각주식교환의 장점

삼각주식교환을 이용하면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 특허권, 상표권, 제3

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가지고 있어서 합병이 불가능한 인수대상회사(T)를 용이하게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삼각주식교환을 하면 모회사인 P회사의 주주총회가 필요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 간편하다.

주식교환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수적이고(제360조의 3 제1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므로(제360조의 5 제1항), S회사와 T회사의 경우에는 이들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S는 P의 완전자회사이므로 S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T의 경우는 소규모주식교환이나 간이주식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가 필요하며,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T의 주주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삼각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완전자회사(S)가 이미 보유 중인 상장회사인 완전모회사 P의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현금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삼각주식교환 후에 자회사(S)가 손자회사(T)를 흡수합병하면 결과적으로 역삼각합병이 된다. 우리 상법은 직접적인 역삼각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삼각주식교환 후에 합병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 역삼각합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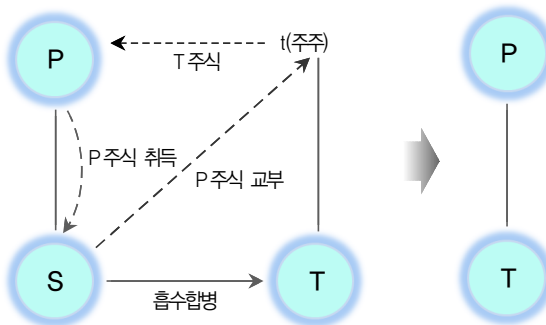
역삼각합병 역시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 특허권, 상표권,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가지고 있어서 합병이 불가능한 회사를 용이하게 자회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 1)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

인수대상회사인 T가 자회사인 S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의 대가로 T의 모든 주식을 S회사에게 교부하고, S회사는 그 모회사인 P의 주식(또는 현금)을 T의 주주 t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합병을 역삼각합병이라 한다. S가 T에 흡수합병되면 T만 남게 되어 T가 존속회사가 된다. 특히 S는 SPC로서 이 목적(T를 P의 자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설립되어 목적달성 후 소멸이 예정되어 있다면 결국은 P-T의 구도가 된다.

그런데 2015년 상법개정안은 역삼각합병을 합병의 일종으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삼각주식교환만을 규정하였다. 삼각주식교환 후에 역합병을 하는 것은 자율에 맡긴 것이다. 따라서 개정상법에서 역삼각합병이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즉, 하나의 절차로서 역삼각합병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상법은 제1단계로서 삼각주식교환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역합병에 관하여는 제2단계로서 합병계획서의 승인, 주주총회 등 기존의 합병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S의 주주는 P이고 T의 주주는 S인데, S의 유일한 주주는 P이므로 합병계획서의 승인, 주주총회 등이 실제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로서 역삼각합병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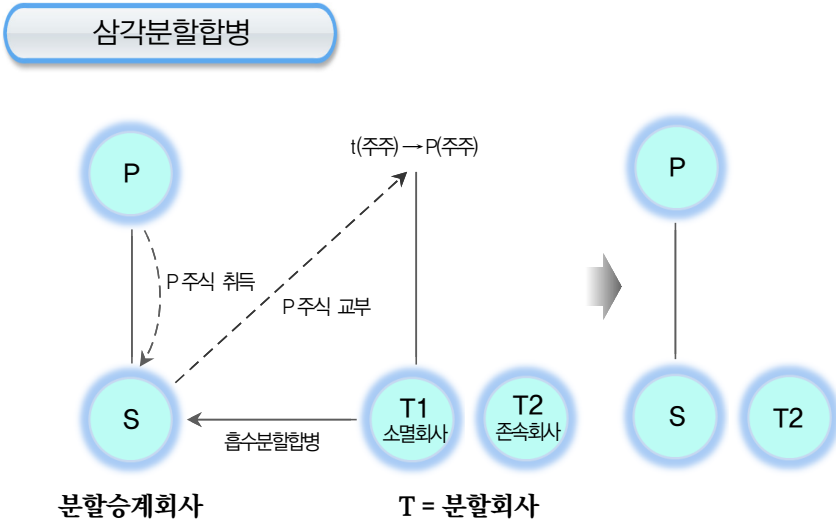
#### 역삼각합병



## 2) 삼각분할합병

삼각분할합병은 자회사(분할승계회사: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분할회사로부터 분리되는 일부 재산을 승계하여 규모를 확장하게 되는 회사) S가 흡수분할합병(분할합병 중 분할회사의 분리된 재산이 상대방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를 가리킴)되는 회사 T(분할된 다음에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그 자회사 S의 모회사 P의 주식을 대상회사 T의 주주 t에게 교부하는 방식의 흡수합병을 말한다. 이때 자회사 S는 분할승계회사로서 계속 살아남고 대상회사는 S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다.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제530조의 6 제4항). 이때 취득한 모회사주식이 남아 있는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였다(제530조의 6 제5항).



회사의 M&A란 회사의 인수·매수(Acquisitions)와 합병(Mergers)을 말한다.

### 1) M&A의 뜻

요즘 흔히 논의되고 있는 회사의 M&A란 회사의 인수·매수(Acquisitions)와 합병(Mergers)을 말한다. 보통 M&A라고 할 때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직·간접으로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Acquisitions란 대상회사의 자산취득, 주식매수, 위임장 쟁취 등을 통하여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Mergers란 둘 이상의 회사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M&A는 하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행위가 복합되어 일어난다. 최근에는 M&A가 기업인수와 합병뿐만 아니라, 금융적 관련을 맺는 합작관계 또는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시켜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 2) M&A의 형태

M&A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M&A 대상회사의 대응이 우호적인가 적대적인가에 따라서 구분하는 적대적 M&A와 우호적 M&A이다.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동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호적 M&A는 M&A를 당하는 회사가 오히려 M&A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기업회생을 위하여 합병을 한 예가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적대적 M&A란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경영진이나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침탈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의 초점이 된다.

### 3) M&A의 순기능과 역기능

M&A의 순기능으로는 ① 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하여 무능한 경영진을 축

출하고 보다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경영진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영 효율이 높아진다. ②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③ 국가경제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M&A의 역기능으로서는, ① M&A 대상기업은 경영진의 취약성 여부보다는 자본금이 적고 주식분산이 잘 되어있다는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정이다. ②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하게 되고,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는 회사는 회사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경영진은 회사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계속 지출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③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매수회사는 매수자금 조달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불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경쟁력이 약화된다.

• M&A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역기능
무능한 경영진 축출	경영과 무관한 요인에 의한 결정
소액주주보호	단기성과에 의존
산업구조조정 → 국제경쟁력 향상	부채증가에 따른 불황야기



적대적 M&A의 경우 회사공격자들(corporate raiders)이 주로 사용하는 M&A의 전략을 알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다.

M&A의 수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모두 열거할 수는 없으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자료 분석

공격자들은 주주명부와 관계회사(또는 계열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통하여 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주주의 신상과 성향, 경쟁사와의 관계, 관계(계열)회사간의 공동대응의 가능성, 종업원의 호응도, 여론의 추이, 정부의 정책방향, 기관투자자의 성향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동시에 대주주의 불법사레나 회사비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를 근거로 공금횡령이나 경영진의 능력부재 등을 폭로하여 현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야기시킨다.

### 2) 위임장쟁취에 의한 방법

위임장쟁취(proxy contest)란 회사공격자들(corporate raiders)이 제시한 매수제안을 거부하는 대상회사의 임원·이사 등 현 경영진을 퇴임시키고 매수제안을 동의하는 자들로 대체시키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주주들을 설득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장(proxy)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대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회사공격자들은 주로 현경영진의 경영방침에 불만을 가진 불만주주들(dissent shareholders)이다. 이들의 집단을 불만집단(dissent group)이라 하고, 이 불만집단이 대상회사의 주주들을 설득하여 위임장을 받아 내는 것을 위임장권유(proxy solicitation)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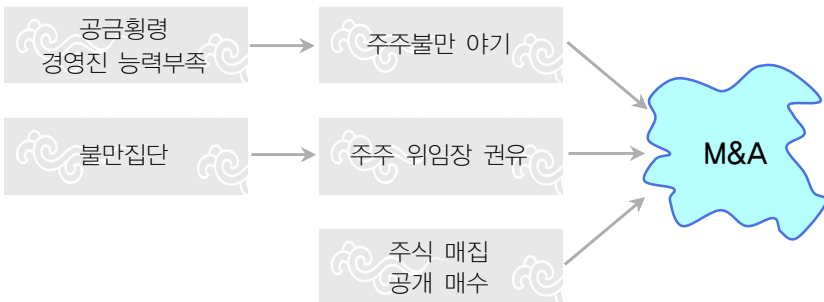
위임장대결은 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주주총회에서 이사지명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 회사매수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상법도 제368조 제3항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강행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다만 자본시장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있다.

### 3) 직접 주식을 확보하는 방법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수하는 방법에 의한 적대적 회사매수가 있다. 이것은 ① 증권거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주식매집에 의한 방법과, ② 장외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수량·가격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매입할 것을 공표하거나 대상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것을 신문지상 등에 광고하여 취득하는 공개매수(hostile tender offer, hostile take-over bid)에 의한 방법이 있다. 2006년 칼아이칸이 KT&G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개매수이다. 그리고 ③ 차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상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차후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취득에 의한 방법이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를 취득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모(私募: non-public offering)에 의한 전환사채(CB)가 이용된다.

### 4)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M&A 방어

반대로 사모전환사채(私募轉換社債)는 M&A 대응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M&A 대상회사가 전환사채를 기존의 대주주에게 사사로 발행하면 대주주는 즉각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회사공격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주식을 확보한다. 이 방법은 1996년 M&A의 위기에 몰린 한화종금이 사용한 방어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의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이 적법한가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M&A 전략은 무궁무진하다. 그 중 지금까지 알려진, 그러나 반드시 정당하지는 않은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있다.

### 1)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일정비율을 취득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기법

주식을 일정비율을 취득한 후 정보를 노출시키되, 정보유통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로 정부기관이나 언론을 이용한다. 이때 대부분 주가가 급등하게 되어 대상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의 압박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공격자들(corporate raiders)은 경영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주식의 매집(買集)을 계속하면 경영권 침탈의 위기를 느낀 대상회사의 대주주는 주식보유고를 높이기 위하여 오히려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주식확보에 열을 올리게 된다. 이때 경영진과 협상하거나 주가차익을 실현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한다.

### 2) Green Mail을 위주로 투자이익을 획득하는 기법

Green mail이란 본래 공갈에 의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M&A와 관련하여서는 green mail이란 회사매수를 시도하는 자가 M&A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재차 M&A를 시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동안 확보한 주식을 대상회사에게 시장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는 green mail에 두고 있으나 언론과 증권시장을 통한 흑색정보의 유출 등 다수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회사인수방어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급기야는 주식매매가격협상과정에서 경영진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회사매수자는 절대로 대상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만나지 않으며, 얼굴없는 서신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도 그 특징이다.

### 3) 백기사를 이용하여 회사와 매매차익을 획득하는 기법

白騎士(white knight: 우호적 회사인수자)란 M&A대상회사로부터 지원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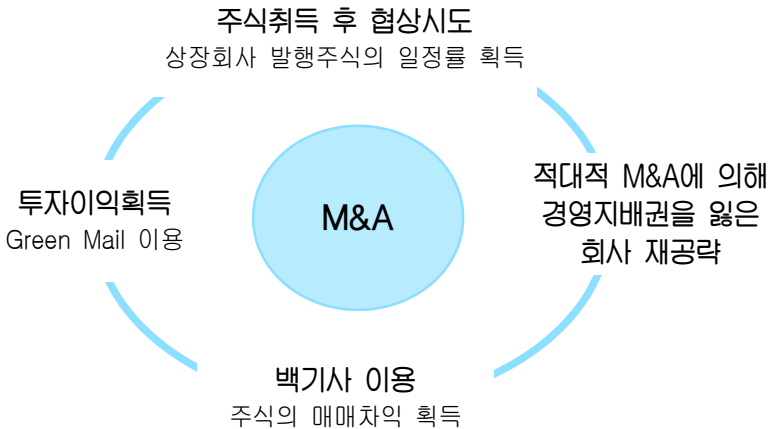
탁받고 대상회사 편에서 우호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M&A의 위협에 시달리는 회사가 적대적 M&A에 대항하고자 하나 자금력의 열세로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백기사를 물색하여 회사공격자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주식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제 공격자들은 백기사에게 바로 공개매수를 제의하여 회사매수를 성공시키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으로 주가차익을 실현하고 물러선다.

이 방법은 기존의 회사소유주가 회사공격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때문에 제3자에게 회사를 처분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을 활용하는 수법이다.

#### 4) 적대적 M&A에 의해 경영지배권을 빼앗긴 회사를 재공략하는 기법

회사공격자들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주식이 폭등한다. 그러나 일단 M&A게임이 끝난 후에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향회귀한다. 이 시점에 맞춰 제3자가 경영지배권을 재공략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다.

#### • M&A의 특수기법



회사는 정관규정과 이사회 결의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 부여하되,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부주주(공격자)에 대해서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불허한다든지 다른 주주와 행사 내용을 달리(금전, 자산 등으로 상환, 무상상환)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의의

2009년 상법개정안은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상법 개정안은 포이즌 필 제도를 신주인수선택권제도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가진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1인 또는 여럿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허용하지 않거나,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거나, ③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④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요건

회사는 정관에 위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부여하려면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 행사 가액, 행사기간, 행사조건,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 대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제도

- 황금낙하산** = 피인수회사의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보너스 등을 주도록 해 인수비용을 높임
- 초다수결의제** =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보다 강화함
- 포이즌** = 적대적 인수자 이외의 주주에게 신주를 싼 값에 발행하여 기존주주의 지분을 높여 줌
- 차등의결권** = 주식의 종류별로 의결권의 수에 차등을 두는 제도. 현행 상법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 1의결권만 부여
- 황금주** = 특정 사항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이 부여된 주식
- 집중투표 배제** = 주주가 의결권을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정관에 두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강화

[한국경제신문 시론]

## 장기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 줘야

사모펀드제도 개편으로 경영권 방어 더 '취약'  
 '테뉴어 보팅' 같은 차등의결권제도 전면 도입  
 단타 투기꾼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벤처 창업 기업에는 다행한 일이지만 대다수 일반 기업에는 그림의 떡이어서 아쉬움과 불만이 크다. 전면적 차등의결권 제도를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 이유는 이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기업 지분을 매입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헤지펀드의 경영 간섭은 과거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초대형 펀드의 공격에 전전긍긍했던 삼성이나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코스닥 상장 기업조차 국내 펀드들의 경영 간섭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게 생겼다.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차등의결권 제도나 포이즌필 제도 같은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도 없는 한국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 증시는 주식 회전율(turnover ratio)이 매우 높다. 중국 선전거래소와 상하이거래소, 대만 타이베이거래소, 터키 이스탄불거래소 등과 함께 세계 5위 정도로 주식 회전율이 높다. 주식 회전율은 일정 기간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 회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152.10%, 코스닥시장은 284.87%였다. 상반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1주당 1.5차례 이상, 코스닥에서는 2.8차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략 4개월,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략 2.1개월이면 주주가 바뀐다는 뜻이다. 어떤 회사는 3741.06%, 즉 6개월간 37번, 1년이면 74번 주주가 바뀌었다. 단타매매가 극심했다는 뜻

이다. 내년 3월에 열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는 올 12월 말에 정해지는데 2개월 이상이 지난 내년 3월 정기총회일에는 이미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가 많다. 주주가 아닌 사람이 굳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주총회 참석률도 저조하고 총회 성립도, 안건 가결도 어렵다. 그래서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라는 제도가 한국에서만 시행됐는데 이마저 지난해 12월 말로 폐지됐다.

이미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로 대우하고 잠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타매매자도 장기투자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현행 의결권제도는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단타매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금방 떠날 사람, 이미 떠난 이들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단기간에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주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이것저것 분별없는 요구를 하는 것을 방기(放棄)하는 것은 법률의 실패일 뿐이다. 진정한 주주는 주식을 함부로 내다 팔 수 없고, 수십 년간 회사와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장기소유 주주들일 것이다. 회사법은 의결권 행사 문제와 관련, 이들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가치의 장기적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가 몰려들고, 회사도 장기적 성과에 역점을 뒀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경영이 가능해진다. 투기 주주들의 요구에 굴복해 배당 잔치나 자산 처분 등에 매몰하다가는 위기 상황에 투입해야 할 실탄을 탕진하고, 회사의 수명은 저절로 단축될 수밖에 없다. 워런 버핏의 Berkshire,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창사 이후 단 한 번도 배당해 본 일이 없다.

1주 1의결권 원칙은 각 회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되, 반드시 지키라고 국가가 강요할 필요는 없는 원칙이다. 우선 프랑스처럼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2개의 의결권을 주는 이른바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제도부터 도입하자. 총회 성립이 수월해지고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제공하는 2중의 효과를 얻는다. (2018.10.18 18:57.)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LBO(Leveraged Buy-Out)란 차입매수방식의 기업인수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 1) LBO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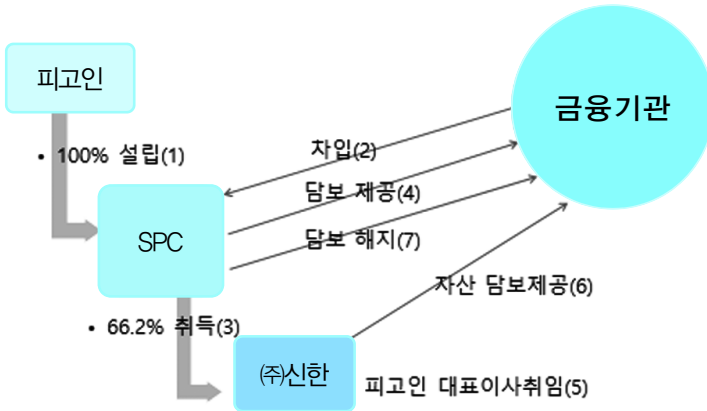
LBO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인수”를 말한다.

### 2) LBO의 효용

LBO는 시너지 확보나 신규시장의 진출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며, 대부분 대상회사의 주주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됨으로써 법인세가 절감되고, 경영진의 대리비용의 감소효과(지분증가로 경영성과증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나 사모펀드가 주도한다.

### 3) LBO의 진행과정

먼저 피고인이 (1)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2)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회사(피인수회사)인 (주)신한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았다. (3) 피고인은 그 돈으로 (주)신한의 주식 66.2%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그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주)신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6) (주)신한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신 (7) 자신이 금융기관에 제공했던 담보계약은 해지하였다. 결국은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이 없이도 인수대상회사인 (주)신한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자기자본 없이도 (주)신한을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LBO는 인수자가 대상회사(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서 배임죄가 문제된다. 그러나 인수자가 대상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배임죄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



#### 4) LBO와 배임죄

보통 인수회사의 인원이 대상회사의 이사가 되어 대상회사의 자산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대상회사’의 이사의 대상회사에 대한 임무위배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LBO 방식으로 기업인수를 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이른바 ‘신한사건’에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은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서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인수 당시 대상회사가 도산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인수 이후의 구조조정을 거쳐 회사가 정상화되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이해관계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상회사의 이사에 배임죄가 인정되었다. 왜냐하면 인수대상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는 인수자가 자신이 인수한 주식, 채권 등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피인수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담보채무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MBO란 회사의 현경영진 또는 현임직원이 회사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는 것이다.

### 1) MBO의 의의

MBO(Management Buy-Out)란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현경영진 또는 현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자회사(계열회사) 또는 일부 사업부를,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외부투자자와 함께 주식의 매수, 영업양도, 회사분할,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경영자 매수 또는 경영자 인수라고도 한다.

MBO도 M&A의 일종인데, 대부분 기업인수가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MBO의 경우에는 회사 내의 경영진과 임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2) MBO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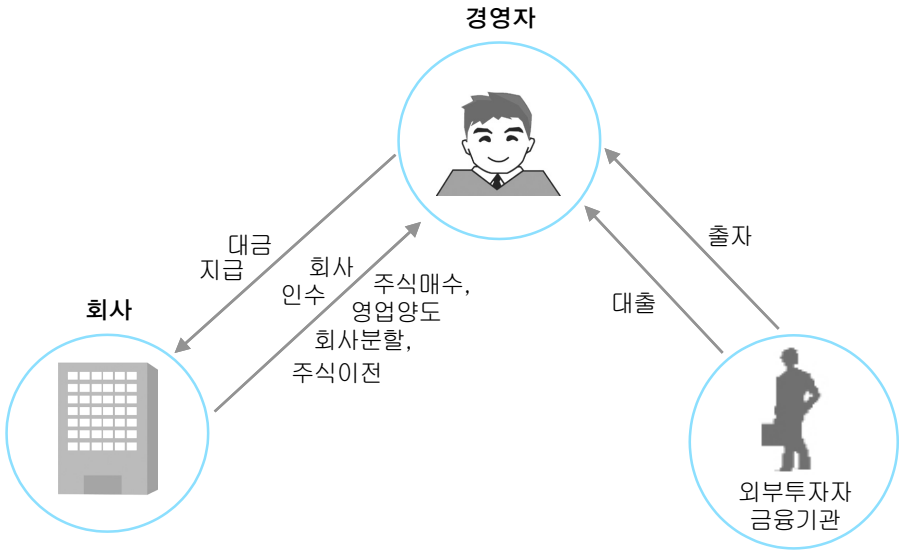
MBO의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자인 경영자나 종업원 등이 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계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저항없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MBO를 통하여 기업비밀의 유지가 가능하며 기존의 거래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직원 입장에서도 명예퇴직이나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산형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보통 매각사업부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되며 퇴직금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MBO는 고용안정과 기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각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MBO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 3) MBO에 적당한 사업

MBO에 적당한 사업으로는 cash-flow가 안정된 사업, 재벌계 기업으로부터 독립 등 개선의 여지가 큰 사업, 인허가·시장점유율 등의 이유로 진입장벽

이 큰 사업 등이다. 이에 비하여 MBO에 부적당한 사업으로는 cash-flow가 좋지 아니한 신규사업 또는 안정적이지 못한 사업, 연구개발비 내지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 MBO의 의의



1개의 회사는 2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다

### 1) 회사분할의 의미

회사분할(division)이라 함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의무 및 사원(주주)을 승계하며,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2) 회사분할의 유형

(i) 분할은 분할당사회사가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따라서 단순분할(단수)과 분할합병(복수)으로 나눈다. 단순분할은 분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고, 분할합병은 분할된 회사가 다시 타회사와 합병하는 것이다.

(ii) 분할회사가 분할 후 소멸하느냐 여부에 따라 완전분할(소멸)과 불완전분할(존속)로 나눈다.

(iii)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로 수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인적 분할(수용)과 물적 분할(불수용)로 나눌 수 있다. 상법은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물적 분할도 인정하고 있다(제530조의 12).

(iv) 분할합병에는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이 있다.

상법은 단순분할(상법은 이를 단순히 ‘분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과 분할합병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자의 혼합형태도 인정하고 있다(제530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단순분할의 경우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을 모두 인정하고(제530조의 5 제1항·제2항),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제530조의 6 제2항).

### 3) 회사분할의 제한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합병회사·합자회사·유한회

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 2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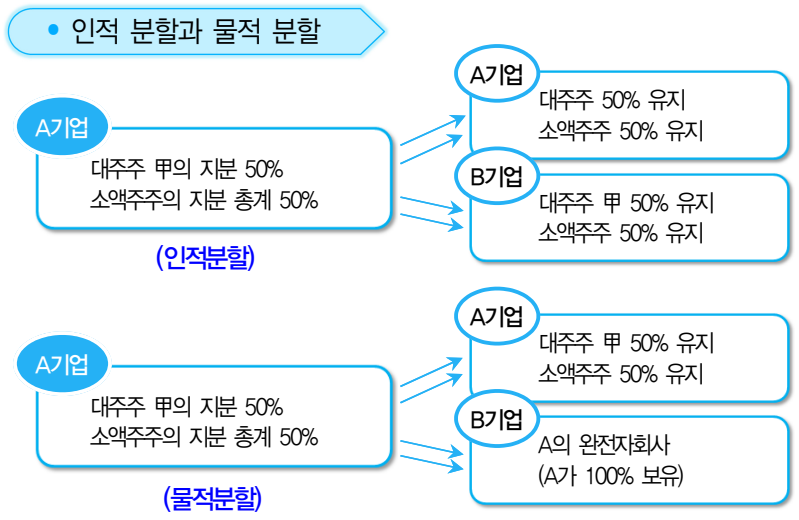
#### 4) 회사분할의 절차

- ①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상법 제530조의 5, 제530조의 6).
- ② 분할계획서 등의 공시(상법 제530조의 7)
- ③ 주주총회의 분할결의(상법 제530조의 3)
- ④ 회사채권자 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 9)
- ⑤ 기타 절차-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 준용(상법 제530조의 4)  
분할등기(상법 제530조의 11)

#### 5) 회사분할의 효과

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소멸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의 2). 단순분할, 신설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설립되고, 불완전분할의 경우의 존속회사와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정관변경이 생긴다. 그 밖에 주주가 분할회사의 주주로 수용되고, 각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회사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제530조의 9 제2항)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0.8.19. 2008다92336).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가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고,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강제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 1)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의 의의

상법은 소수주식을 가진 주주를 축출하는 이른바 소수주식 전부취득(squeeze out)제도를 두고 있다(상법 제360조의 24부터 제360조의 26까지).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일부 극소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있는 경우 대주주와 소수주주와는 회사법이 상정하는 정상적인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회사로서도 주주총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소수주주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소수주주로서도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비용 등 소수주주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의 절감과 기동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주주가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100% 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소수주주에게도 소수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출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1) 청구권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24 제1항). 지배주주가 회사인 경우 그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 24 제2항).

## (2) 청구의 절차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 24 제3항). 지배주주가 요건을 갖추어 매도청구를 한 경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 24 제6항).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상법 제360조의 24 제7항),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24 제8항). 법원이 이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 24 제9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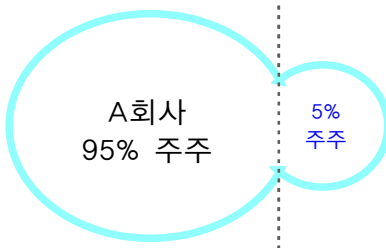
## 3)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 25 제1항).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 25 제2항).

## 4) 주식의 이전시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또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60조의 26 제1항). 이때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60조의 26 제2항).

### 소수주주 축출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특정 기관에 양도하고 그 기관이 당해자산의 신용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산보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 1) 자산유동화의 메카니즘

거래처와의 금융 및 상품거래 등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보유한 자산보유자(originator)는 보유자산(portfolio) 중 일부를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 기초자산)으로 조합(pooling)하고, 유동화자산을 증권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에 완전매각(true sale)한다.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인수기관(투자신탁,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영·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 2) 유동화증권의 발행

유동화증권이란 잠겨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현금화 상태의 자산, 예를 들면 매출채권, 대출채권, 부동산, 부동산 저당채권 등을 근거자산으로 현금화(유동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y, ABS)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 MBS)가 있다.

### 3) ABS와 MBS

ABS란 자산을 기초자산 및 담보로 하여 비현금화된 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인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할부채권, 리스채권과 같이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모아서 그것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되는 증권이다. 증권의 만기는 2~3년으로 비교적 단기이다.

MBS는 예컨대 주택수요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때 금융기관은 저당채권을 갖는데 이를 주택저당 담보부채권(mortgage)이라 한다. 이 mortgage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새로운 대출자원을 마련하고자 할 때 발행되는 증권을 MBS라고 한다. 증권의 만기는 3~20년으로 비교적 장기이다.

#### 4)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의 잇점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발행자로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및 투자자의 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한편,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매각한 유동화자산은 고유자산에서 분리(off the balance)되므로 총자산수익률(ROA) 및 자산회전율, 자기자본금비율 등 재무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운용과 조달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보유자산(portfolio)의 구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로서도 신용도가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라 함)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활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 1) 적용범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라 함)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국내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기활법 제4조). 과잉공급이라 함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를 말한다(기활법 제2조 제4호).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기활법 제2조 제2호).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정후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기업 및 파산신청 기업 등에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기활법 제4조).

### 2)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사업을 재편하고자 하는 기업이 동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활법 제9조 제1항). 사업재편계획에는 사업재편의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해당 기업이 속한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계획기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기활법 제9조 제2항).

### 3)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 (1) 소규모 분할 또는 합병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함)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기활법 제15조).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도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기활법 제16조 제2항).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도 마찬가지이다(기활법 제17조).

#### (2) 합병등 절차

승인기업이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영업 양도·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함)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한은 주주총회일 7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기활법 제18조 제1항).

#### (3) 채권자보호절차

승인기업의 경우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그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단축된다(기활법 제19조 제1항). 나아가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기활법 제19조 제2항).

####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승인기업의 합병등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10일내로 단축된다(기활법 제20조 제1항). 한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압박 완화를 위해 매수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주권상장법인인 3개월)내로 연장하고 있다(기활법 제20조 제2항).

### 사업재편에 적용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칙

- ▶ 소규모 분할 또는 합병요건 완화
  -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 ▶ 합병등 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총회 2주전에서 1주전으로 단축
- ▶ 채권자보호절차 간소화
  - 채권자의 이의제출 공고 기간을 1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담 완화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에서 10일 내로 단축되고, 매수하여야 하는 기간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주권상장법인인 3개월)내로 연장



## 1. 워크아웃

워크아웃(Workout)이란 ‘기업은 주력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하는 등 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대상기업의 비정상적인 부채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차입금의 상환능력을 증가시키려는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 2. 기업가치 평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의 평가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청산가치법,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기업공개시에 적용되는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순자산가치보다는 당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더 중요시하며, 이러한 현금흐름할인법은 이제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제 8 부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부도라고 한다.

어음이나 수표는 그것과 교환하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여 발행하는 것인데, 지급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부도라고 한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나면 지급은행에서는 '부도선언'을 하고 소지인에게 어음·수표를 돌려준다. 부도를 냈다고 하면 금방 그 회사가 망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부도가 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행인에게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으로 이어지지만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도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 1) 부도의 원인

부도의 원인으로는 발행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지급할 돈이 부족한 예금부족, 발행인이 그 전에 부도를 낸적이 있어서 지급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를 해약당한 경우인 무거래,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서의 경우, 위조·변조어음, 인감·서명의 상위·인감누락 등 형식불비, 제시기간경과 또는 미도래, 지급지 상위,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발행한도초과 등이 있다.

부도어음의 발생은 경기가 나빠지면 증가하고 호전되면 감소한다. 부도는 단기적으로는 시중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긴축정책 또는 통화환수정책은 부도율의 증가원인이 된다.

### 2) 부도의 효과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도를 내면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져서 그곳의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모든 은행이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당좌거래와 대출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지급은행과 제시은행이 부도신고서를 제출하면 1차부도에 해당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부도처리된다. 그러나 다음 영업일에 결

제하는 경우에는 어음교환소는 그것을 부도보고에 게재하지만, 은행거래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전 은행에 부도의 발생을 통지하고 그 후의 거래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촉구하게 된다.

거래정지처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규제가 가해지므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도어음의 회수를 위한 조치로서는 우선 부도이유와 사고신고담보금의 예치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한편, 배서양도받은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부도사실의 통지가 필요하며, 지급책임은 지는 자의 경영상태와 자산을 조사하여 보증인이나 담보의 확보에 주력하고 가압류·어음금청구소송·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 • 회사의 부도

### 원 인

- 예금부족
- 사고신고서(분실·도난 등)
- 형식불비
- 지급지 상위
- 발행한도 초과
- 무거래
- 위조·변조어음
-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
- 지급제한

### 부도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부도가 반드시 도산을 의미하지는 않음)

### 효과

거래정지일부터 2년간 당좌거래·대출금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 한다

### 1)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에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 2) 정리해고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것을 이른바 정리해고라고 한다. 종래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법문이 불분명하여 특히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아서 판례에 의존하여 오던 것을 1998.2.20.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의하여 명확히 하였다.

### 3) 정리해고의 요건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은 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② 해고회피노력의무, ③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및 ④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과의 협의를 들고, 네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라고 한다.

여기서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원료 및 동력부족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밖에 판례는 경영합리화조치·직제변경·개개 부서의 조업중단 등이 회사 전체에 파급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해고회피노력의무로서 신입사원의 모집중지, 시간외 근로의 중단, 단축시간근로, 희망퇴직 등으로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③ 해고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연

령·가족·근속연한·수입 및 재산·건강·유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기구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이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사전 협의의무는 피해고자의 올바른 선발 등과 관련하여 해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⑤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⑥ 해고의 사유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회사측 사정으로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놓이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 그 부서 근로자를 다른 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고, 근로자측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전근명령거부·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재해 유발 등의 근무태도 불량행위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하는 형사범법행위 및 경력위조 등을 해당사유로 각각 들고 있다.

## • 정리해고의 요건



### 정리해고의 요건

#### 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원료의 부족,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경영합리화조치 등

#### ② 해고회피노력의무

(신입사원 모집중지·근로시간의 단축 등)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한 해고는 부당

#### ③ 합리적·공평한 기준의 제시

근로자의 연령, 가족, 근속연한, 수입 및 재산, 건강, 유책성 등

→이 경우 남녀의 성차별을 금지한다(근기법 제24조 제2항)

#### ④ 노동조합·근로자대표기구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기구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판단의 정당성 확보 수단

도산이란 기업의 수익성의 저하, 만기부채에 대한 지급불능, 법적인 파산과 청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1) 도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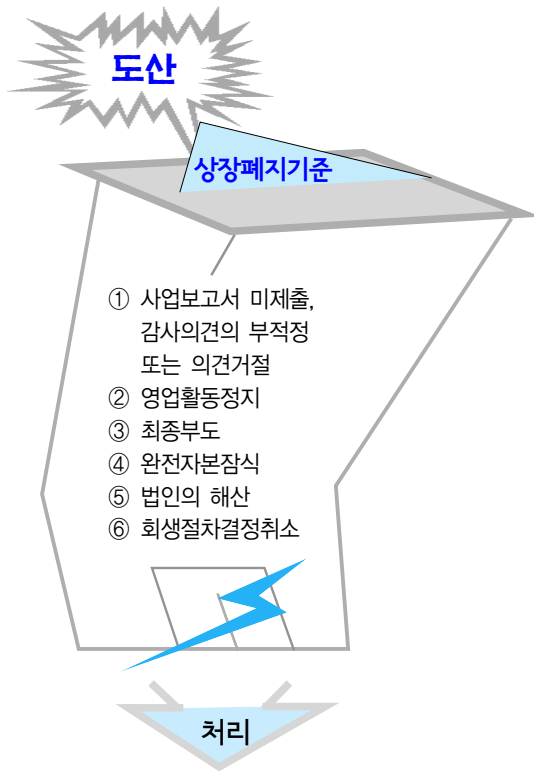
도산이란 기업의 수익성 저하, 만기부채에 대한 지급불능, 법적인 파산 또는 정리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도산은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비효율적인 기업을 도태시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도 있다.

통상 한국거래소에서 제정한 유가증권시장규정 제80조의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을 도산의 정의로 삼는다. 이에 의하면 ①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의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 ② 영업활동정지, ③ 최종부도, ④ 완전자본금잠식, ⑤ 법인의 해산, ⑥ 회생절차결정 취소 등이 해당된다.

### 2) 도산의 처리

도산기업을 처리하는 제도로는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로서 기업의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담보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의 순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가 있고, ② 상법의 청산절차로서 해산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가 있으며, ③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로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파산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는 제도, ④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로서 부실징후기업 등의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 등이 있다.

도산기업은 도산처리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갱생 또는 청산에 이르게 된다.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은 갱생을 위한 것이고 청산과 파산절차는 청산을 위한 것이다.



- 파 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청 산**
  - ▶ 상법
- 기업회생**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워크아웃**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고,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다. 해산은 직접 회사의 소멸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법인격소멸의 원인이 될 뿐이므로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이는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이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합병의 경우와 파산의 경우에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가 필요없지만 다른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 1) 주식회사의 해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상법 제517조)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518조), ⑥ 일정기간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의 해산의제(상법 제520조의 2) 등이 있다. 이 밖에도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을 허가함으로써 회사가 해산하고(동법 제216조·제275조),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도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등과 같은 별도의 해산사유가 있다(동법 제137조 제1항).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해산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1 조). 또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법정기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제228조).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

## 2) 주식회사의 청산

청산이란 회사가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상법 제328조 제2항·제193조 제1항).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이므로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법정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청산인은 주된 청산사무로서 ① 해산 당시의 미결 사무를 정리하고,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 재산의 분배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부수적 청산사무로서 ① 법원에 대한 신고(상법 제532조), ② 회사 재산의 조사보고(상법 제533조), ③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542조 제2항·제362조·제366조), ④ 재무제표 등의 제출·비치·공시(상법 제534조·제542조 제2항·제448조·제449조) 등을 하여야 한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상법 제540조), 일정기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 제1항·제264조).

### • 해산과 청산

#### 해 산

#####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

-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 ▶ 합병
- ▶ 파산
-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 일정기간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의 해산의제

#### 청 산

##### 법정 청산절차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

##### • 주된 청산사무 •

- ▶ 해산 당시 미결사무 정리
- ▶ 채권의 추심, 채무변제
- ▶ 재산의 환가처분
- ▶ 잔여재산의 분배

##### • 부수적 청산사무 •

- ▶ 법원에 신고
- ▶ 회사재산의 조사·보고
- ▶ 주주총회의 소집
- ▶ 재무제표 등의 제출·비치·공시

통합도산법의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통합도산법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인 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화외법·회사정리법 등 도산 관련법을 통합한 것이다. 이 법률은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회사정리법·화외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다.

### 1) 회생절차

과거에는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 파산하거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갱생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하에서는 회생절차만 밟으면 된다. 화외제도는 폐지되었다.

### 2) 경영권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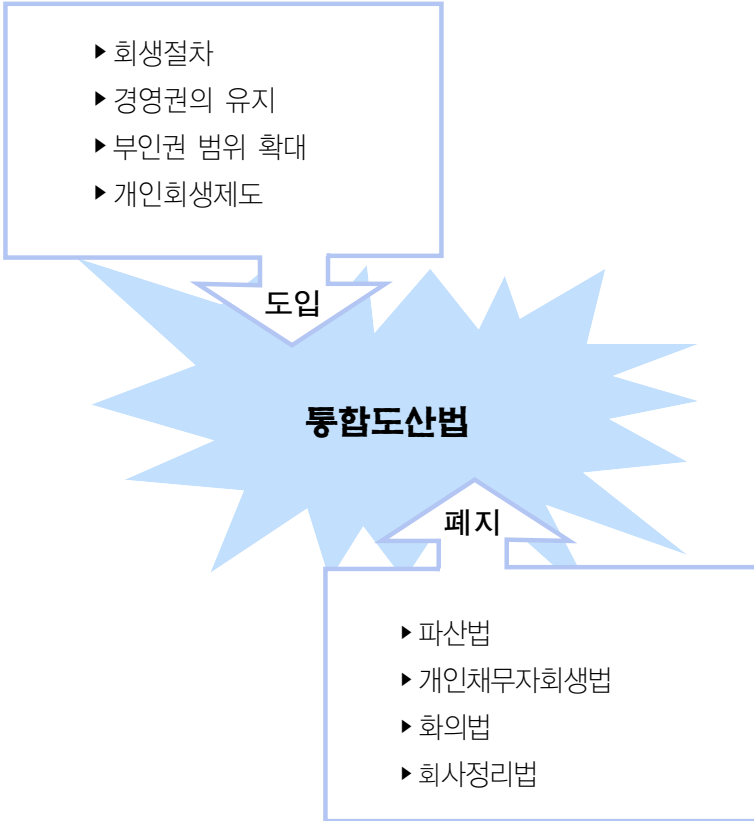
통합도산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하여진 조치이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부인권의 범위 확대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否認權)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 4) 개인회생제도 도입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채무를 천천히 더 많이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업회생제도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회생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생방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 1) 기업회생제도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폐지한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한 법률로서 통합도산법이라 부른다. 이 법률은 과거 부실경영주에 의하여 악용되어 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DIP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미국식 DIP제도(debtor-in-possession)란 채무기업의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거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가 부실책임을 추궁당하여 궁박한 처지로 몰리는 폐단을 차단하였다.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무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그 회생계획을 도출하고 채무를 대폭 탕감하여 최장 10년 내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회생이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채무의 변제, 이자의 지급 등을 유예하여 이를 회사의 회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자재 구입자금의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특별한 장애가 없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에는 발행한 수표가 결제되지 않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 2) 기업회생 대상과 범위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상태인 중소기업이다. 즉, 회사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이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3) 회생절차

① 회생절차개시신청후 7일 내 보전처분, 2주 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조치를 취하고(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내에 대표자가 판사를 면담하고 판사가 회사 방문함), ② 신청후 1개월 내 개시결정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진행, ③ 개시결정후 2개월 이내 회생채권목록 등 제출, ④ 채권자목록 제출후 1개월 내 파산채권 시부인표 제출, ⑤ 채권신고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⑥ 신청후 약 4개월 채권자 등 제1차 관계인 집회, ⑦ 제1차 관계인집회 후 4월개 내 회생계획안 제출, ⑧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 관계인집회에서 의결(또는 서면결의)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후 법원의 인가결정(통상 제2,3차 동시진행), ⑨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영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회사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의 우선순위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 ④ 3개월 이상 밀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 ⑦ 주주의 잔여재산분배 순이다.

주식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인은 회사에 대하여 직장예금이라든지 신원보증금의 납입 등에 의한 반환청구권·급료채권·퇴직수당채권 등의 고용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채권을 갖는다. 회사는 이러한 채권을 위하여 임의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므로 사용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회사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에 의하여 사용인의 채권이 희생될 염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에서는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회사의 총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상법 제 468조 본문). 그러나 이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상법 제468조 단서).

한편 근로기본법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그러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동조 제1항 제10호),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동조 제1항 제11호)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여(채회 제180조)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결국 채권의 우선순위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3개월 이상 밀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 ⑦ 주주의 잔여재산분배 순이다.

•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의 우선순위

-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해 담보된 채권
- ④ 3개월 이상 밀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⑤ 조세·공과금
- ⑥ 기타 채권
- ⑦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휴면회사란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고 있거나 이미 도산된 회사로서 장기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로서 자동으로 해산처리 된다.

휴면회사란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고 있거나 이미 도산된 회사로서 장기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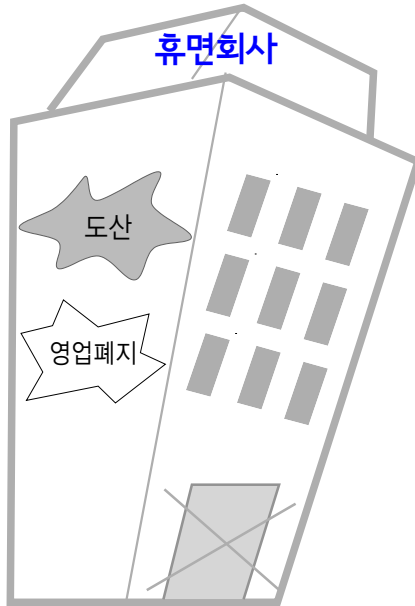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장기간 변경등기도 없이 방치된 휴면회사는 ① 동종영업을 하는 타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상법 제22조), ② 실제와 등기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등기부관리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③ 이른바 회사매매의 대상으로 악용되어 경제범죄를 유발하는 등 많은 불편과 부조리를 야기한다. 상법은 주식회사제도의 남용대책의 일환으로서 휴면회사 정리제도를 두고 있다(상법 제520조의 2).

### 1)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법원행정처장은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休眠會社)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0조의 2 제2항). 그리고 이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본문). 해산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 제1항). 그러나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는 해산이 의제되지 아니한다(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단서).

### 2) 휴면회사의 청산의제

휴면회사는 기업유지의 견지에서 그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상법 제520조의 2 제3항),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등기부에서 삭제하게 된다(동조 제4항).



▶ **해산의제**

최후의 등기후 5년 경과 → 공고  
2월이내에 신고 → 해산등기(해산의제)

▶ **청산의제**

해산의제일로부터 3년 경과  
등기부 삭제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발기인이 직접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밟으려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하의 사례는 자본금 5천만원, 이사 3인 감사 1인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2009년 상법의 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하였으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설립이 발기설립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가장 먼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미 본서 본문에서 대부분 설명을 하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약술한다.

#### 가. 발기인

발기인은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며 발기인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 발기인은 법인이라도 무관하다.

#### 나. 주주 및 각 주주의 주식 비율

회사의 자본금을 투자한 자와 각 투자 비율을 정한다. 주주는 발기인 1인 이어도 무방하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설립시에는 과점주주 부분은 우려할만한 사항이 없다.

#### 다. 임원

이사, 대표이사(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감사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수 인원은 발기인 겸 이사 1인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발기인 이외의 임원이 1인 이상 있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므로 임원은 2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 라. 상호

상호는 회사의 명칭이며,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그 위치는 상호의 앞이나 뒤 어디라도 상관없다. 상호는 동일한 시,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회사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 마. 본점소재지

회사의 주소지를 말한다.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면 주택이라도 상관 없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본점의 사용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하다(예: 임대차계약서 등).

#### 바. 자본금

자본금의 규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운영 초기에 필요한 정도이면 적합하다.

#### 사. 1주의 금액

100원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보통은 5,0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액면금이 없다.

#### 아. 공고방법

주식회사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시사에 관한 일간지로 정하여야 한다.

#### 자. 목적

사업목적은 말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 골프용품 제조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목적을 광범위하게 정하여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전문성이 없어 보일 우려가 있고 사업목적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등록세 증과세를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다.

(2) 위의 사항이 결정되면 발기인(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발기인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등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정관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정관은 소규모 회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예시로서 상장회사의 표준정관과는 다르다).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각 장 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정관상 예시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다름닷컴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Darum.com Co., Ltd.라 한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도소매·교육
2. 소프트웨어 기술용역·컨설팅
3. 소프트웨어 수출입
4. 부동산 임대
5. 컴퓨터조립 및 완성품 매매
6.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4 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壹주권, 拾주권, 百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 9 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식양도의 제한) 주주가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은 소규모 회사에 두는 규정)

고, 상장회사에서는 둘 수 없다.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기재할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시 이 규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제 12 조 (명의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 14 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수료)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회사의 영업연도와 그 결산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업연도는 1년으로 하고, 결산일은 12월 31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결산일을 12월 31일로 하는 것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가 폭주될 시기이므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6월 내지 7월을 결산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 3 장 주주총회

제 18 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 19 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 20 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써 한다.

제 2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2 조 (서면결의의 허용)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 24 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사는 필요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다.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의 이사라도 무방하다. 그 외의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다. 감사 대신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제 25 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써 한다.

제 26 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7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 28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소집기간은 7일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 결의)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31 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대표이사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둔다.

② 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

제 33 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 35 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5 장 계 산

제 36 조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37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자본변동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제 39 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부 칙

제 40 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다름닷컴**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다.

2010년 3월 일

주식회사 **다름닷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4- 17

발 기 인 고창현 (주민등록번호 ) 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52 한강빌라 601호

발 기 인 정지원 (주민등록번호 ) 印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 520번지

발 기 인 장일용 (주민등록번호 ) 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지동 949 삼성 Apt 901-208호

(4)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주식발행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발기인이 주식발행동의서를 작성한다.

## 주식발행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0,000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5,000원

3.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할 은행

국민은행 당산역지점

계좌번호 489424-09-488104

예금주 고창현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10. 3. .

### 주식회사 다름닷컴

발기인 고창현 (인)

발기인 정지원 (인)

발기인 장일용 (인)

(5)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한다. 이를 위하여 주식인수증을 작성한다. 인수증은 발기인 별로 각각 작성한다.

## 주식인수증

상 호 : 주식회사 다름닷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5,600주

위 총 액 : 금28,000,000원

1 주 의 금 액 : 금5,000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국민은행 당산역지점  
계좌번호 489424-09-488104  
예금주 고창현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010. 3. .

발 기 인 고창현 (인)

주식회사 다름닷컴 발기인 대표 귀하

(6)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한 후 인수한 주식대금을 발기인대표(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받아 등기 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주식이 전액 인수되면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주 주 명 부

주 주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의 수
고창현	111111-1111111	보통주식	5,600주
정지원	222222-2222222	보통주식	3,200주
장일용	333333-3333333	보통주식	1,200주

1주의 금액:5,000원

합      계: 10,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 3. .

주식회사 다름닷컴

대표이사 고 창 현 (인)

(8) 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들은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한다.



## 발기인총회 의사록

### 주식회사 다름닷컴

2010. 3. . 09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4-17 다영빌딩 2층 창립 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3명,        이의 인수주식 총수 10,000주  
출석발기인수 3명,    이의 인수주식 수  10,000주

발기인 대표 고창현은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발기인총회의 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발기인들이 기획한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은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제2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행한 결과 다음의 사람이 사내이사와 감사에 선임되다(다만,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사내이사	고창현	사내이사	정지원
사내이사	장일용	감 사	여선민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 제3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나 발기인이었던 이사와 감사는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아니었던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자 전원 이에 찬성하였고 선임된 조사보고자도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 조사보고자 감사 여 선 민

의장은 위 감사로 하여금 위 사항을 조사 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후에 속회를 선언하였다.

의장은 위 감사로 부터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규 및 정관에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0시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10. 3. .

### 주식회사 다름닷컴

의장 발기인 고창현 (인)

발기인 정지원 (인)

발기인 장일용 (인)

# 조 사 보 고 서

## 주식회사 다름닷컴

본인은 2010. 3. .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 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성되어 회사의 근본규약인 정관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 제반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 40,000주의 4분의 1 이상이므로 상법 제289조 제2항에서 정한 수권자본금의 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주식의 발행 및 배정방법 등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인정됨.

#### 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금5,000원)로서 발기인이 그 전액을 인수하여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인정됨(2010. 3. . 인수완료).

####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주에 대한 주식금 50,000,000원은 2010. 3. .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 납입을 맡은 국민은행 당산역지점의 잔고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 5.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감사인 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 6. 기타사항.

기타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위와 같이 보고함.

2010년 03월 일

조사보고자 감 사 여선민 (인)

(9) 감사인의 조사보고가 끝나면 발기인총회는 폐회하고, 발기인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부터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취임승낙서를 받는다.

## 취 임 승 낙 서

2010. 3. . 발기인총회에서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  
을 승낙함.

2010. 3. .

사내이사	고창현	(인)
사내이사	정지원	(인)
사내이사	장일용	(인)
감 사	여선민	(인)

주식회사 다름닷컴 귀하

(10) 선임된 이사들은 발기인총회를 마친 후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  
표이사를 선임한다.

##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다름닷컴

2010. 3. . 10시 00분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감사 총수 1명,

출석 이사수 3명  
출석 감사수 1명

###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 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 고창현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다.

의장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이사 중에서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 바 출석이사들은 협의를 통하여 전원일치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다.

대표이사      고창현

선임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 제2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 바 전원일치로서 본점설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4-17 다영빌딩 2층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1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10. 3. .

### 주식회사 다름닷컴

의장 및 대표이사      고창현 (인)      사내이사      정지원 (인)

                         사내이사      장일용 (인)      감      사      여선민 (인)

(11) 선임된 대표이사로 부터도 임감도장날인 및 임감증명서서 첨부된 취임 승낙서를 받는다.

##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2010. 3.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0. 3. .

대표이사 고창현 (인)

주식회사 다름닷컴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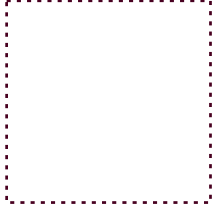
(12) 마지막으로 회사의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인감신고서를 작성한다. 인감 신고는 제작한 법인인감도장을 인감대지에 날인하여 인감신고서에 붙여서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양식] (인감대지)

## 인 감 대 지

	 <p>신고하는 인감날인란</p>	<p>상 호(명 칭): 주식회사 다름닷컴</p> <p>자격 및 성명: 대표이사 고창현</p> <p>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p>
--	---	---

주 1. 자격은 대표이사(이사), 이사장,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p>신고하는 인감날인란</p>	<p>상 호(명 칭): 주식회사 다름닷컴</p> <p>자격 및 성명: 대표이사 고창현</p> <p>주민등록번호: 111111- 1111111</p>
--	---	--

(13) 다음은 등록세신고서와 등기신청서사본을 가지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등록세는 자본금×4/1000이며(지방세법 제137조), 여기에 20%의 교육세가 붙는다(교육세법 제5조). 본점소재지가 도시계획정비법상의 과밀억제구역인 경우에는 3배가 중과세된다. 예컨대, 자본금이 5천만원이면 등록세 및 교육세는 24만원이고,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에 있으면 24만원×3이면 72만원이 된다. 등록세는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신한은행 등에 가서 대법원 수입증지 3만원권(e-form을 이용하는 경우 1만 7천원)을 매입한다.

관리번호		-		<b>등록세 신고서</b>			
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다름닷컴 주식회사		111111-111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4-17 다영빌딩 2층		
등기등록물건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4-17 다영빌딩 2층							
<b>과세대상</b>							
등기등록물건	구조	용도	면적				
		주식회사 설립등기	토지		건물		
등록세 신고세액	과세표준액	50,000,000원	세율	0.12%	세액①	600,000원	
감면세액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②		
등록세 납부할 세액 (① - ②)	과세표준액	50,000,000원	세율	0.12%	세액③	600,000원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과세표준액	600,000원	세율	20%	세액④	120,00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세액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⑤		
세액 합계		<b>720,000원</b>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동법시행령제104조의2제3항 및 「농어촌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인	
2010년 3월 일							
신고인 다름닷컴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창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b>귀하</b>							
<b>위임장</b>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 작성)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등록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인(신고인)						(인)	
위임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법무사			
	주소		전화번호				

<b>접수증 (등록세 신고서)</b>			
신고인 (대리인)	접수연월일	등기등록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제260조의4 및 「농어촌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또는인)	접수번호

(14)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신청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방법원 상업등기소가 관할인 경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덕수궁길로 700m 정도 가면 서울지방방법원 상업등기소가 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위에서 예시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다. 즉,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즉,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정관(1통)(공증인의 인증)·주식인수증(발기인의 수만큼)·주식청약서(모집된 주주수만큼)·주식발행사항결정동의서(1통)·주금납입보관증명(1통)·창립사항보고서(1통)·기간단축동의서(1통)·창립총회의사록(1통)(공증인의 인증)·이사회이사록(1통)(공증인의 인증)·조사보고서(1통)·취임승낙서(이사, 감사, 대표이사 각각 1통)·대표이사과 감사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인감신고서(1통)·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다. 위 서류를 1부 정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		호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발기설립
등기의 사유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전부를 인수하고 2010. 6. 16.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절차를 종결하여 주식회사 발기설립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본/지점 신청구분	1.본점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지점신청 <input type="checkbox"/> 3.본·지점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b>등 기 할 사 항</b>	
상 호	다름닷컴 주식회사 (Darum.com .Co.,Ltd)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4-3 다영빌딩 2층
공고 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5,000원
발행할 주식의총수	4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①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금50,000,000원

## 등 기 할 사 항

목 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개발,도소매, 교육</li> <li>2. 소프트웨어 기술용역, 컨설팅</li> <li>3. 소프트웨어 수출입</li> <li>4. 부동산 임대</li> <li>5. 컴퓨터조립 및 완성품 매매</li> <li>6.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li> <li>7.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li> </ol>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고창현 (111111 - 1111111) 사내이사 정지원 (222222 - 2222222) 사내이사 장일용 (333333 - 3333333) 감 사 여선민 (555555 - 5555555)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고창현 서울 용산구 한남동152 한강빌라201호
지 점	해당없음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해당없음
주식의 양도	해당없음
주식매수선택권	해당없음

신청등기소 및 등록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 수수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본점	금600,000원	금120,000원	금720,000원	금30,000원
합 계			금600,000원	금120,000원	금720,000원	금30,000원
과 세 표 준 액		금50,000,000원				
첨 부 서 류						
1. 정관			1 통			
1. 주식인수증			3 통			
1.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1 통			
1. 일반잔고증명서			1 통			
1. 발기인 총회 의사록			1 통			
1. 조사보고서			1 통			
1. 이사회 의사록			1 통			
1. 취임승낙서			2 통			
1. 인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1 통			
1. 위임장			통			
2010년 3월 일						
신 청 인		다름닷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4-3 다영빌딩 2층				
대 표 이 사		고창현 서울 용산구 한남동152 한강빌라201호				
대 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1.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	해당등기신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 상단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붙입니다.



(16) 회사성립 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에는 정관, 개시대차대조표(개시재무상태표), 잔고 증명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자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3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b>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b>	처리기간
		7일 (보정시는 14일)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 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주식회사 다름닷컴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고창현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사업장(단체)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7 다영빌딩 2층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장)02-557-0000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110111-*****	자본금	50,000,000	사업연도	1월1일 ~ 12월 31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가 지방 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 법인	기타	지점 (국내 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사업자 등 록 번 호
0										0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 율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 3.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별지기재	별지기재										2010년 3월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m <sup>2</sup>	m <sup>2</sup>		0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원		원				
특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제 조	관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 고	등 록	인·허가	기 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 산 계		유 동 자 산		고 정 자 산		부 채 계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뒤 쪽)

###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b>명의를 빌려주는 경우</b>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b>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b>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b>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b> 있습니다.</p> <p>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b>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b> 실시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b>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b> 있습니다.</p> <p>라. <b>실용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b>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b>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금기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b> 받을 수 있습니다.</p> <p>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b>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어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b> 받을 수 있습니다.</p>
--





상법

# 주식회사법 발취





## 상법(주식회사법 발췌수록)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 제4장 주식회사

#### 제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7. 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② 삭제 <2011. 4. 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

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  
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4. 14.]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  
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  
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  
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  
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94조** 삭제 <1995. 12. 29.>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  
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  
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  
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  
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감사인의 선임  
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

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  
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 보고에 참  
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  
항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  
기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  
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99조(감사인의 조사, 보고)** ① 감사인은 제  
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  
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  
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감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

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을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8.>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2011. 4. 14.>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기재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기재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삭제 <2011. 4. 14.>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08조(창립총회)**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제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12. 29.>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제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삭제 <1995. 12. 29.>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제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300조제2항과 제3상청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구)** 아니한다.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제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

<p>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p>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p>3의4. 지점의 소재지</p> <p>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p> <p>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p> <p>5. 삭제 &lt;2011. 4. 14.&gt;</p> <p>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p>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계기한 사항</p> <p>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p> <p>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p> <p>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p> <p>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p> <p>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 <p>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4. 14.&gt;</p> <p>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p> <p><b>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b>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p>	<p>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p> <p><b>제319조(권리주의 양도)</b>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p> <p><b>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b></p> <p>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p> <p>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p> <p><b>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b>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p> <p>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b>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삼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b>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b>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b>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b></p>
---	--



제400조와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①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 제2절 주 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신설 2001. 7. 24.>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1998. 12. 28.]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로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제334조** 삭제 <2011. 4. 14.>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

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1. 7. 24.]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01. 7. 24.]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

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 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4. 5. 20.]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4. 5. 20.]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4. 5. 20.>

②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5. 20.]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면액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전문개정 2011. 4. 14.]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9. 12. 31.]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개정 2011. 4. 14.]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전문개정 2011. 4. 14.]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

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3조의2** 삭제 <2011. 4. 14.>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

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제349조(전환의 청구)**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삭제 <1995. 12. 29.>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1995. 12. 29.]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기재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4. 5. 20.>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환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



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2011. 4. 14.>
8. 삭제 <2011. 4. 14.>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

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선(善意)으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선(善意)으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본조신설 2011. 4. 14.]

[시행일 미지정] 제356조의2

**제357조** 삭제 <2014. 5. 20.>

**제358조** 삭제 <2014. 5. 20.>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

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360조(주권의 재권판결, 재발행)** ① 주권은 공식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재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 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개정 2015. 12. 1.>

[본조신설 2001. 7. 24.]

### 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

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 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삭제 <2015. 12. 1.>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 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한



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 4. 14.>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본조신설 2001. 7. 24.]

[제목개정 2015. 12. 1.]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산서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6** 삭제 <2015. 12. 1.>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1. 7. 24.]

[제목개정 2011. 4. 14.]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

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 삭제 <2015. 12. 1.>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는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제1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

⑥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

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의 날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한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④ 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

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본조신설 2001. 7. 24.]

#####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 ① 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②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의

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

[본조신설 2001. 7. 24.]

[제목개정 2011. 4. 14.]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

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신설 2011. 4. 14.>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 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4. 14.]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2015. 12. 1.>

[전문개정 2009. 5. 28.]

[제목개정 2014. 5. 20.]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회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



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4. 5. 20.>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1998. 12. 28.]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정구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0.>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제370조** 삭제 <2011. 4. 14.>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4. 14.]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2014. 5. 20.>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15. 12. 1.]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

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간)**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학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 12. 28.>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 1. 30.]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

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 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 7. 24.]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 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제384조** 삭제 <1995. 12. 29.>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390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기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제391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와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11. 4. 14.>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1984. 4. 10.]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391조의3(이사회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12. 31.>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본조신설 1984. 4. 10.]

**제392조(이사회)의 연가속행** 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전문개정 1984. 4. 10.]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의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전문개정 1984. 4. 10.]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9. 12. 31.>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 12. 29.>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 4. 14.]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 12. 28.>

⑥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 12. 28., 2011. 4. 14.>

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개정 1962. 12. 12., 2001. 7. 24.>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는 이사회의 중

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 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①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①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집행임원이 집행임원 설치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 12. 31.)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 4. 10.>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 5. 28., 2011. 4. 14.>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 12. 29.>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중전 제412조의4는 제412조의5로 이동 <2011. 4. 14.>]

**제412조의5(자회사의 감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2조의4에서 이동 <2011. 4. 14.>]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본조신설 1984. 4. 10.]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

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라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09. 1. 30.>

⑦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제2항·제394조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제1항제9호·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

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본조신설 1999. 12. 31.]

####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1984. 4. 10.]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계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계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닐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본조신설 1984. 4. 10.]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종전 제420조의4는 제420조의5로 이동 <2011. 4. 14.>]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20조의4에서 이동 <2011. 4. 14.>]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번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11. 4. 14.>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⑤ 법원의 통고가 있는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8., 2011. 4. 14.>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25조(준용규정)** ①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 4. 10.>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시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37조** 삭제 <1995. 12. 29.>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 4. 14.>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1. 4. 14.]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제444조 삭제** <2014. 5. 20.>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제190조 본문·제191조·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 4. 14.>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의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

- 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하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52조** 삭제 <2011. 4. 14.>

**제453조** 삭제 <2011. 4. 14.>

**제453조의2** 삭제 <2011. 4. 14.>

**제454조** 삭제 <2011. 4. 14.>

**제455조** 삭제 <2011. 4. 14.>

**제456조** 삭제 <2011. 4. 14.>

**제457조** 삭제 <2011. 4. 14.>

**제457조의2** 삭제 <2011. 4. 14.>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 12. 29.>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4. 14.]

-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 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4. 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
-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24.>
-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第423條第1項, 第516條第2項 및 제516조의10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 본다. <개정 2011. 4. 14.>
- ⑥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

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8. 12. 28.]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본조신설 2011. 4. 14.]

**제463조** 삭제 <2011. 4. 14.>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1. 4. 14.]

**제465조** 삭제 <1984. 4. 10.>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2. 28.>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95. 12. 29.>

④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10.>

## 제8절 사 채

### 제1관 통 칙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70조** 삭제 <2011. 4. 14.>

**제471조** 삭제 <2011. 4. 14.>

**제472조** 삭제 <2011. 4. 14.>

**제473조** 삭제 <2011. 4. 14.>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11. 4. 14.>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2011. 4. 14.>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제476조(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7조 삭제** <1984. 4. 10.>

**제478조(채권의 발행)**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채권의 번호

2. 제474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10호·제13호·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 4. 14.>

**제479조(기명사채의 전)**이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 4. 10.>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4. 14.]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

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사채권자는 사채관리회사에 사채 상환액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사채권과 상환하여 상환액지급청구를 하고, 이권(利券)과 상환하여 이자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제2호의 행위를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해당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

⑤ 사채관리회사가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하는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사채관리회사는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채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이 법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7조(원리청구권 시효의)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88조(사채원부) ①**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



- 회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 [전문개정 2011. 4. 14.]

**제489조(준용규정)**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91조(소집권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 4. 14.>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492조(의결권)** ①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1. 4. 14.>

②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1. 4. 14.]

**제494조(사채발행회사 및 대표자의 출석청구)** 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5조(결의의 방법)** ① 제434조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준용한다.

② 제481조부터 제483조까지 및 제494조의 동의 또는 청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사채권자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④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의결권행사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사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의결권행사서면을 소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의결권 수

에 포함한다. <신설 2011. 4. 14.>

⑥ 사채권자집회에 대하여는 제368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 4. 14.>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 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① 사채권자집회는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대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전항의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제501조(결의의 집행)**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485조제1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 준용한다.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05조** 삭제 <2011. 4. 14.>

**제506조** 삭제 <2011. 4. 14.>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①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10조(준용규정)** ① 제368조제2항·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



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는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1. 4. 14.]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

###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의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③ 주주의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7. 24.>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1984. 4. 10.]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84. 4. 10.]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1984. 4. 10.]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 4. 10.>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

③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

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 12. 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01. 7. 24.)

⑤ 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①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6조의2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4(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의 인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의 인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중전 제516조의7은 제516조의8로 이동 <2011. 4. 14.>]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② 제514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7에서 이동, 중전 제516조의8은 제516조의9로 이동 <2011. 4. 14.>]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받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9는 제516조의10으로 이동 <2011. 4. 14.>]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16조의10은 제516조의11로 이동 <2011. 4. 14.>]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본조신설 1984. 4. 10.]

[제516조의10에서 이동 <2011. 4. 14.>]

## 제9절 해 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 12. 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 제10절 합 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12. 28.>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2015. 12. 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

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본조신설 1984. 4. 10.]

[제목개정 2015. 12. 1.]

###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본조신설 1995. 12. 29.]

[제목개정 2015. 12. 1.]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 12. 28., 2001. 7. 24., 2011. 4. 14., 2015. 12. 1.>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시일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목개정 2015. 12. 1.]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본조신설 2011. 4. 14.]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4. 14., 2015. 12. 1.>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목개정 2015. 12. 1.]

**제525조(합명회사, 자회사의 합병계약서)합**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제526조(흡수합병의 보충)고충**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 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제52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②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 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을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 7. 24.〉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

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의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제530조(준용규정) ①**

삭제 <1998. 12. 28.>

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

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12. 28., 2001. 7. 24.>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 12. 28., 2014. 5. 20.>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준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준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삭제 <2011. 4. 14.>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8. 12. 28.]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12. 1.>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p>사항</p> <p>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p> <p>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p> <p>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p> <p>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p> <p>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p> <p>9. 분할합병을 할 날</p> <p>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p> <p>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p> <p>②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p> <p>1. 제530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8호·제8호의2·제9호·제10호에 규정된 사항</p> <p>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p> <p>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p> <p>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p> <p>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p>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p>	<p>7. 분할합병을 할 날</p> <p>③ 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lt;신설 2015. 12. 1.&gt;</p> <p>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lt;신설 2015. 12. 1.&gt;</p> <p>[본조신설 1998. 12. 28.]</p> <p>[제목개정 2015. 12. 1.]</p> <p><b>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b> ①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p> <p>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p> <p>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p> <p>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p> <p>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p> <p>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p> <p>1. 분할합병계약서</p> <p>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p> <p>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p>
---	--

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제목개정 2015. 12. 1.]

**제530조의8** 삭제 (2015. 12. 1.)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의 효과)** 병 단순 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5. 12. 1.]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

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서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5. 20.〉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2. 31.〉

[본조신설 1998. 12. 28.]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28.〉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4조(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 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사승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

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 12. 28.>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1조(서류의 보존)** ①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제542조(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 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 내지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8. 12. 28.>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 30.>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

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5(이사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⑦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4. 14.>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 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 1. 30.]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



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본조신설 2009. 1. 30.]

-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⑥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한다.
- ⑦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⑪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제6항보다 단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6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⑫ 그 밖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 제5장 유한회사

###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제545조** 삭제 <2011. 4. 14.>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1.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기재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준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 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제179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 12. 12.>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 12. 12.>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 12. 12.>

③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 12. 12.>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 12. 12.]

##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333조의 규정은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59조(지분의 입질)** ①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56조와 제557조의 규정은 지분의 입질에 준용한다.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 12. 12.>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9. 12. 31.]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1. 4. 14.>

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 12. 28.>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제기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 12. 12., 1998. 12. 28., 1999. 12. 31.>

**제568조(감사)** ① 유한회사는 정관에서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547조의 규정은 정관에서 감사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569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4조와 제565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1. 4. 14.>

② 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③ 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제목개정 2011. 4. 14.]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①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

조제2항·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5년간 제579조 및 제579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1. 4. 14.>

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에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1. 4. 14.>

②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 12. 31.>

####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
- [전문개정 2011. 4. 14.]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유한회사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장래 그 자본금을 증가할 때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제585조에서 정하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①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 4. 14.>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 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①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 12. 12., 2011. 4. 14.>

② 자본금 증가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 12. 12., 2011. 4. 14.>

③ 제55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① 자본금 증가의 무효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2011. 4. 14.>

② 제430조 내지 제43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2011. 4. 14.>

**제597조(등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

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제601조(물상대위)**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제339조의 규정은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질권의 목적인 지분에 관하여 출자좌수와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회사 기타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8. 12. 28.>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4.>
-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 ① 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
- ② 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 4. 14.]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 10.>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해산사유)** 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 7. 24.>

-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 2. 사원총회의 결의
-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삭제 <2001. 7. 24.>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613조(준용규정)** ① 제228조,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제264조, 제52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40조와 제54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② 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50조, 제466조제2항, 제539조, 제562조, 제563조, 제564조제3항, 제565조, 제566조, 제571조, 제572조제1항과 제581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14.]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18조(준용규정)** ① 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 12. 12.>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

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 제7장 별 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11. 4. 14.>

② 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감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 회사의 영업범위외에서 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 12. 1.]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제622조제1항에 계기한 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 주식 또는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계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① 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1998. 12. 28.>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중수죄등)**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8. 12. 28., 1999. 12. 31., 2011. 4. 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자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33조(몰수, 추징)** 제630조제1항 또는 제

631조제1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2009. 1. 30.]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 of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결(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p>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 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p> <p>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p> <p>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p> <p>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p> <p>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p> <p>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p> <p>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p> <p>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p> <p>19. 제35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p> <p>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p> <p>22.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p>	<p>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p> <p>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p> <p>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p> <p>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p> <p>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p> <p>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p> <p>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p> <p>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p> <p>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p> <p>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p> <p>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lt;개정 2011. 4. 14.&gt;</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설 2009. 1. 30.&gt;</p>
--	--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제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로 영업 등)** ① 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 저저약력 •

崔竣璿(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졸업

Stipendiat der Alexander von Humboldt Stiftung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jsskku@daum.net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쇄생략

##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제6판]

2010년 3월 10일 제1판 1쇄 발행  
2012년 2월 20일 제2판 1쇄 발행  
2013년 5월 10일 제3판 1쇄 발행  
2015년 2월 20일 제4판 1쇄 발행  
2016년 7월 20일 제5판 1쇄 발행  
2019년 2월 20일 제6판 1쇄 발행  
2023년 8월 28일 전자책 발행

저 자 최 준 선  
발행인 김 학 민  
조 판 아 람 기 획

07285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617호

도서출판 **탐복스**

등록 2009.12.21 제 2016-000101 호

전화 02)365-2223 팩스 02)365-2224

© 2019, 최준선

정가 18,000원

ISBN 979-11-92981-277(95320)

이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著作権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주식회사 창업 및 경영성공을 위한 실무가이드!